간 등 록 번 호 11-1620000-000395-01



# 장애인 인권층진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 일시 | 2012, 9, 25.(화) 10:00~18:00

| 장소 | 프레지던트호텔 31층 슈벨트홀













안녕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현병철입니다.

우선 장애인의 인권 향상을 위해 헌신해 오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 분과 함께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적인 관심과 노력의 결실로 지난 2006년 UN 장애인권리협약이 제정되었고, 2009년 1월 이 협약을 국내 발효함으로 써 장애인 인권 개선의 새로운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2008년 장애인차별 금지법 시행되면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인권증진의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면한 현실은 여전히 많은 개선 과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정책에서 인권 의제는 핵심의제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장애 인 정책의 방향은 '권리' 차원으로 전환되지 못한 채 '시혜'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 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장애인의 권리가 선언에 그칠 것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권에 대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할 때입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소개할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안)」은 △평등한 참 여를 위한 기반구축 △적절한 삶의 향유를 위한 기본권 보장 △차별시정 및 예방 강화 △다중적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기반구축이라는 기능별로 분화된 4 대 전략목표를 중심으로 21개 성과목표, 그리고 그에 따른 주요사업들을 연계하여 체계성과 실천지향성을 함께 고려하여 마련하였습니다.

그동안 장애인 인권의 향상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여러분이 함께 한 오늘 이 자리가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의 방향과 개선 과제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여 향후 장애 인 정책을 올바로 정립하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행사를 함께 준비해주신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한국장애인단 체총연합회 대표와 관계자, 그리고 모든 토론회 참석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 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9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현 병 활





안녕하십니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상임대표 변승일입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어느덧 선선한 9월,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뜻 깊은 자리에 참석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공청회를 준비해 오신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님과 장명숙 상임대표 님을 비롯해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축하의 마음을 전합니다.

세계인권선언 제3조에는 "모든 사람은 자기 생명을 지킬 권리, 자유를 누릴 권리, 그리고 자신의 안전을 지킬 권리가 있다."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 인구의 증가 및 새로운 인권 요구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정부정책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장애인의 기본적 삶의 보장 문제조차 해결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장애인의 권익증진과 인권 보호를 위하여 우리사회에 산재한 장애인 차별행위 및 인권침해를 해소하고자 수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특별히 이를 위해 헌신하신 장향숙 전 위원님과 장명숙상임위 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2012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통해 장애인 인권 증진과 차별 시정 있어서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중장기 계획이 수립될 수 있기를 바라며, 저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서도 인권위원회 및 장애계 여러 단체와 힘을 합하여 장애인 인권개선과 권리증진에 더욱 매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시고 참여해주신 여러분들의 열의에 다시 한 번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2년 9월 25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상임대표 변 숭 일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해 일하시는 국가인권위원회 임직원과 장애인 활동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이 발효된 지 한참 지났으나, 장애인 인권증 진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로드맵을 가지고 인권보장 수준을 계획하고 모니터 링하는 체제가 없어 단발적이거나 시대적 상황에 임시방편으로 대처하는 방식이 있었 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해 왔습니다.

장애인고용이나, 교육, 편의시설,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 등 주제별 중장기 계획이 있었으나 인권적 차원에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 것은 아니어서 이번 기획은 매우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계획들은 나열식이거나 예산에 맞춘 점진적 계획이므로, 인권보장을 위한 메카 니즘을 마련한다거나, 보장을 위한 목표를 먼저 세우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종 래의 사업들에 목표치만 조금 상향하는 수준으로 계획하여 왔기 때문에 인권이라는 주 제를 두고 계획을 수립함은 매우 적절한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러한 계획을 세우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침해 사건에 대한 사후약방문이 아니라 인권보장을 위한 장치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매우 반가운 일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수행조직이 아니라는 점에서 각 부처에 촉구하고 모니터링하는 기능으로 부처간 협력이 어렵다거나,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문제점도 있을 것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중장기 계획은 두 가지 기능이 필요합니다. 국가 차원에서 각부처가 수행해야 하는 계획을 만들어 권고하고 촉구하는 기능이 그 하나이고, 또 하나는 모니터링을 통하여 계획이 알차게 추진되도록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과 할 일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중장기 계획에 포함되기를 기대합니다.

장애인의 인권은 단순히 침해여부의 차원이 아니라 보장적 차원에서 자유권과 평등 권, 사회권 모두가 보장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다 보니 보장적 차원의 모든 시책과 정책, 복지적 서비스가 포함되며, 자립생활과 자기결정권 등의 새로운 패러다임도 포함 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하여 장애인 인권 사각지대가 없는 누구나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사회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많은 분들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국가적 차원의 인권 증진 중장기 계획 수립을 마련하여 주신 국가인권위원회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 계획의 빈틈없는 추진은 정부와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 당사자가 모두 합심하여 노력하여야 할 일이며, 오늘의 토론은 그 출발선이 될 것입니다. 당사자들은 요구를 하는 자리가 아니라 새로운 과제를 가슴에 안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의 인권보장이 다른 나라의 모범이 되어 인권의 한류바람이 일어날 그날이 오기를 상상해 봅니다. 누구나 인권이 보장되는 발전된 사회개발을 기대합니다.

2012년 9월 25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대표 권한대행 김 완 배





□ 일 시: 2012. 9. 25.(화) 10:00~17:45

□ 장 소 : 프레지던트호텔 31층 슈벨트홀

□ 주 최 : 국가인권위원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좌장: **장명숙**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구 분	시 간	내 용
인사말	10:00~10:15(15') (각 5분씩)	장명숙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변승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상임대표) 김완배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대표 권한대행)

# 제1부 | 평등한 참여를 위한 기반 구축 (주제: 등록등급제/전달체계/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지역사회 참여 여건 마련/접근권/장애인권리협약)

발제 1	10:15~10:45(30')	조형석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기획조사팀장)
토론 1	10:45~12:15(90') (각 15분씩)	조한진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임성택 (법무법인 지평지성 변호사) 남병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장) 임소연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 조원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서인환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12:15~13:15(60')	점심 식사

구 분	시 간	내 용
	설한 삶의 향유를 위 네: 소득/노동/교육/	한 기본권 보장 주거 / 건강 / 이동 / 자기결정)
발제 2	13:15~13:45(30')	조형석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기획조사팀장)
토론 2	13:45~15:15(90') (각 15분씩) 15:15~15:40(25')	서정희 (군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남용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업영역개발팀장) 김기룡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사무처장) 은종군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정책홍보국장) 김윤태 (가톨릭대학교 재활의학과 교수) 배융호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사무총장) 휴 식
	15:15~15:40(25*)	유 식
-	의 보장성 강화를   : 모니터링 / 인권교육 	위한 방안 모색 : / 발달장애 / 정신장애 / 장애여성 / 장애아동) 
발제 3	15:40~16:00(20')	조형석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기획조사팀장)
토론 3	16:00~17:15(75') (각 15분씩)	김의수 (장애인인권포럼 선임연구원) 김치훈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책실장) 신동근 (용인정신병원 정신과전문의) 문용훈 (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 회장) 신희원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사무국장)





# 제1장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계획 개요

- 1. 총론 / iii
- 2. 주요특징 / iv
- 3. 체계도 / vi
- 4. 전략목표별 주요 내용 / vii

# 제2장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계획(안) 공청회

# 제1부 명등한 참여를 위한 기반 구축 ● 1

### 발제 1

# ◉ 토론 1

<b>조한신</b>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23
<b>임성택</b> (법무법인 지평지성 변호사)	33
남병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장)	47
<b>임소연</b>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	55
조원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63
<b>서인환</b>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	69
제2부 적절한 삶의 향유를 위한 기본권 보장 ● 79	
<ul><li>● 발제 2</li></ul>	
•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 계획(안) (2013~2017)	Q1
조형석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기획조사팀장)	O
<ul><li>● 토론 2</li></ul>	
서정희 (군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97
<b>남용현</b>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업영역개발팀장) ·······	
김기룡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사무처장) ······	
<b>은종군</b>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정책홍보국장) ······	
김윤태 (가톨릭대학교 재활의학과 교수)	
배용호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사무총장) ····································	
"O— (O "EMEDEED TEL " TI OO)	.00



# 제3부 권리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방안 모색 ● 147

6		_
	박제	.3

•	장애인	인권증진 중	장기 계획(안)	(2013~2017)	 149
	조형석	(국가인권위원	회 장애차별기	획조사팀장)	

### ● 토론 3

김의수	(장애인인권포럼 선임연구원)	167
김치훈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책실장)	177
신동근	(용인정신병원 정신과전문의)	185
문용훈	(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 회장)	193
신희원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사무국장)	205





# 제1장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계획 개요

- 1. 총론
- 2. 주요특징
- 3. 체계도
- 4. 전략목표별 주요 내용



# 1. 총론

### □ 명칭

○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 계획의 명칭을 **"장애인 인권중** 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이하 "장애인중장기계획"으로 함)으로 함

### □ 비전(Vision)

○ 우리 위원회가 추구하는 이상(理想)

### "평등한 사회 참여를 통한 장애인의 기본적 인권보장"

### □ 전략목표

- I. 평등한 참여를 위한 기반 구축
- Ⅱ. 적절한 삶의 향유를 위한 기본권 보장
- Ⅲ. 차별시정 및 예방 강화
- Ⅳ. 다중적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기반 구축

### 2. 주요 특징

### □ 시혜와 복지 차원에서 인식되던 장애인 정책을 인권으로 권리화

○ 시혜와 복지의 차원에서 인식되던 장애인 정책을 인권의 문제로 전환하고, 국제기 준을 토대로 장애인 인권의 측면에서 장애인 관련 법령 및 정책의 방향을 제시함.

### □ 포괄적 원칙을 수립하고 구체적이고 이행가능한 목표 설정

○ 인권의 범주가 폭넓고 그 내용이 불분명하게 인식되는 바, 중장기 계획으로서 포괄 적 원칙을 수립하고 구체적이고 이행가능한 목표를 설정함.

### □ 국가의 핵심의무에 우선순위를 둔 목표 설정

○ 국가의 가용자원의 양 혹은 다른 어떤 요소와 어려움에 상관없이 반드시 해야만 하는 국가의 최소핵심의무에 우선순위를 두고, 실천지향성을 유지하면서 제한된 기간 내에 성취할 수 있는 목표 제시.

# □ 단계별 체계구성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체계 마련

○ 비전 → 전략목표 → 추진목표로 이어지는 체계적 계획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체계로 구성됨

### □ 종합추진계획

○ 본 계획은 장애인의 인권증진을 위한 범정부차원의 종합적 중장기계획으로서, 종합 전략계획, 미래발전계획, 단계별 실행계획, 부문사업 추진계획, 협력계획으로서 성 격을 가짐



### □ 전략목표, 추진목표, 주요사업 내용의 연동

- 4대 전략목표, 21개 성과목표를 중심으로 주요사업 내용을 연동하여 체계적인 계획 을 수립함
- 기능별로 분화된 전략목표를 새로이 제시하여 체계성을 갖춤
- 4대 전략목표는.
  - ① '평등한 참여를 위한 기반 구축'을 통해 장애인 등록등급제를 개선하여 다양한 지원체계의 기초를 마련하고 서비스 전달체계를 새롭게 구축하여 복합적 인권과 욕구에 적절히 대응하는 행정시스템을 마련하며, 사회복지 서비스 신청권을 실질 화하여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복지권을 정립함. 또한 장애인 활동지원의 개선과 접근권 보장을 비롯한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비하여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권리협약의 구체적 이행을 통해 장애인 인권 선진국이 되도록 함
  - ② '적절한 삶의 향유를 위한 기본권 보장'을 통해 헌법에서 보장한 구체적 기본권을 실질화함. 적절한 생계를 보장하고, 노동권의 실효성을 높이며, 법에 정한 교육권과 건강권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함. 더불어 적절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여 장애인의 자유롭고 일상적인 지역사회 생활이 이루어지도록 함
  - ③ '차별시정 및 예방 강화'를 통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모니터링 시스템을 정비하고 장애인 인권센터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스 스로의 인권 지킴 활동을 활성화하며, 장애인 인권교육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장 벽이 없는 사회가 되도록 함
  - ④ '다중적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기반 구축'을 통해 장애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장애인들(발달장애, 정신장애, 장애여성, 장애아동)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내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세계

H 사 바 바 다 가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명등한 참여를 위한 적절한 기반 구축 기반 구축 3. 사회복지 서비스 신청권 3. 기본건 1.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 4.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 4. 장애인 함당 참여를 위한 5. 자별 여건 마련 6. 장애인 접근권 보장 7. 자기각 2. 장애인권리협약의 구체적 7. 자기각 2. 장애인권리협약의 구체적 1. 장애인권리협약의 구체적 1. 자기각 2. 자기각 2. 전기 2.	교등한 사회참여를 통한 장 제절한 삶의 향유를 위한 기본권 보장 일할 수 있는 기회 및 권리 보장 가회 보장 장애인 주거 지원 제도 강화 관리 보장 개인의 이동권 보장 개인의 이동권 보장	평등한 사회참여를 통한 장애인의 기본적 인권보장  □ I.	지. 다중적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기반 구축 장애) 2. 정신장애 3. 장애여성 4. 장애아동
---	---	--	----------------------------------	--



# 4. 전략목표별 주요 내용

전략 목표	추진목표	주요내용
I. 평등한 참여를 위한 기반 구축	1. 장애인 등록등급제 개선	1) 등록등급제와 서비스 수급권의 분리 2) 개인의 욕구와 환경에 기초한 서비스별 장애 사정 기준 마련 3) 장애 범주 확대
	2. 장애인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1)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을 보장하는 공공전달체계 마련 2) 지역사회 밀착형 민간 전달체계 구축 3) 장애 관련 전문 인력 자격제도 정비 4)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상설화
	3. 사회복지 서비스 신청권 활성화	1) 서비스 신청의 간편화 2) 이의제기 절차 마련 3) 직권신청의 활성화
	4.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 개선	1) 서비스 대상 확대 2) 서비스 제공 상한선 폐지 3) 65세 이상 서비스 선택권 부여(노인장기요양보험과 장애인활동지원 중 선택)
	5.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여건 마련	1) 단계적 주거 지원 서비스 마련 2)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역할 재정립 3) 초기 정착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6. 장애인 접근권 보장	1) 정보접근권 보장 (1) 저작권법 개정을 통한 출판물 접근권 보장 (2) 수화언어의 법적 지위 향상 2) 시설접근권 보장 (1) 신축시설의 설계 시 상세도면 첨부 및 관련기관 자문 의무화 (2) 신축시설의 편의시설 설치 후 제거 방지
	7. 장애인권리협약의 구체적 이행	1) 장애인지예산 제도 도입 및 예산 확대 2) 유니버설 디자인에 기반을 둔 정책 추진 3) 장애인권리협약의 유보조항 철회 및 선택의정서 채택

전략 목표	추진목표	주요내용
	1. 적절한 생활수준의 보장	1) 장애인연금 급여액 현실화 (1) 기초급여액 현실화 (2) 부가급여액 현실화 2) 장애인연금 급여 대상 확대
Ⅱ. 적 절	2. 일할 수 있는 기회 및 권리 보장	1) 노동에서의 권리 제고 (1) 장애인 고용 시 근로자성 인정 (2) 장애인의 근로3권 보장 (3)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 개정(보조금고용 도입 포함) 2) 근로 기회의 확대 (1) 공공영역에서의 일자리 확대 (2) 지원고용(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확대 (3) 분절적인 고용 및 직업재활시스템 개선
** 의 3. 기본적인 교육권 및 교육 향 기회의 보장 의 기회의 보장 및 확대 (1) 순회교육의 실질화		<ul> <li>(2) 장애특성에 따른 교육 교재 개발</li> <li>(3) 유사 치료 및 부처간 훈련서비스 협력 운영체계 마련</li> <li>(4) 과밀학급 해소 및 교원 확보</li> <li>2) 교육 기회 보장 및 확대</li> </ul>
위 한 기	4. 4. 기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실질화 장애인 주거 지원 제도 2) 충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 사업 전국 확대 3) 주택구입 및 전월세 보증금 지원 확대	2)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 사업 전국 확대
본 권 보 장	5. 차별 없이 건강을 향유할 권리 보장	1) 장애인 건강통계 구축 2) 의료보장성 강화 (1) 진료수가 차등화 (2) 장애특성을 고려한 의료서비스 강화(의료정보 접근 문제 포함) (3) 보건의료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비용지원 확대 3) 장애인 진료를 위한 거점 공공의료기관 설립 확대 4)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 확대 및 관리 체계 구축
	6. 개인의 이동권 보장	1) 저상버스 확대 2) 대중교통시설의 전자문자 안내판 및 음성 알림 설치 법제화 3) 특별교통수단의 확대 및 국고 지원
	7. 자기결정권 보장	1) 성년후견제 내실화 2) 성인장애인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전략 목표	추진목표	주요내용
Ⅲ. 차 별	1. 모니터링 강화	1) 모니터링을 통한 즉각적 개선 효과 극대화 2) 사전적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개발
<sup>글</sup> 시 정	2. 장애인권센터 설치	1) 장애인인권센터에 현장 임의조사권 부여 2) 사회복지서비스 직권신청 연계
및 예 방 강 화	3. 장애인 인권교육 강화	1)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에 대한 장애인 인권교육 의무화 2) 일반교원 및 학교 구성원에 대한 장애인 인권교육 강화 3) 대중에 대한 장애인 인권교육 강화
IV. 다 중 적 차 별 을	1. 발달장애 (지적ㆍ자폐성장애)	1) 발달장애인에 친화적인 공공기관의 정보 제공 2)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 3) 발달장애인 인권침해 예방 및 권리 보호 체계 마련 (1) 발달장애인 형사사건 전담조사제 도입 (2) 발달장애인에 대한 법률조력 및 전문가 의견조회 (3) 약취, 금전적 착취, 학대 등의 예방 및 보호 시스템 강화 4) 지역사회 통합 및 참여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 체계 마련 5) 돌봄 및 가족지원 강화 (1) 발달장애인 맞춤형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구축 (2)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 모델 개발 및 매뉴얼화 추진
겪고 있는	2. 정신장애	1) 입퇴원 과정에서의 적정절차 마련 및 정신보건시설 내 권리보장을 위한 정신보건법 개정 2)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위해 정신보건센터 및 정신요양시설의 기능 정립 3) 제도 및 정책 시행 등에 있어서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 해소
장 애 인 을 위 한	3. 장애여성	1)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 권리 보장 (1) 여성장애인을 위한 임신·출산·육아 정보 개발 및 관련 사이트 구축 (2) 부모 교육 및 상담 서비스 제공(장애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 (3) 여성장애인에게 특성화된 병원 육성 및 거점 병원 지정 (4)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 상황을 반영한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5)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및 양육비 지원 강화 2) 가정폭력·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1)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상담·보호시설 확충 (2)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 체계 구축
사 회 적 기 반 구 축	4. 장애아동	1) 장애 영·유아 교육·보육지원 강화 (1) 유치원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 시스템 구축 (2)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통합보육 활성화 (3) 사립유치원에 유아특수교사 배치 2)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강화 (1) 지원대상 확대 (2) 발달재활서비스 제도 개선 3)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사업





# 제2장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계획(안) 공청회

# 제1부 | 평등한 참여를 위한 기반 구축

발제 | 조형석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기획조사팀장)

토론 | 조한진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임성택** (법무법인 지평지성 변호사)

**남병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장)

**임소연**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

조원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서인환**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 계획(안) (2013~2017)

# 발제 1

조형석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기획조사팀장)



#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 계획(안) (2013~2017)

[등록등급제/전달체계/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지역사회참여 여건 마련/접근권/장애인권리협약]

### 조형석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기획조사팀장)

# 장에인 인권증진 중장기 계획 (2013 ~ 2017) (등록등급제/전달체계/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지역사회참여 여건 마련/접근권/장애인권리협약)

#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 계획 개요

- 🔵 수립배경 및 목적
- □ 장애정책에 대한 새로운 인권적 요구 급증
- 장애관련 정책이 장애인의 기본적 인권 보장에 미흡
- 장애 관련 정책이 인권적 관점보다는 사회적 의제에 따라 단편적 분절적으로 시행



장에인의 기본적 인권보장을 위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 필요

#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 계획 개요

- 🔵 수립배경 및 목적
- □ 장에인 인권침해 및 차별 진정 급증
  -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장애 차별이 많다고 응답한 장애인 비율 80.7%
  -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 차별 진정 건수 최근 3년간 월 평균 94건
  -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인지도 29.2%



'장에인 인권침해 및 차별 해소,장애인차별금지법 효과적 이행을 위한 전략적 계획 필요



#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 계획 개요

- 🔵 수립배경 및 목적
- □ 장에인 정책발전 5개년 계획과 연동 필요
- 총 3차에 걸쳐 '장에인정책발전 5개년계획'이 수립·시행되었으나, 인권 의제 미흡



'제4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계획(2013~2017)' 수립 시, 인권 의제 확대 필요

#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 계획(안)

- 奈里
- □ 명칭
- 2013년 ~ 2017 "장에인 언권증진을 위한 중장기 **개**획"
- ㅁ 비전(Vision)

"평등한사회 참여를 통한 장애인의 기본적 인권 보장"

#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 계획(안)

● 전략목표 및 체계도

비 전	평등한 사회참여를 통한 장애인의 기본적 인권보장				
전략목표	평등한 참여를 위한 기반 구축	적절한 삶의 향유를 위한 기본권 보장	차별시정 및 예방 강화	다중적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기반 구축	
추진목표		적절한 생활수준의 보장 '일할 수 있는 기회 및 권리 보장 '기본적인 교육권 및 교 육기회 보장 '장애인 주거 지원 제도 강화 '차별 없이 건강을 향유 할 권리 보장 '개인의 이동권 보장 '자기결정권 보장	·모니터링 강화 ·장애인권센터 설치 ·장애인 인권교육 강화	·발달장애 (지작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장애여성 ·장애아동	

#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 계획(안)

- 주요 특징
- □ 시해와 복지 차원에서 인식되던 장애인 정책을 인권의 문제로 전환
- □ 원칙은 포괄적으로 수립하되. 구체적이고 이행 가능한 목표 설정
- ㅁ국가의 최소 핵심의무에 우선순위를 둔 목표 설정
- □ 비전 → 전략목표 → 추진목표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계획 마련
- □ 장에인 인권 증진을 위한 범정부차원의 종합추진계획 수립
- □ 4대 전략목표. 21개 성과목표를 중심으로 주요사업 내용 연동



#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 계획(안)

저략 목표

# Ⅰ. 평등한 참여를 위한 기반 구축

- Ⅱ. 찍極한 삶의 향유를 위한 기본권 보장
- Ⅲ. 料體시정 및 예방 강화
- Ⅳ. 다중적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기반 구축

# 전략목표 I. 평등한 참여를 위한 기반 구축



배경 및 필요성

획일적 · 분절적 행정 시스템

장에인의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등록 등급제

서비스 신청권의 형식적 운영

지역사회 생활을 위한 지원시스템 미흡



장애인의 평등한 사회참여를 위한 기본 토대 구축 필요

# 전략목표 I. 평등한 참여를 위한 기반 구축

- 추진목표
  - ◇ 장애인 등록등급제 개선
  - 🕖 장애인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 시회복지 서비스 신청권 활성화
  - 4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개선
  - 5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여건 마련
  - ⑥ 장애인 접근권 보장
  - 7 장애인권리협약의 구체적 이행

### 1. 장애인 등록등급제 개선



- 등록등급제에 의한 일률적 서비스 제공
- 🌘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 파악 미흡
- 협소한 장애범주



- 🧪 등록등급제와 서비스 수급권의 분리
- 개인의 욕구와 환경에 기초한 서비스별 장애사정 기준 마련
- 장애 범주 확대



### 1. 장애인 등록등급제 개선

# 1) 등록등급제와 서비스 수급권의 분리

- ✓ 장애인 등록만 하고 일률적인 등급제는 때지
- ✓ 등록제는 장에인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기초 자료로만 활용
- ✓ 등록장에인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필요도에 따라 급여와 서비스 제공 여부 및 수준 결정

### 2) 개인의 욕구와 환경에 기초한 서비스별 장에 시정 기준 미련

- ✓ 장애인연금, 활동지원제도, 언무고용제, 특수교육 등 급여와 서비스별 대상자 선정 기준 및 급여 수준을 각각 결정하는 장에 사정 기준 마련
- ✓ 다만, 개별 서비스별로 중복 사정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급여와 서비스 간 연동 시스템 개발

ex) 활동지원제도를 어용하는 장애인에게는 별도의 사정없이 장애인연금 수급 제공

### 1. 장애인 등록등급제 개선

### 3) 장에 범주 확대

- ✓ 非법정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한 개선 필요
- ✓ 1차적으로 소화기 장에, 중증 피부질환, 기질성 뇌증후군을 법정 장에범주에 포함
- ✓ 지속적으로 비뇨기계, 혈관, 학습장에, 알콜중독 등에 대해서도 범주 확대

# 전략목표 I. 평등한 참여를 위한 기반 구축

- 추진목표
  - 장애인 등록등급제 개선
  - 🔼 장애인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 🚯 사회복지 서비스 신청권 활성화
  - 4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개선
  - 5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여건 마련
  - ⑥ 장애인 접근권 보장
  - 7 장애인권리협약의 구체적 이행

# 2. 장애인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 『장애인복지법』상 행정기관의 업무가 장애등록 및 카드, 급여 제공으로 한정되어 있고 서비스 욕구 파악에도 미흡
- 서비스 제공에 있어 공공영역과 민간영역 분절

추진 방향

-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을 보장하는 공공전달체계 마련
- 지역사회 밀착형 민간 전달체계 구축
- 장애 관련 전문 인력 자격 양성체계 정비
- 장애인정책지원단 설치



## 2. 장애인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 1) 장애인의 "지미결정권" 및 '선택권'을 보장하는 공공전달체계 미련
  - ✓ 장에인 개개인의 특성 및 필요에 따라 지원하는 개별화 전달체계 확립
  - ✓ 공적 전달체계와 민간 전달체계 간의 유기적·협력적 관계 구축
- ✓ 장에인의 욕구와 지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사정할 수 있도록 복지·노동·교육 관련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팀을 지방정부에 마련
- ✓ 민간기관 : 직접서비스 제공 기능 수행
- 2) 지역시회 밀착형 민간 전달체계 구축
  - ✓ 장에인생활시설에 대해 지역사회기여평가제 등 도입 : 시설–지역사회 간 소통 및 개방정도를 평가기준으로 선정

## 2. 장애인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 3) 장에 관련 전문 인력 지격제도 정비
  - ✓ 의지·보조기 기사 및 직업재활사 등 장에 관련 전문 인력 자격제도 정비
- 4)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상설회
  - ✓ 현재 회의체 조직으로 되어 있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상설 기구로 전환
  - ✓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부처간 의견조정과 정책평가 등 수행 연구기능 강화

# 전략목표 I. 평등한 참여를 위한 기반 구축

- 추진목표
  - 장애인 등록등급제 개선
  - 🕖 장애인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 사회복지 서비스 신청권 활성화
  - 4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개선
  - 5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여건 마련
  - ⑥ 장애인 접근권 보장
  - 7 장애인권리협약의 구체적 이행

## 3. 시회복지 서비스 신청권 활성화



- 서비스 신청방식이 방문신청으로 제한
- 결정된 보호방법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미비
- 직권신청제도 비활성화

추진 방향

- 🕤 서비스 신청 간편화
- 🌘 이의제기 절차 마련
- 직권신청 활성화



## 3. 시회복지 서비스 신청권 활성화

#### 1) 서비스 신청 간편화

- ✓ 방문 신청 외에 전화와 홈페이지로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청방법 다양화
- ✓ 신청단계가 아니라 사정단계에서 구비서류를 제출하도록 허용

#### 2) 이의제가 절차 미련

- ✓ 결정된 보호방법에 불만족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업법』에 제33조의9(이의제기) 조항 신설
- ✓ 신청권과 관련하여 문제 발생 시 때치할 수 있는 권리보호 및 옹호 시스템 도입

#### 3) 직권신청 활성회

✓ 일선 담당 복지공무원이 서비스 신청 및 직권신청 절차를 제대로 숙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 매뉴얼 마련

### 전략목표 I. 평등한 참여를 위한 기반 구축

- 🖯 추진목표
  - ◇ 장애인 등록등급제 개선
  - 🕖 장애인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 🚯 사회복지 서비스 신청권 활성화
  -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개선
  - 5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여건 마련
  - ⑥ 장애인 접근권 보장
  - 7 장애인권리협약의 구체적 이행

### 4.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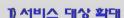


- 1급 장애인에게 서비스 한정
- 🧴 활동보조인에 대한 당사자 선택권 미보장
- 서비스 제공 시간 부족
-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노인장애요양보험제도의 단절

추진 방향

- 첫 세비스 대상 확대
- 🌘 서비스 제공 상한선 폐지
- 65세 이상 서비스 선택권 부여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장애인활동지원 중 선택권 보장)

### 4.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개선



- ✓ 신청자격에서 장애등급 제한 폐지. 활동지원급여 관련 별도의 선정기준 마련
- 2) 서비스 제공 상한선 폐지
  - ✓ 서비스 제공 상한선 폐지, 서비스 제공 필요도에 따른 서비스 기준 마련
  - ✓ 이를 위해 『장에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개정 필요
- 3) 65세 이상 서비스 선택권 부여
- ✓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간 서비스 연속성 확보를 위해 양자 중 선택권 보장
- ✓ 이를 위해『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개정 필요



## 전략목표 Ⅰ. 평등한 참여를 위한 기반 구축

- 추진목표
  - 장애인 등록등급제 개선 1
  - 장애인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2
  - 사회복지 서비스 신청권 활성화
  - 4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개선
  - 5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여건 마련
  - ⑥ 장애인 접근권 보장
  - 7 장애인권리협약의 구체적 이행

## 5.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여건 마련



- 지역사회 거주 희망 장애인에 대한 욕구파악 미흡
- 주거시설 유형 단순화
-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역할 미비
- 자립생활을 위한 초기 지원 미흡



- 단계적 주거 지원 서비스 마련
-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역할 재정립
- 초기 정착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 5.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여건 마련



#### 1) 단계적 주거 지원 서비스 미련

- ✓ 거주시설 장에인 및 성인전환기 장에인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자립생활 희망 욕구 조사
- ✓ 자립생활 희망 장에인에게 자립홈 등 대안적 거주 공간 마련
- ✓ 지속적인 사후관리 시스템 마련

### 2) 장애인지립생활센터 역활 재정립

- ✓ 담당공무원과 함께 장애인에 대한 개별화된 서비스 계획 수립
- ✓ 지역사회에 필요한 자원을 개발·연계하는 등 장에인의 초기 정착 지원
- ✓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비 보조 필요

### 5.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여건 마련



#### 3) 초기 정착을 위한 시회안전망 구축

- ✓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초기 비용 일부 지원
- ✓ 공공임대주택, 자립홈, 그룹홈 등 다양한 주거공간 마련
- ✓ 자립생활센터 직원이 함께 초기정착을 도울 수 있도록 시스템 마련



## 전략목표 I. 평등한 참여를 위한 기반 구축

- 추진목표
  - 장애인 등록등급제 개선 1
  - 장애인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2
  - 사회복지 서비스 신청권 활성화
  - 4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개선
  - 5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여건 마련
  - 장애인 접근권 보장
  - 7 장애인권리협약의 구체적 이행

## 6. 장애인 접근권 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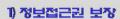


저작권법에 의한 시각장애인 파일 제공 제한



- 정보접근권 보장
  - [1] 저작권법 개정을 통한 출판물 접근권 보장
  - [2] 수화언어의 법적 지위 향상
- 시설접근권 보장
  - [1] 신축시설의 설계 시 상세도면 첨부 및 관련기관 자문 의무화
  - [2] 신축시설 편의시설 설치 후 제거 방지

### 6. 장애인 접근권 보장



- (1) 저작권법 개정을 통한 출판물 접근권 보장
  - ✓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시각장에인의 출판물 접근권 확대
- [2] 수화인이의 법적 지위 향상
  - ✓ 수화인이에 대한 법적 지위 향상
  - ✓ 수화인이를 사용하는 방송서비스 확대 및 수화사용자 증대 도모

### 6. 장애인 접근권 보장



- (1) 신축시설 설계 시 상세도면 첨부 및 관련기관 자문 의무화
  - ✓ 『장에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편의시설 설치 대상 확대
  - ✓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건축물 설계 계획서 제출 시 편의시설 상세도면 첨부 및 관련기관 자문 의무화
- (2) 신축시설 편의시설 설치 후 제거 방지
  - ✓ 건축법 개정을 통해 신축시설 건축 시 시설하가를 위해 일시적으로 편의시설 설치 후 제거하는 행위 금지



## 전략목표 I. 평등한 참여를 위한 기반 구축

- 추진목표
  - 장애인 등록등급제 개선 (1)
  - 장애인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2
  - 사회복지 서비스 신청권 활성화 3
  -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개선 4
  - 5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여건 마련
  - 장애인 접근권 보장 6
  - 장애인권리협약의 구체적 이행

## 7. 장애인권리협약의 구체적 이행



- 유니버셜 디자인에 대한 인식부족
- 권리협약 25조 (e)항 비준 유보로 인한 장애인 보험가입 제한
- 선택의정서 비준 유보



- 장애인지예산 제도 도입 및 예산 확대
- 유니버셜 디자인에 기반을 둔 정책 추진
- 장애인권리협약의 유보조항 철회 및 선택의정서 채택

### 7. 장애인권리협약의 구체적 이행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및 결산 시 장예인지예산제도 도입

#### 2) 유니버셜 디지인에 기반을 둔 정책 추진

- ✓ 건축, 도시, 교통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 수립 시 유니버셜 디자인 반영
- ✓ 유니버셜 디자인 국가종합계획 수립
- ✓ 국가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유니버설 디자인 담당부서 설치 및 '유니버설 디자인 국가종합계획' 시행 담당
- ✓ 유니버셜 디자인법 제정

## 7. 장애인권리협약의 구체적 이행

- 3) 장애인권리협약의 유보조항 철회 및 선택의정서 체택
- ✓ 보험가입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상법』제732조 개정 필요
- ✓ 협약 제 25조 (e)항에 대한 유보 철회
- ✓ 선택의정서 비준을 통해 장애인권리위원회를 통한 구제 및 조사권 보장



# '평등한 참여를 위한 기반 구축'에 대한 토론

# 토론 1

# 조한진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평등한 참여를 위한 기반 구축'에 대한 토론 - '장애인 등록·등급제 개선'을 중심으로 -

조하지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장애인 등록 · 등급제는 몇 년 전부터 현재까지 장애계에서 끊임없이 개선을 요구해 온이슈이다. 이에 부응하여 발제자가 제시한 '추진 방향'과 '주요 내용'에 대해 본 토론자는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바이며, 다만 이견이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토론을 할까 한다.

첫째, 발제자는 장애인 등록 시스템을 유지하되 장애인 현황을 파악·관리하는 기초자료로만 활용하자고 하였다. 우선, "장기적으로는 일괄적 등록제도와 함께 법정 장애 범주를 폐지"하자고 하는 것으로 보아 장애인 등록 시스템의 유지는 단기적인 추진 방향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인의 욕구와 환경에 기초한 서비스별 장애 사정 기준을 마련한다면, 그 기준에 따라 사정하는 기관에 장애인이 등록하고 그것이 전국적으로 취합되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되지 굳이 단기적으로라도 현재와 같은 일괄적인 관 주도의 장애인 등록 시스템을 유지할 필요는 없다. 물론 기관별로 장애인이 등록할 때 장애인이 여러 기관에 중복 등록될 우려가 있다. 그러나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현황이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을 통하여 파악·관리되고 있는 선례가 있으므로, 중복 등록의 문제는 크게 우려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둘째, 발제자는 장기적으로 급여와 서비스별로 적용 대상이 되는 장애인의 범주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개인의 욕구와 환경에 기초한 서비스별 장애 사정 기준을 마련한다면, 이 역시 그 기준에 따라 급여와 서비스의 적용 대상이 결정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장애인의 범주를 정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장애인의 범주를 자꾸 정하려는 발상은 장애인의 유형을 정하고 있는 현재의 마인드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셋째, 발제자는 등록하지 못하고 있는 법정 외 장애인의 수를 줄이기 위하여 장애 범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보장하자고 하였다. 장애 범주를 확대한다고 해서 다양한 장애인의 삶의 질이 보장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논외로 하더라도, 장애 범주의 지속적인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분명 일리 있는 추진 방향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이것은 굳이 현재의 장애인 등록・등급제에 손을 대지 않는다 하더라도 추진할수 있는 사항이라고 볼 때, 장애인 등록・등급제와 관련하여 발제자가 제시한 추진 방향은 단기와 중・장기와 같이 시기별로 배열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다. 그렇다면, 발제자가 제시한 추진 방향은 '장애 범주 확대', '등록・등급제와 서비스 수급권의 분리', '개인의욕구와 환경에 기초한 서비스별 장애 사정 기준 마련', '일괄적 등록제도와 함께 법정 장애범주의 폐지'와 같이 시기별로 재배열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시기별로 재배치해 본다고 해서 본 토론자가 이들 과정을 모든 거쳐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본인은 장애 등급제의 폐지가 주장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굳이 장애 범주를 확대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일괄적인 등록 · 등급제를 폐지하고 개인의 욕구 · 환경에 기초하여 서비스별로 장애를 사정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이러한 방식을 지금 당장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 전에 등록 · 등급제와 강하게 연동되어 있는 서비스 수급권이 무엇이 있는가를 파악하고 이를 분리하여 수급권을 개인의 욕구 · 환경에 기초한 서비스별 장애 사정과 연동시키는 과정을 거쳐야 할 수도 있다. 여하튼 추진 목표는 '현행의 획일적인 장애인 등록 · 판정제도의 폐지'와 '급여 수급 자격의 개별적 평가제의 도입'이어야 하지 '등록 · 등급제의 개선'이어서는 안 된다.

이 중 급여 수급 자격의 개별적 평가제의 도입과 관련해서는 "장애인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에서 논하기로 하고, 본 토론자는 우리나라에는 장애등급제의 개선이나 폐지를 넘어서 장애 정의에서부터 개선할 여지가 많다고 주장하고 싶다. 이렇게 장애 정 의부터 개선하자고 본다면 장애인과 관련된 현행의 대표적인 법률에서의 장애 정의를 재 검토해 보지 않을 수 없고, 이에 이들 장애 정의의 재검토를 본 토론자의 결론으로 갈음 하고자 한다.1)

<sup>1) &#</sup>x27;조한진 (2011). 장애등급의 문제를 넘어서 - 장애의 정의・분류・측정 -. 재활복지, 15(4),



우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과 장애인복지법의 장애 정의에서의 큰 문제는 장애인들이 직면하는 문제의 원인을 사회의 실패에서 찾지 않는다는 데에, 즉 사회정치적접근법이 아닌 의학적 접근법에만 그 초점을 두고 있다는 데에 있다. 이에 근본적으로 장애 범주를 확대하는 쪽보다는 좀 더 종합적인 장애의 정의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많은 연구자와 장애 옹호자들도 폭넓은 장애 정의가 더 좋다고 여기는데, 그것은 의학적 질환이나 손상에 강조점을 두지 않고 손상의 영향을 포착하기 때문이다. 물론 너무 광범위해서 사례들 간에 효과적으로 구별하지 못할 수 있다며 그런 정의를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정의를 엄격하게 하는 것은 개인이 무작위로 빠지게 될지도 모르는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이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지 않고 기능적 제한 접근법에 따라 근로 장애를 측정하는 것이 개선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근로에서의 제한'이라는 정의를 부여하는 것이 외국의 경우에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정보 기술에서의 진전 및 직장에서의 편의에 대한 중요성의 증가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위 세 법률의 경우에 손상되지 않은 신체 기능과 구조, 활동을 하는 능력, 그리고 제약 없는 참여는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 물리적·사회적 환경에 의존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물론 법률에는 그 제정 목적이 있고 장애 관련법도 각각의 법적·정책적 목적에 따라 장애를 정의하려 할 것이므로, 한국의 모든 장애 관련법이 사회정치적 접근법에 근거하여 장애를 정의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장애의 이론 모델이 의료적모델에서 사회적 모델로 전환되고 있는 흐름 속에서 의학적 접근법 내지 기능적 제한 접근법에만 근거를 둔 장애 정의를 고수하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못한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위 세 법률도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법'처럼 완전히 사회정치적 접근법에 근거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 세 법률에 사회정치적 접근법의 요소를 가미하여 나머지 두 접근법과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위 세 법률에서의 장애 정의를 개정해서, 의료적 이상·손상에서부터 사회적·환경적 차원까지를 함께 고려하는 상호작용적 접근을 취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통합적으로 장애를 정의하고자 할 때 한국이 준거할 수 있는 예로서 ICF(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기능, 장애 및 건강에 관한 국제 분류)를 들

<sup>1-26.&#</sup>x27;을 참고하였다.

수 있고, 법률로는 미국의 ADA(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미국장애인법)와 재활법 (Rehabilitation Act)을 참고할 수 있다. 특히 재활법의 경우에 법률 내에서 특정 section과 title의 목적에 비추어 각기 다른 정의를 융통성 있게 채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우리가 꼭 고려해야 보아야 할 방식이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장애인복지법 제4장(자립생활의 지원)의 경우에 적용 대상 장애인이 의학적 접근법이 아니라 기능적 제한 접근법 내지 사회정치적 접근법에 따라 정의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도 인권법의 위상에 걸맞게 사회 정치적 접근법에 근거한 장애 정의를 갖도록 개정하는 것도 꼭 해야 할 작업 중의 하나이다.



# '평등한 참여를 위한 기반 구축'에 대한 토론 - '장애인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

'장애인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과 관련해서는 그 '추진 방향'과 '주요 내용'에 있어서 큰 이견이 없으며, 다만 한 가지만 이견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 내용 중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을 보장하는 공공전달체계 마련'을 보면 "장애의 조기 발견과 조기 개입을 위해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관련 전문 인력들로 구성된 팀을 지방정부에 설치"하자는 내용이 있다. 우선 여기에서 "장애의조기 발견과 조기 개입"이라고 했을 때 그 '장애'가 "물리적·사회적 장벽에 기인하여 다른 사람과 동등한 수준에서 지역사회의 평상의 생활에 참여할 기회의 상실 또는 제한"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은 확실하다. 그렇다면 첫째, "장애의 조기 발견과 조기 개입"이 아니라 '건강 이상이나 손상의 조기 발견과 조기 개입"이라는 말이 더 적절하다. 둘째, 그렇게 용어를 고친다 하더라도 건강 이상이나 손상이 조기 발견, 심지어 조기 개입을 해야할 대상이냐 하는 데에는 장애학적인 논쟁의 요소가 분명히 있다. 셋째, 설사 이 두 번째 논점을 양보하고 건강 이상이나 손상에 대해조기 발견하고조기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선택권의 보장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가하는 것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본 토론자로서는 이 두 가지가 연결될 수 있는 대안이 퍼뜩 생각나지 않고, 이에 발제자가 그 대안을 제시할 수 없다면 "장애의 조기 발견과조기 개입을 위해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관련 전문 인력들로 구성된팀을 지방정부에 설치"하자는 내용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을 보장하는 공공

<sup>1)</sup> Albrecht, G. L., Seelman, K. D., & Bury, M. (Eds.). (2001). *Handbook of disability studies*. Thousand Oaks, CA: Sage.

전달체계 마련'이라는 제목 하에서는 빠져야 할 것 같다.

그 밖에 발제자가 제안한 내용에 관해서는 이견이 있다기보다는 보충하거나 좀 더 내용을 분명히 할 부분이 있다.

첫째, 발제자는 장애인정책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체계를 정비하자고 하였다. 이 제안 에 대해 본 토론자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이지만, 좀 더 꼼꼼히 생각해볼 때, 정비해야 할 '장애인정책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체계'가 과연 우리나라에 있었는가 싶다. 물론 장 애인실천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체계는 분명히 존재하고 이는 정비 내지 확대해야 할 필 요가 있다. 그러나 장애인정책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체계가 전무하거나 부실한 것은 분 명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장애인정책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 보다도 시급하다. 이와 관련하여, 모든 장애 정책은 장애인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나름대 로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있기 마련이고 따라서 그 가치 기준에 주목하는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면, 장애와 관련하여 새로운 다학제적 학문 분야(예, 장애학)가 필요하고 또 이 에 대한 지원 또한 절실하다. 이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나 한국장애인개발원과 같은 보 건복지부 산하 공공 연구기관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학 내에 장애학 연구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장애 관련 학과(재 활학과, 사회복지학과, 특수교육학과 등)가 상대적으로 집적되어 있는 대학을 거점 대학 으로 선정하여, 장애학전문대학원의 신설 내지 일반대학원 내 장애학협동과정(어느 특정 학부의 학과에 종속되지 않는)의 신설(제1안)을 지원하거나 장애학연구센터의 신설(제2 안)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발제자는 '장애인정책지원단'의 설치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 위상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아 이 조직에 관한 정확한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다. "부처 간 의견 조정, 정책 평가, 모니터링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연구·조사 기능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하자고 한다면 그 조직이 부처 수준을 넘어선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유명무실하지만 현재 존재하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폐지하지는 말인지아니면 현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상설 위원회화하는 것은 어떤지에 관한 언급이 전혀없다. 또한 장애계에서 주장하는 가칭 '장애에 관한 대통령위원회'와는 이름만 다를 뿐같은 성격의 조직인지 아니라면 그 둘 간의 관계는 어떠한지에 관한 설명도 없다. 더 나아가 이처럼 머리 역할을 할 기관만 설치되면 되는지, 손발 역할을 할 조직은 정비 내지설치될 필요가 없는지에 관해서도 검토가 부재하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하에 한국장애인개발원, 국민연금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시·도 교육청 등이 있고 또 이 기관들이 서로 간에 분절되어 있는 상태에서 서비스와 프로그램이 중복되거나 단절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는 먼저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고, 이는 시간상으로나 비용 면에 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그러나 지방정부 내 사업 시행ㆍ관리 담당 인력의 비전문화의 문제 및 지방정부 내 장애인 정책 • 서비스에 대한 관심도와 예산 비율의 하 락의 문제가 상존하는 한, 지방정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이 같이 고려되지 않는 다면, 이는 오히려 악수(惡手)가 될 수 있다. 장애인 정책・서비스에 관한 한 지방정부 중 심에서 중앙정부 중심으로 화원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현 시점에 있어서는 더욱 그 러하다. 그렇다면 최소한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의 산하 기관의 역할만이라도 통합하 는 가칭 '장애인청' 내지 '장애인공단'의 설치도 전향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선택지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장애인청이나 장애인공단이 설치되고 그 밑에 광역 조직 과 지역사무소가 설치된다면 초기 상담지 작성과 욕구조사를 통하여 '장애인 등록・등급 제 개선'과 관련하여 위에서 언급한 '급여 수급 자격의 개별적 평가제의 도입'의이 가능하 고, 이 과정을 통하여 서비스 자격이 주어지면 이후에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서비스 계 획 전달과 서비스 의뢰, 서비스 연계, 모니터링, 사례관리 협력체계 구축, 통합사례회의와 같은 일련의 역할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한편, 서비스 제공 기관은 대상자 발굴·추천,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사례관리 협력체계 구축, 통합사례회의와 같은 역할 만 수행하면 되는 것이다.3)

이 외에도 장애인 정책·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과 관련하여 본 토론자가 평소에 생각해 오던 것을 이 기회에 제안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 서비스·비용 흐름의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복지 시설·기관이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흐름에서 정부가 장애인에게 (소득 보장 정책을 통하여) 직접 비용을 제공하고 장애인이 스스로 선택한 시설·

<sup>2)</sup> 프랑스에는 이와 관련하여 '장애인 지방 센터'(La Maison Départementale des Personnes Handicapées)와 '장애인 권리 및 자립위원회'(Les Commissions des droits et de l'autonomie des personnes handicapées)가 있다.

<sup>3) &#</sup>x27;김문근, 조한진, 윤상용, 이승기 (2011). 통합적 장애인복지전달체계 개발 연구. 대구: 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참고하였다.

기관에서 비용을 지불하여 서비스를 구입하는 흐름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이다.

둘째, 장애인의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하여 장애인복지 시설·기관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의 P&A(Protection and Advocacy, 보호 및 옹호) 시스템과 같은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셋째, "장애인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려면 무엇보다도 장애인 정책·서비스의 계획·모니터링·평가에서 장애인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활성화 부분

토론 2

## 임성택

(법무법인 지평지성 변호사)



#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활성화 부분

임성택

35

(법무법인 지평지성 변호사)

## I. 추진목표에 대하여

2003년 7월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라는 장이 신설되었다(제2장의2). 사회복지서비스를 신청한 뒤 구체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때까지 절차 규정이 마련된 것이다(제33조의2부터 제33조의7까지 6개 조문). 이 규정들이 도입되면서 국가의 '조치제도'!) 틀 안에 머물러 있던 사회복지서비스가 비로소 권리의 영역으로 한 걸음전진하였다. 사회복지서비스가 국가에 의한 단순한 시혜가 아니라, 당사자 스스로 서비스제공을 요구할 권리로 인정된 것이다(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나아가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직권신청제도, 획일적인 복지서비스가 아니라 대상자 개인의 상황과욕구를 헤아려 개인에 따라 장단기로 서비스계획을 세우도록 한 보호계획제도가 도입되었다.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당사자의 욕구를 조사하고 관련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듣게 하는 등 절차적 권리를 강화한 것이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당사자의 관점에서 정비한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다만 아쉽게도 이 제도는 사실상 전혀 작동하지 않아 왔다. 법전 속에 잠자는 제도에 그쳤던 것이다. 따라서 이 제도를 실질화하고 현실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절차적 권리에 해당하는 신청권이 제대로 작동되어야 사회적 소수 자의 실체적 인권이 구체적으로 보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sup>1)</sup> 사회복지서비스가 국가의 시혜적 조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중장기계획(이하 '중장기계획')에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을 활성화하려는 추진목표를 포함시킨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추진목표를 통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을 보다 실질화시켜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장애인들이 자신의 개별적인 상황과 욕구에 부합된 개별화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Ⅱ. 추진방향과 주요 내용에 대하여

### 1. 서비스 신청의 간편화

사회복지사업법은 서비스 신청방법을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않다(제33조의2). 그런데 동법 시행규칙에서는 서비스 제공 또는 변경을 신청할 때 서면으로 관할 행정청에 제출하 도록 하고 있다(제19조의2). 시행규칙의 해석상 직접 행정청을 방문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 로 행정청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보인다. 다만 구두로 신청하거나 전화 또는 이메일과 같은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법률이 신청을 방법을 제한하지 않는데도 이렇게 시행규칙에서 서면 제출의 방법으로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 등이 행정청을 방문하여 정해진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어렵고 까다롭다. 또한 장애인은 이동이 곤란하고, 사회복지시설 같은 곳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도 많아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u>서비스 신청방법을 다양화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다. 다만 중장기계</u> 획에서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2 1항을 개정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나,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방법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한편 중장기계획에서는 신청단계가 아니라 사정단계에서 구비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며, 이를 위해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시행규칙에서는 서비스 신청서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부양관계, 소득·재산상태 및 건강상 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소득·재산 신고서를 첨부"하도록 하였기 때문이다(제19조의2). 그런데 서비스 신청을 보다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고, 시행규칙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은 복지요구를 조사하는 단계에서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중장기계획의 내용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종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서는 신청서 양식을 별지로 정하고 있었는데(서식 14의2),<sup>2)</sup> 2009년 11월 30일 개정을 통해 별지를 삭제하였다. 당시 별지를 삭제한 것은 안 그래도 유명무실했던 신청권 제도를 더욱 형해화시키는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신청서 서식을 다시 정비하여 시행규칙 별지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 2. 이의제기 절차의 마련

서비스 신청절차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이를 다툴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서비스 제공 실시 여부 및 그 유형에 관한 결정은 법률상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행정소송 (특히 항고소송)을 통하여 다툴 수 있다. ① 당사자가 신청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대표적일 것이나, ② 당사자가 신청한 서비스가 아닌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는 결정, ③ 당사자가 신청한 서비스를 불충분하게 제공하기로 하는 결정에 대하여도 다툴 수 있다고 본다. 한편 위법한 결정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행정청 내부의 이의제기 절차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물론 행정청의 처분과 부작위에 대

<sup>2)</sup> 종전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지14호의2 서식에 의하면 신청서는 첫째, 보호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가족사항을 기재하는 부분과 둘째, 주요 문제 및 욕구를 기재하는 부분, 셋째, 필요서비스를 기재하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필요서비스는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주요 문제 및 욕구는 필요서비스에 대응하여 ① 생계·경제적 문제, ② 장애·질병·의료 문제, ③ 주거 문제, ④ 가족·사회관계 문제, ⑤ 기타로 나누어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중복 표시가능).

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나, <u>사회복지사업법에서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u>고 본다. 이의제기의 대상은 서비스 제공 여부 및 유형 결정과 같은 처분 및 부작위로 한정하지 말고, 넓게 인정될 필요가 있다. 외국의 예에서처럼 <u>본인, 보호자, 대리인 등이 서비스의 부족·거절·지연, 직원의 행동이나 태도, 직원의 구성, 의견 수렴 부족</u>등과 같은 내용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서비스 신청과정에서 장애인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권리보호 및 옹호 시스템을 도입하여야 한다는 중장기계획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스스로의 의사를 표시하고 권리주장을 하는데 취약한 장애인들의 경우 서비스 신청권의 존재를 잘 알지 못하는데다가 그 절차를 스스로 진행하는 것에도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권리보호 및 옹호기관이신청절차를 조력하고, 문제가 생길 경우 이의신청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3. 직권신청의 활성화

일선 담당 복지공무원이 서비스 신청절차를 제대로 숙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 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하고, 또한 보편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마련된 직권신청 규정이 활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업무매뉴얼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는 중장기계획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서, 복지담당공무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직권신청이라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복지의 권리화는 자기결정권에 기초한 것이므로, 직권신청은 당연히 당사자의 동의를 전제로 한다. 또한 당사자가 동의한 때에 당사자가 신청한 것으로 의제되기 때문에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하지만 스스로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거나 여러 사정으로 복지서비스 신청을 하지 못한 사람을 위한 국가의 배려인 셈이다.

신청권을 활성화하고, 조치제도의 관행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도 직권신청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오랜 조치제도의 관행과 역사 때문에 복지서비스를 권리로 인식하지 못하



는 당사자에게 복지서비스 신청제도가 있다는 것을 널리 알릴 필요가 있으며, 직권신청이 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본다.

### Ⅲ. 기타 의견

### 1. 신청권의 명문화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행정청에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것처럼 이는 복지서비스가 더 이상시혜가 아닌 권리라는 것을 보여준다. 다만 신청권의 존재를 명확히 하고, 특히 복지가국민의 권리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서비스 제공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명문화하는 것도 바람직하다(아래 안 제33조의2 제1항).

### 2. 예산과 조직의 확보

신청권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선 예산과 조직이 확보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신청권 제도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실시하는 절차에 관한 규정이므로 전달체계와 밀접하 게 관련을 맺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사회복지서비스센터를 시군구 단위로 구성하고, 예산 을 지원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에서 복지사무전담 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재량규정을 개정하여 설치의무를 부과하고, 이 기구가 제2장 의2에 의한 사회복지서비스 실시를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이 가능할 것이다(아래 안 제15 조의3).

# 3. 홍보 및 정보의 제공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제도가 널리 홍보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복지서비스는 시혜가 아닌 권리라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한다. 나아가 이용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안내하여야 한다. 따라서 행정청은 서비스 이용자에게 제

39

공할 수 있는 관할지역(이용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요청하는 지역) 안에서의 사회복지서비스의 종류와 내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와 같은 내용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안 제33조의 2 제3항).

### 4.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근거 마련

사회복지사업법은 서비스 실시 절차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고, 어떤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별 내용이 없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업법의 다른 규정이나 장애인복지법 등 개별 법에 근거를 둔 서비스만을 제공할 수 있는지 문제로 된다. 만일 개별 법에 근거를 둔 서비스만을 제공할 수 있다면 개인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는 어려울 수 있다. 주거지원, 생계비 지원, 의료지원, 취업지원 등 각종 복지서비스를 개별 법률의 근거가 없더라도 개인에 따라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주거지원과 현금지원의 근거를 마련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복지법 등 개별 법률의 공백을 메꿀 필요가 있다고 본다.

### 5. 당사자의 선택권 강화

당사자의 선택권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 제도가 운용되어야 한다. 사회복지서비스 실시 절차에 있어서 당사자가 참여하여 자신의 욕구와 필요한 서비스에 대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이러한 당사자의 욕구가 반영되도록 복지서비스를 제 공하여야 한다. 국가의 일방적 조치로 서비스 제공을 결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는 방식이 적극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 예컨대 서 비스 계약제도가 그 하나의 예이다. 또한 당사자를 보호대상자로 객체화하는 관점에서 벗어나야 한다(보호담론 탈피).

### 6. 시안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시안을 초보적이나마 만들어 보았다(아래 개정 시안 참조).



### [별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시안

### ● 주요내용

-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을 홍보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 공할 의무를 부과함(안 제4조 제6항).
- 나. 복지사무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재량규정을 개정하여 설치의무를 부과하고, 이 기구가 제2장의2에 의한 사회복지서비스 실시를 담당하도록 함(안 제15조의3)
-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신청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함 (안 제33조의2 제1항)
- 라. 서비스 신청 단계에서 자치단체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과함(안 제33조의 2 제3항)
- 마. 복지요구 조사 단계에서 이용자에게 의견진술권을 부여함(안 제33조의3 제5항)
- 바.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는 법률에 근거를 둔 것에 제한되지 않으며, 이용자에게 필 요로 하는 생활비, 주거, 의료 및 재활 등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33조의4 제2항)
- 사. 서비스 제공시 관할구역 뿐 아니라 다른 지역의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의4 제3항)
- 아. 의견을 청취하는 대상으로 권리옹호기관을 추가함
- 자. 서비스 제공방법에 현금을 추가함(안 제33조의7 제1항 단서)

### ● 개정안

제4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6항을 신설한다.

- 제4조 (복지중진의 책임)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민이 본인 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u>적절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u>한다.
  -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이하 '이용자'라고 한다)가 제2장의2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홍보하고, 이용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안내하여야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5조 (복지사무전담기구의 설치)** ①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복지사무를 전담하는 기구를 둔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사무전담기구는 제2장의2에 의하여 이용자에게 사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비롯하여 이 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을 담당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용자의 욕구와 상황에 맞는 사회복지사업을 충실 하게 전개하기 위하여 복지사무전담기구의 인력과 예산을 확보할 의무가 있다.
- 제33조의 2부터 7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보호대상자"를 "이용자"로, "보호"를 "서비스 제공"으로 하고.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 제33조의2 (사회복지서비스의 신청) ①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하 "<u>이</u>용<u>자</u>"라 한다)과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이하 "서비스 제공"이라 한다)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 ② 시·군·구 복지담당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서비스 제공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이용자가 신청한 것으로 본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관할지역(이용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요청하는 지역) 안에서의 사회복지서비스의 종류와 내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u>서비스 제공신청</u>을 받거나 제2항에 따른 직권신청의 동의를 받을 때 <u>이용자</u>에게 제33조의3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조사하거 나 제공받는 자료 또는 정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 1. 법적 근거, 이용 목적 및 범위
  - 2. 이용방법
  - 3. 보유기간 및 파기방법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비스 제공의 신청 및 고지 방법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33조의3 (복지 요구의 조사)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3조의2에 따른 서비스제공 신청을 받으면 복지담당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한다. 다만, 상 담을 신청받은 경우나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신청인의 복지 요구와 관련된 사항이나 그 밖에 신청인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사항
  - 2. 이용자 및 그 부양의무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부양의무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득·재산·근로능력 및 취업 상태에 관한 사항
  - 3. 이용자 및 그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라 실시되는 급여,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혜 이 력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서비스 제공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목적으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신청인 또는 이용자와 그 부양의무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정보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2조제3항, 제5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23조를 준용한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기 위하여 금융·국세·지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矯正)·가족관계증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⑤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33조의4 (서비스 제공의 결정)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3조의3에 따른 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서비스 제공 여부와 그 유형을 결정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는 법률에 근거를 둔 것에 제한되지 아니하며, 이용자에게 필요로 하는 생활비 지원, 주거 지원, 의료 및 재활서비스, 직업

#### 소개 및 지원, 상담 등을 포함한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용자가 다른 지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요청한 경우, 해당 지역에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지를 조사한 뒤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면 서비스 제공결정을 하여야 한다.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서비스 제공의 실시 여부와 그 유형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이용자와 그 친족, 복지담당공무원 및 지역의 사회복지사업·보건의료사업 관련 기관·단체, 권리옹호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서비스 제공의 실시 여부와 그 유형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33조의5 (이용자별 서비스 제공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용자에 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권리옹호기관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용자별 서비스 제공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용자 또는 그 친족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유형·방법·수량 및 제공기간
  - 2. 제1호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할 기관 또는 단체
  - 3. 같은 이용자에 대하여 제1호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기관 또는 단체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기관 또는 단체 간의 연계방법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용자에 대한 <u>사회복지서비스 제공결과</u>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이용자별 서비스 제공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u>이용자별 서비스 제공계획</u>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한다.
- 제33조의6 (서비스 제공의 실시)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3조의5에 따라 작성된 이용자별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긴급히 서비스 제공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보건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 제33조의7 (서비스 제공의 방법) ①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은 현물(現物)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u>다만 필요한 경우 현금으로 제공할 수 있다.</u>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 하여금 제1항의 서비스 제공을 실시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지급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 그 이용권으로 서비스 제공을 받게 할 수 있다.
  - ③ 현금 또는 이용권의 지급대상,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 부렁으로 정하다.
- 제33조의8 (정보의 파기)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3조의3제2항부 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사하거나 제공받은 정보 중 <u>이용자</u>가 아닌 사람의 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 이 경우 정보의 보유기한이 지나면 지체 없이 이를 파기하여야 한다.



#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토론 3

### 남병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장)



##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남병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장)

## I.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요

-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 장애인의 자기결정과 선택을 지지하고, 장애인의 지역사회 생활을 지원하고, 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
- 2011년 각 지자체에서 실시된 시설생활인 자립생활 욕구조사에서 활동보조서비스는 소득, 주거 등과 함께 자립생활을 위해 가장 시급히 필요한 것으로 응답.
- 절박한 중증장애인들의 삶의 현실에서 터져나온 생존권 투쟁. 10만명 이상의 장애인 이 1년에 외출을 10회 미만으로 하는 현실 (2005년 보건복지부 장애인실태조사).
- 2005년 중증장애인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2006년 서울시, 대구시, 인천시, 경기도 등 지자체 투쟁, 2007년 국가인권위원회 단식투쟁으로 제도화.
- 2007년 전국적 사업시행 이후에도 정부와 국회, 각 지자체를 상대로 예산확보투쟁, 대상제한 폐지투쟁, 자부담 폐지투쟁, 생활시간 확보투쟁 등을 치열하게 진행.
- 2011년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2011년 10월부터는 종전 '장애인활동보조사업'이 '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 전환.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도입을 앞두고 장애계와 추진단을 구성, 시범사업 등 진행하며 쟁점 사항에 대해 논의를 하였으나, 장애계의 주요 요구들이 반영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강행됨.

#### ▼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도입에 관한 장애계 핵심 요구

- 서비스 대상제한 (1급장애인으로 자격제한) 폐지와 장애등급재판정 중단.
- 서비스 상한제한 (월최대 180시간 정도에 불과) 폐지와 생활시간 보장.
- 본인부담금 인상 (최대 15%부과) 반대 및 법개정을 통한 본인부담금 폐지.
- 연령제한 폐지와 65세 이상의 경우 본인에게 서비스 선택권 보장.
- 인정조사표 개선 및 장애인의 환경적 요인을 감안한 서비스판정체계 구성.
- 활동보조인 처우개선 및 서비스 질관리 대책 마련.
- 주간보호 등 시설형태 서비스를 제도에 통합시키는 것 반대.
- 위탁운영 (국민연금공단) 반대와 지자체 책임성 강화.
- 영리기관 참여금지 및 바우처제도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대안 마련 등.

## Ⅱ.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주요 문제점과 개선방향

### 1. 대상확대 - 장애등급제한 폐지

- 장애인활동지원법 시행령에서 서비스 신청자격을 1급장애인으로 제한하고, 장애등급 심사 결과 등급이 하락되면 서비스가 중단되도록 하고 있음.
- 장애등급재판정과 등급하락에 대한 공포로 인해 장애인은 서비스신청을 기피하는 상황 (2010년 7월 장애인연금신청 거부선언 등).
- 현행 활동지원제도는 고작 5만여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일상생활의 대부분을 타인의 도움에 의존하는 35만명(전체 장애인의 14.5%.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 중에서고작 15%만이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 제한적인 제도임.
- 2급 및 3급장애인도 상당수 서비스를 필요로 하며, 서비스 필요도와 장애등급은 일치하지 않음에도 장애등급제를 강행하는 것은 예산의 논리로 권리를 제한하는 것임.
- 장애등급에 의한 대상제한을 폐지하여야 함. 또한 장애등급재판정을 즉각 중단하여 야 함.



#### ▼ 세부과제

- ◎ 현행 1급으로 대상제한 문제 : 장애등급에 의한 서비스 제한을 폐지해야 함.
- ◎ 현행 신규신청자 장애등급심사, 기존 이용자 장애등급재판정 강요 문제 : 장애등급재판정 을 중단하고. 장애등급제를 폐지해야 함.
- ◎ 현행 만65세 이상 서비스신청자격 제한 문제 : 65세 이상도 본인에게 선택권 부여해야 함.

### 2. 급여 확대

- 활동지원급여는 기본급여(일상생활수행능력평가)와 추가급여(주거, 직장 등)로 구성.
- 기본급여는 최중증장애인의 경우에도 월최대 103시간에 불과. 최중증독거장애인의 경우에도 월최대 183시간, 최대 하루평균 6시간 수준에 불과.
- 하루24시간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경우 중증장애인의 경우, 서비스 부족으로 인해 자립생활이 어려운 상황.
- 인정조사표 기준만으로 획일적으로 급여량 판정. 추가급여도 지침에 의한 획일적 적용으로 장애인간 결혼이나 출산 시 오히려 급여량이 축소되는 문제가 발생.
- 18세미만 장애아동의 경우 개인의 환경 등을 고려하지 않고, 성인의 절반 수준으로 서비스 상한제한을 하고 있음.

### ▼ 세부과제

- ◎ 현행 서비스 상한제한의 문제 : 상한제한 폐지하고, 최중증장애인에게 하루 24시간 서비 스가 보장되어야 함.
- ◎ 현행 추가급여의 상한제한 및 획일적 적용의 문제 : 의료적 기준 뿐 아니라 개인의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여 추가급여 항목을 확대하여야 함.
- ◎ 현행 유명무실한 위원회 체계의 문제 : 수급자격심의위원회와 이의신청심의위원회가 개인의 환경과 욕구를 고려한 개인별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함.

### 3. 본인부담금 폐지

- 법에서 본인부담금을 최대 15%로 정하고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수준으로 본인부담 금의 상한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부가급여에 대하여는 상한제한 없이 추가 본인부담 금을 추가로 부과하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본인부담금의 상한이 없는 상태.
- 서비스를 더 많이 필요로 하는 중증장애인일수록 본인부담금을 더 많이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 장애인활동보조사업에서 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 전환되면서 급여량 확대는 미미한데 반해 본인부담금은 크게 인상되었음. (급여량 확대없이 2009년 최대 월4만원 -> 2010 년 최대 월8만원 -> 2011년 최대 월12만원 이상)
- 서비스 수급자격이 있음에도 25% 이상의 중증장애인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은 상황, 본인부담금의 문제가 가장 큰 요인임.

#### ▼ 세부과제

◎ 현행 과도한 본인부담금의 문제 : 본인부담금을 폐지하여야 함. 활동지원제도는 중증장에 인의 권리로서 무상 제공되어야 함.

### 4. 서비스 질관리 대안 마련

- 정부는 서비스질관리에 대한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고, 바우처수수료를 둘러싼 시장 경쟁에 복지서비스를 내맡기고 있음.
- 활동지원제도는 장애인의 거동을 지원하는 대인서비스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사업기 관에서는 특별한 질관리 프로그램이 없이 양적인 경쟁에만 몰입하고, 서비스의 질이 하락되고 공공성이 파괴되고 있음.
- 성추행과 인권침해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사업기관의 관리도 없고, 사업기관에 대한 평가시스템도 없는 상황.
- 장애인이 활동보조인에 의해 학대를 받았으나 파악되거나 대응하지 못하는 사례.
- 활동보조인이 장애인에 의해 성추행을 당했으나 파악되거나 대응하지 못하는 사례.



대응하는 경우 활동보조인이 해고되는 사례.

### ▼ 세부과제

◎ 현행 서비스 질관리 부재의 문제 : 정부에서 서비스 질관리 기준 마련하여, 교육과 상담, 인권침해사건 대응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 5. 바우처제도 개선과 활동보조인 처우개선

- 현행 활동지원제도는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바우처(이용권)로 제공하고, 지정된 사업 기관에서 서비스 제공량에 따른 바우처수수료 수익으로 사업기관 운영하는 방식.
- 정부는 1) 개인의 서비스 선택권 강화와 효용 증대 2) 수요 창출에 의한 공급 증대로 일자리 증대 효과 3) 공급자 간의 경쟁 제고와 이를 통한 질적 개선 및 효율성 제고 등의 이유로 사회서비스에 바우처제도를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음.
  - \* ('09년) 노인돌봄, 산모신생아도우미 등 8개 사업 → ('10년 이후) 아이돌보미, 지역사회서비스 청년 사업단, 노인장기요양보험(재가), 방과후 돌봄 등 12개 이상
- 바우처수수료를 둘러싸고 지역사회 복지네트워크의 파괴 등 과당경쟁의 폐해가 심각 히 발생.
- 활동보조인과 사업기관 등의 수가인상 요구를 장애인의 급여를 잘라내는 방식으로 만들어 장애인과 보조인의 갈등을 유발하게 됨.
- 활동지원제도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급여로 구성하고, 바우처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하지만, 비용부담으로 인해 방문목욕과 방문간호 등은 실질적으로 이용이 극히 어려운 상황.
- 활동보조인과 노인요양보호사 등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 노동 기본권도 보장받지 못한 상태.
- 활동보조인은 사업기관에 형식적으로 소속이 되어있으나, 언제건 계약이 해지될 위험에 처한 극도의 고용불안 상태이며, 이로 인해 인권침해가 있어도 대응하기 어려운 조건에 처해 있음.
- 활동보조인은 최저임금 수준의 시급으로 임금을 받고, 법정수당도 받지 못하는 상황.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이 심야 또는 공휴일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장애인의 바우 처에서 시간당 1,000원을 할증결제 하도록 하여, 장애인과 활동보조인의 관계를 대립 관계로 왜곡시키고 있음.

#### ▼ 세부과제

- ◎ 현행 활동보조인의 열악한 조건 문제 : 활동보조인에게 근로기준법이 지켜질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함. 장애인의 서비스를 잘라 보조인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말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수당을 보장하여야 함.
- ◎ 현행 활동보조인의 고용불안 문제 : 정규직 고용 (일정비율) 의무화 등 고용보장 대안을 마련해야 함.
- ◎ 현행 과당 시장경쟁의 문제 : 바우처 수수료제도를 폐지하고 지자체가 공적 서비스기관을 설립하고, 서비스제공을 관리하는 공적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여건 마련' 토론문

토론 4

## 임소연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



##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여건 마련' 토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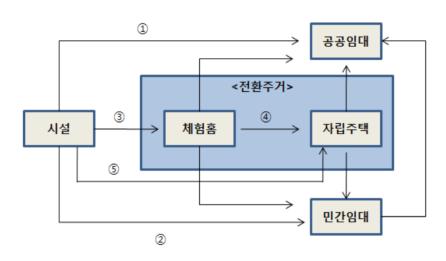
임소연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

## I. 단계적 주거 지원 서비스 마련

- 현재 보건복지부에는 시설거주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는 담당부서나 담당자가 없고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시설거주인 대상으로 한 전국적인 자립욕구조사를 실시하여 자립생활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정책적으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 시설거주인에 대한 자립욕구조사는 지자체로는 2008년 서울, 2009년 부산, 2010 광주, 2012년 대구에서 실시하였고 2012년 하반기 현재 인천시에서 진행하고 있다. 장애인 자립생활 패러다임, 대형시설 폐기 등 최근 추세를 반영, 시설거주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절실하고 이에 전국 장애인생활시설 거주인에 대한 탈시설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시설거주인에 대한 자립지원해야고 그첫 번째 단계로 전국적인 자립욕구조사 및 정기적인 자립욕구조사를 실시하여 시설거주인의 의견을 수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욕구조사를 통해, 지역사회 참여을 위한 정책수립을 하고 단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가야 한다. 중앙정부에서 정책수립이 필요한 만큼 중앙정부차원 전국적이고 정기적인 조사실시가 있어야 하고 정기적인 조사시기 등 자세한 방법은, 일부 지자체에서 제정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등에서 명시한 자립욕구조사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겠다.
- 서울시(2009), 부산시(2009), 광주시(2010)가 실시한 시설거주인의 자립욕구 조사결

과 시설거주 장애인의 탈시설 욕구는 서울시57%, 주거 및 서비스 지원 시 70.3% 자립희망, 광주시 41.3%, 주거 및 서비스 지원 시 42.2% 자립희망, 부산시 57.6% 자립희망으로 약 50%이상이 자립생활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하기위해 무엇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3개 지역 모두, 집, 생활비, 활동보조, 일자리 등이 상위에 들었다. 서울에서는 주택지원이 52.2%, 생활비보조가 47.8%, 활동보조지원이 37.2%가 나왔고 부산에서는 1순위로 살집을 구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47.5%가 응답하였고 2순위로는 생활비 보조 30.5%, 3순위로는 일자리를 구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25.0%가 응답하였다. 광주에서는 자립생활을 위해 제공되어야 하는 서비스의 우선순위를 보면, 생활비 및 생활용품 보조가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서비스였고, 다음으로는 주택 확보였으며, 다음으로는 일자리였다. 위 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나듯이 시설거주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주거공간 제공은 자립을 위한 물적토대 마련에 가장 중요한 핵심과제이다.



[그림 1] 시설거주인의 자립을 위한 주거공간

○ ①과 같이 시설에서 곧장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하기란 현실적으로 힘들다. 우선 세대주독립이 되어야하는데 대부분의 시설거주인은 시설장의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최근에야 시설거주기간이 무주택기간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서 밀리게 된다. 물론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기 위한 보증금 마련도 녹녹치 않다.



②와 같이 민간임대로 가는 경우는 최소한 보증금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시설 내에 서 몇 백만원 이상의 보증금을 모으기 어렵고 편의시설을 고려할 경우. 일반 주택 가에서 거의 집을 구할 수 없고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구하게 되면서 비용이 더 발 생하게 된다. 이렇듯 시설거주인 개인의 노력만으로 집을 구해서 지역사회로 자립 하기란 매우 어려운 현실이기 때문에 체험홈이나 자립주택과 같은 '전환주거!)'를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해야는 것이 필요하다. 체험홈은 임시주거공간의 형태로. 오 랫동안 시설생활로 인한 지역사회와의 괴리감을 줄이고 초기정착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주거지원과 함께 각종 서비스를 연계, 지원할 수 있다. 자립주택은 좀 더 독립적인 주거형태로. 체험홈이 1년 이내 등 비교적 짧은 거주기간을 갖는다면. 자 립주택은 공공임대나 민간임대로 가기 전까지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최 소 보증금 등을 마련할 수 있는 기간 동안 제공하는 주택형태라고 볼 수 있다. 어쨌 든 전환주거는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자립하려는 시설거주인에게 제공해야하는 최 소한의 기본적인 물적토대라고 할 수 있다. 지자체 중에서는 서울시가 장애인전환 서비스지원센터를 통해 체험홈과 자립주택(자립생활가정)을 제공하고 있다2). 대구 시, 경남도, 전남도, 인천시 등에서 체험홈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는 정 도이다. 지자체 재정, 지자체 공무원의 이해 등으로 인한 시설거주인 자립 주거공간 지원에 대한 지자체별로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앙정부차원의 지원 이 필요하고 법적근거 마련인 우선이다. 아래는 현행법을 근거로 하여 개정할 경우,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예시이다.

현 행	개정안 예시
제53조(자립생활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 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위하여 활동 보조인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 또는 장애인보 조기구의 제공, 그 밖의 각종 편의 및 정보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3조(자립생활지원)

<sup>1)</sup>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자립 전환을 위해 필요한 주거공간이라는 의미로 전환주거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체험홈, 자립홈, 자립주택, 자립생활가정 등 지역마다 그 형태와 의미 등이 다르게 운영되고 있음. 서울시 경우, 체험홈은 최장 2년, 자립생활가정은 최장 5년 거주.

<sup>2)</sup> 서울시는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를 설립(현재 서울시복지재단 운영), 전환주거 등을 제 공하며 탈시설 지원을 하고 있음.

### Ⅱ.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역할 재정립

○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역할 재정립의 내용으로 자립희망 시설거주인의 자립계획 수 립과 지워 역할을 제안하였는데 이는 현재 대부분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주요 한 활동꼭지로 하고 있는 내용이다. 또한 2011년부터 보건복지부는 국고지원을 받 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중점사업으로 시설거주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포함하였다. 다만 이런 역할을 어떻게 공식화하느냐가 관건이다. 장애 인자립생활센터가 시설에 들어가서 자립상담을 하고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을 때. 갈등을 유발하지 않으려면, 시스템적으로 그 역할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즉 중 앙정부와 지자체에서 시설거주인자립전환 부서를 마련하고 그 체계에 따라 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공식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담당공무원과 함께라고 표현했는데, 이는 최소한의 배치이지 바람직한 전달체계는 행정부처에 이 를 수행할 부서가 만들어지고 그 부서의 책임 하에, 시설거주장애인의 자립지원이 계획되어야 한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시설거주인 자립지원에 관한 역할과 함께 풀어야할 과제는 지역사회지원체계를 어떻게 구축하느냐이다. 한 시설거주장애인 이 시설에서부터 지역사회 정착하기까지는 수많은 기관과 관계를 맺게 된다. 지자 체, 생활시설, 자립생활센터, 주민센터, 복지관, 장애등급심사센터, 병원 등, 이런 기 관의 공조체계 없이는 시설거주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논하기 어렵다.

## Ⅲ. 초기 정착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 시설 거주 장애인이 지역사회 자립하는 경우 지역사회 정착 초기에 소득보장과 관련하여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시설에서 사는 것과 달리 의식주 해결과 관련하여 필요한 돈을 본인이 직접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초기 정착 시 공적시스템에 근거한 주거지원이 거의 부재한 현재, 주거공간구입비, 물품구입비 등은 개인적 부담이 되고 있는 형편이다 더욱이 시설수급자인 경우 장애수당만 본인에게 직접 지급되는 현실에서 시설에서부터 목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했을 때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초기비용 지원은 절실하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에



서 시설거주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자립정착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현재 중 앙정부 차원의 지원은 없고, 서울, 대구, 인천, 경남, 전북 등 지자체에서 500만원 정도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전국적인 지원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 현재 그나마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 자립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수급자고 활동보조신청이 가능한 장애등급 1급에 한정되어 있다. 즉 수급자이면서 장애등급 1급인 사람만이 자립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이는 결국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사람들은 계속 시설에서 살아야 한다는 말이다. 부양의무기준 폐지와 장애등 급제 폐지와 같이 전반적인 사회보장 시스템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는 과제 가 자립을 원하는 시설거주인에게도 핵심적인 과제이다. 단계적으로 비수급자이거 나 활동보조 신청자격이 되지 않아서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시설거주인에 게도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위해서는 지자체에서 일정기간동안 소득지원과 활동보조지원을 할 필요가 있겠다.
- 시설거주인 중 시설퇴소 후 지역사회에 주소이전을 하면 기존 수급자이였던 사람 도 수급재심사를 하게 되면서 한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수급자 재심사로 인한 수급비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생계비의 대부분을 수급비에 의존하고 있는 시설거주인에게는 매우 치명적이다. 기초생활수급과 의료보호가 연동되어 있는 현 시스템에서는 이 기간 동안 의료보호 지원도 받을 수 없다. 이에 수급재심사 기간 동안 수급유지가 필요하다. 활동보조서비스의 경우, 시설에서 나온 경우 등급재심사 및 활동보조신청기간동안 긴급활동보조지원을 통해, 월 69만원 바우처 이용이 가능하나 보다 안정적인 초기정착을 위해서는 긴급활동보조시간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밤에 혼자 있는 시간 안전 도모를 위해 지역사회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면 밀히 검토해야한다. 긴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집 내의 안전장치와 지역 소방서, 경찰서 안전 연계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 장애인 접근권 보장

토론 5

조원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 장애인 접근권 보장

조워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 I. 추진 목표 및 방향

장애인의 접근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의 중요한 내용이자 이들의 실현에 있어서의 본질적인 수단이 되는 권리임. 따라서 장애인의 접근권은 자립생활의 문제를 넘어 장애인 인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의 하나이므로 장애인 접근권을 향상시키는 법적, 정책적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하는 것인 시의적절함.

특히 기존 법률에서 장애인의 접근권이 보장되고는 있으나, 그 실질을 살펴보면 접근권의 보장이 매우 제한적이라거나 위반에 대한 제재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여 실질적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법령 개정의 필요성이 어느 분야에 못지않게 중요함. 따라서 장애인의 접근권의 실질화를 위한 법령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됨.

## Ⅱ. 주요 내용에 대한 의견

정보접근권 보장의 내용으로 (1) 출판물 접근권 보장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 (2) 시청각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보장, (3) 수화언어의 법적 지위 향상을 과제로 설정하고 있음.

먼저 저작권법은 공표된 저작물의 점자로의 복제·배포는 제한 없이 인정하고 있으나 (제33조 제1항), 공표된 어문저작물을 녹음하여 복제·배포하는 경우는 일정한 시설로 제한하고 있음(제2항).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장애인 생활시설, 점자도서관,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중 시각장애인 등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 특수학교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특수학급을 둔 각급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시각장애인 등의 교육·학술 또는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시설이 이에 해당됨. 따라서 복제·배포가 가능한 시설의 범위가 적절한지가 검토되어야 하는데, 시각장애인 등의 교육·학술 또는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시설이라면 이를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이 있음. 최근 사회적 기업 등 영리법인의 공익활동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시설의 범위가 확대될 필요가 있음.

시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보장과 관련해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임. 수범자의 확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방송통신위원회의 고시에서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하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통신 방식의 다양화를 고려하여 중계서비스의 주체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며, 나아가 매체나 수단에 있어서의 다양화도 기해야 함.

시설접근권 보장과 관련해서는 (1) 신축시설의 설계에서의 상세도면 첨부 및 관련기관 자문 의무화 및 (2) 신축시설의 편의시설 설치 후 제거방지를 과제로 설정하고 있음.

신축시설의 편의시설이 눈가림식으로 설치되었다가 제거되어 온 실태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법령 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이와 더불어 기존 기설의 증개축에 있어서의 편의시설 설치에서도 동일한 의무가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무엇보다 편의시설의 설치 대상을 확대해 가는 것이 필요함.

한편 "시설"에 대한 접근의 문제를 단지 유형적인 접근으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이를 관련된 무형적 접근까지도 포괄하는 접근이 필요함. 예컨대, 웹사이트나 (스마트폰) 앱을 통한 정보의 제공이 활발해지고 있고 사실상 시설의 이용도 이에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



따라서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의 문제는 더 이상 "정보"의 이용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며, 시설이나 설비의 이용과 연계되어 있는 문제임. 역으로 시설접근권의 문제는 이제 정보 에 대한 접근까지를 포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함.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편의증 진법의 개정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Ⅲ. 기타 의견

장애인의 접근권은 편의제공의 측면이 아닌 권리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함. 편의의 내용은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는데 법령의 개정은 그러한 사회나 기술의 변화를 신속히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임. 이로 인하여 장애인이 변화로부터 소외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음. 따라서 차별금지 규정을 통한 편의제공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국가인권위는향후 관련 법령의 해석, 적용에 있어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적극적인 법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장애인권리협약의 구체적 이행

토론 6

**서인환**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 장애인권리협약의 구체적 이행

서인환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 I. 장애인권리협약의 구체적 이행

### 1. 추진 방향

-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의 문제에 대해 개인의 재활이나 시혜적인 복지차원이 아니라 장애인의 실질적인 참여와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권리에 기초한 접근패러다임에 입각하고 있으며 장애인을 정책적 차원에서의 프로그램 대상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의 정당한 소유자이자 주체자로 본다는 점을 내포하고 있어 장애인당사자의 참여를 적극 도모하고 있음
- 장애인만을 위한 예산, 장애인만을 위한 정책의 개발로 인해 장애인에 대한 분리, 배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장애인 정책 전반에 걸쳐 장애인지적 관점이 확보되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지적 관점의 확보가 필요함
  - 장애인지 예산은 정부의 예산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평등이 이루어지는 방향에서 예산이 편성, 집행되도록 하는 제도이며, 정책과 재정운용 전반에 걸쳐서 장애 평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책 임성을 강화하며 장애 평등을 확산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장애인의 신체적 및 행동적 특성을 고려한 장애인 전용 디자인이라는 이분법적 편

의시설 설치 정책은 기본적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분리하는 정책임. 따라서 변형·조정 또는 특수 디자인을 필요로 하지 않고 최대한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있도록 고안된 재화 또는 환경 디자인을 의미하는 유니버설 디자인에 기반을 둔 정책추진이 필요함

- 분리는 차별을 낳고 결과적으로 시설의 방치와 예산의 낭비를 가져옴. 예를 들어 장애인용화장실의 경우 장애인은 장애인용화장실만 사용하여야 하며(분리), 장애인이 자주 사용하지 않는 장애인용화장실은 창고로 사용되고(분리), 별도의 장애인용화장실을 설치해야 하는 예산의 낭비를 초래함
- 유니버설 디자인의 특징은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환경요소를 제거한다는 것이며, 따라서 경사로라는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계단이라는 요소를 제거하여 평면의 출 입구를 만드는 방법 등을 적용하는 것임
- 장애인권리협약에 대해 국회에서 비준을 하였으나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상법」제732조와 충돌한다는 이유로 권리협약 25조 (e)항의 비준을 유보했음. 또한 장애인이 인권침해를 당했는데 국내법으로는 구제가 안 될 경우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조사권을 보장하는 등 18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선택의정서에 대해서는 아직도 비준을 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상법 개정, 유보조항 폐지, 선택의정서의 비준이 필요함

## 2. 주요 내용

### 1) 장애인지예산 제도 도입 및 예산 확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및 결산 시 장애인지예산제도를 도입
- 장애인 정책 뿐 아니라 모든 정책 형성 시에도 장애인지적 관점을 적용하여 정책 이 장애인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함



### 2) 유니버설 디자인에 기반을 둔 정책 추진

- 건축, 도시, 교통 등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을 수립할 경우 유니버설 디자 인을 반영하여 수립하며, '유니버설 디자인 국가종합계획'을 수립함
- 국가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에는 유니버설 디자인 담당부서를 설치하고 담당자를 두도록 하며, 담당부서 및 담당자는 '유니버설 디자인 국가종합계획'의 시행을 담당함
- 유니버설 디자인 정책의 활성화를 위해 유니버설 디자인 제품 구매를 장려함
- 유니버설 디자인법의 제정 필요

#### 3) 장애인권리협약의 유보조항 철회 및 선택의정서 채택

- 「상법」제732조(15세 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는「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17조(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와 충돌하고 있으며, 보험가입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결 과적으로 장애인의 건강권을 훼손하고 있음
- 따라서 「상법」 제732조의 개정이 필요하며, 개정이 될 경우 협약 제25조 (e)호에 대한 유보는 철회될 수 있음
- 또한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를 통한 구제 및 조사권을 보장하는 선택의정서에 비준할 경우「상법」제732조 규정에 따른 차별을 유엔에 구제신청 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의정서를 비준하여 장애인의 구제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함

### Ⅱ. 토론

### 1. 서언

장애인권리협약의 구체적 이행은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하였고, 헌법상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는 점에서도 실천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새로운 아 · 태 장애인 10년(2013~2022년)의 주도국으로서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의 완전한 비준과 완 전한 이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 아·태 장애인 10년의 실천을 위해서도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 계획은 수립되어야 한다.

처음 계획 수립을 위해 목차를 만들었을 때에는 1) 장애 인지적 예산 수립, 2) 유니버셜 디자인 정책 추진, 3) 장애인정책발전5개년계획(장애인복지법상으로는 복지종합계획) 내실화, 4) 권리협약의 완전한 비준 등이었다. 권리협약의 내용을 보면 평등 및 비차별(5조), 장애여성(6조), 장애아동(7조), 인식재고(8조), 접근성(9조), 생명권(10조), 구조와 피난(11조), 법에서의 평등(12조), 사법 접근권(13조), 자유와 안전(14조), 비인도적 대우로부터 자유(15조), 학대로부터의 자유(16조), 존엄성 보호(17조), 이주의 자유(18조), 자립생활권(19조), 이동권(20조), 정보접근권(21조), 프라이버시권(22조), 가정권(23조), 교육권(24조), 건 강권(25조), 재활권(26조), 노동권(27조), 수급권(28조), 참여권(29조), 문화권(30조) 등 24개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정하고 있다.

목차 1은 권리협약의 내용이 아니다. 장애인의 권리보장 노력에 성인지적 관점을 포함하라는 것(전문 머)이므로 성인지에 대한 언급이다. 그러므로 장애 인지적 예산을 도입하면 예산이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반영할 수 있으므로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하여 목표로 선정한 듯하다.

목차 2에 해당하는 유니버셜 디자인은 용어 정의에서 보편적 디자인이라 하였고, 일반 의무(4조)에서 언급한 내용이다. 많은 의무사항 중에서 이것만 강조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 동안의 추진 정책과는 다른 새로운 개념의 도입이므로 이를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고, 사회개발이나 제품개발에서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는 방안이라 여겨 선택하였을 것이다. 보편적 디자인을 확대해석하여 정책에 적용하면 장애인을 포함한 포괄적 개발이 될 것이나, 여기까지 개념을 확대하지는 않았다.

목차 3의 정책발전5개년 계획은 권리협약 전문에 장애인을 위한 국가적 계획의 중요성을 전문에서 인정하기는 하였으나, 구체적 언급은 없다.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 것은 장애인 세계행동계획과 제2차 아·태 장애인 10년행동계획이었다. 처음 계획은 부처간 협력이나 실현가능성과 목표달성을 위한 과감한 계획, 당사자의 의견의 충분한 반영 등을 통하여 권리협약을 촉진해야 한다거나, 권리협약의 이행이 정책발전 5개년 계획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선정하였으나, 구체적으로 다루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여 제외한 것이 아닌가 한다.

목차 4는 협약의 내용이 아니라 국내에서의 효력을 위한 비준에 관한 것이다. 24개 권



리협약에서 언급한 권리 중 우선순위를 정하여 그 중 집중적으로 다룰 필요성이 있는 것을 선정하지 않고 인지적 예산 도입과 보편적 설계라는 새로운 방식의 도입을 계획한 것이다. 최소한 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계획이라면 24개 권리에 대한 이행 감시와 국가보고서의 검토, 민간보고서의 지원, 그리고 권리협약의 구체적 실천을 위한 새로운 아・태 장애인 10년(인천전략)의 이행을 위한 지원과 모니터링 등도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차법에 의한 진정사건은 주무부처로서 다룬다. 권리협약에서의 권리에 대한 문제는 어느 기관이나 부처에서 다루게 되는 것인가? 국가인권위에서의 역할과 관여 정도는 무엇인가의 입장 정리부터 해야 할 것이다.

### 2. 주제별 추진 목표

### 1) 장애 인지 예산

지자체에서는 장애 인지 예산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곳이 몇 곳 있으며,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 재정에서 장애 인지적 예산을 적용하려면 먼저 국가 재정법을 개정해야 한다.

다음으로 장애인지 예산을 위한 영향평가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 그리고 장애 인지 예산 수립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을 알리기 위한 교육과 세미나 등이 필요하다.

그리고 인지 예산 편성에서 당사자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흔히들 인지 예산을 쿼터제 예산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예산의 장애인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실제 예산 집행 후 영향이 어떻게 미쳤는지 인지적 예산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다.

이는 연간 10억 원의 예산을 필요로 한다. 다만 여성 인지 예산에서의 영향평가 도구나 기술들이 선행기술로 참고가 될 것이다.

## 2) 보편적 디자인

보편적 디자인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보편적 디자인을 적용했는지를 평가하는 도구가 먼저 개발되어야 한다. 그 다음으로 이러한 개념을 건축, 제품 개발 등에서 적용하도록 하는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건축과 제품의 인증에서 심사과정이 있어야 하고, 심사의 원칙과 절차, 구성원, 보편적 설계의 의무범위, 인센티브 등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3) 완전한 비준

2012년 10월 송도에서 에스캅 정부 고위급 회의가 열리며 새로운 아태 장애인 10년이 선포되면서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의 완전한 비준과 이행을 목표로 계획이 추진된다. 이를 주도하는 한국으로서 유보조항을 갖고 있다거나 선택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았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기도 하고, 주도국의 자격조차 의심받을 만하다. 선택의정서는 국내에서 차 별이나 미이행에 대하여 구제절차를 충분히 거쳐야 하므로 이행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법 으로 정한 이상 지키는 것을 재확인하는 과정을 피할 이유가 없다.

유보조항 역시 상법에서는 장애인이 아니라 심신상실자와 심신박약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미 보험약관 등에서의 차별조항을 삭제하였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차별금지법에서도 정하고 있으므로 상법과의 충돌조항을 들어 유보할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선택의성서 비준과 유보없는 비준은 1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 인권위 원회에서는 각 관련 정부 부처에 국회에 비준요구안을 내도록 촉구하고 국회에도 촉구하 는 것을 목표로 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장애인 당사자와 법률가들로 구성한 상충법률 개정위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한 후 상충법률을 정비해 나가는 지금과 같이 권리협약과 상충되는 법률에 대한 검토와 개정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인권위는 국회에 개정권고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은 헌법적 성격으로 권리를 선언하고 최소한의 이행을 장제하고는 있으나, 수준이나 예산 등 구체적 이행을 다루고 있지 못하다. 그러므로 권리 협약의 실천을 위한 국내법 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법안연구를 장기간에 걸쳐 추진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은 장차법과 장애인복지종합법률의 제정을 위하여 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다년간 활동하고 있는 바, 그러한 활동을 국가인권위가 지원하여 장애인단체나 인권위가 국회에 청원입법이든, 정부입법이든, 의원입법이든 형식을 찾으면 될 것이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에서 2년 단위로 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과 이행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할 수 있다.

목표: 1. 완전한 비준

- 2. 타법률과의 상충조항 연구와 법률 개정
- 3. 권리협약 이행을 담은 국내법 제ㆍ개정
- 4. 2년 주기로 이행 보고서 작성

### 3. 맺으며

과제별 현황 및 문제점, 추진 전략, 추진 일정, 소요 예산, 목표 실천 주체, 기대 효과 등 구체적 게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국제장애인권리협약과 장차법, 기타 타법률과 겹치지 않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거나 구체적이지 못한 법 조항을 감안하면 장애여성, 자립생활권, 인식재고, 프라이버시권, 재난으로부터의 보호(피난과 구조) 등에서의 조치 등은 별도로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자립생활의 경우, 시설이용자의 축소와 탈시설 지원으로 소득보전, 주거보급, 권익옹호, 지역 서비스 전달체계 확립 등 다양한 정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장애여성의 경우 부처간의 협력을 통한 종합계획의 수립과 그 계획의 욕구 충족도 조사, 이행에서의 미비한 점에 대한 촉구, 모니터링 등 다양한 목표와 인권위의 역할이 있을 것이다.

아·태 장애인 10년이 권리협약의 여러 가지 조치와 정책 중 우선순위를 정하여 이행 하려는 것이므로 인권위에서는 그 이행에 대한 지원과 홍보, 모니터링 등을 중장기 계획 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며, 특히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의 해설과 홍보, 교육 등에 많은 사업 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할 것이다.

인권관련 기관에서 국가적 계획을 수립하는 것과 그 계획 속에서 인권위가 하여야 할 일을 분리하여 계획을 수립하면 인권적 측면과 실천적 측면의 게획이 마련될 수 있을 것 이다.





# 제2장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계획(안) 공청회

# 제2부 | 적절한 삶의 향유를 위한 기본권 보장

**발제 | 조형석**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기획조사팀장)

**토론 | 서정희** (군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남용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업영역개발팀장)

김기룡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사무처장)

은종군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정책홍보국장)

**김윤태** (가톨릭대학교 재활의학과 교수)

배융호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사무총장)



#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 계획(안) (2013~2017)

발제 2

조형석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기획조사팀장)



##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 계획(안) (2013~2017)

[소득/노동/교육/주거/건강/아동/자기결정]

#### 조형석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기획조사팀장)



#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 계획(안)

전략 목표

- 1. 삥忘엔 참여를 위한 기반 구축
  - Ⅱ. 적절한 삶의 향유를 위한 기본권 보장
  - Ⅲ.. 以檀시정 및 예방 강화
  - Ⅳ. 다중적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기반 구축

## 전략목표 Ⅱ. 적절한 삶의 향유를 위한 기본권 보장



배경 및 필요성

장에인 연금 지원수준 미흡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근로자성 불인정

개별 장애인의 교육적 특성 미반영

시설수용 중심의 주거정책 시행

건강권 및 이동권 보장 미흡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수준으로 기본적인 제도 강화 필요



## 전략목표 II . 적절한 삶의 향유를 위한 기본권 보장

- **●** 추진목표
  - 적절한 생활수준의 보장
  - 🕖 일할 수 있는 기회 및 권리 보장
  - 🚯 기본적인 교육권 및 교육 기회의 보장
  - 4 장애인 주거 지원 제도 강화
  - 5 차별 없이 건강을 향유할 권리 보장
  - ⑥ 개인의 이동권 보장
  - 7 자기결정권 보장

## 1. 적절한 생활 수준의 보장



- 🤝 장애인연금 지급 수준 미흡
- 🌘 자산조사형 방식으로 장애수당 대상 선정

추진 방향

- 🤝 장애인연금 급여액 현실화
- 🌘 장애인연금 급여 대상 확대

#### 1. 적절한 생활 수준의 보장

#### 1) 장애인연금 급여액 현실회

 ✓ 기초급여액 현실화 : 기초급여액은 낮은 수준에서 기초노령연금과 연동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실질적인 소득보장이 되지 않으므로 기초급여액 현실화 필요

 ✓ 부가급여액 현실화: '경증장에인에게 지급되는 장에수당'과 '중증장에인에게 지급되는 장에인연금 부가급여'는 차이도 없고 지원 수준이 낮으므로 실질적인 추가 비용조사를 바탕으로 장에인연금 부가급여액 현실하 필요

#### 2) 장애인연금 급여 대상 확대

- ✓ 모든 장애인에게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부가급여 지급
- ✓ 이를 위해 『장애인연금법』 상 부가급여액 삭제 · 『장애인복지법』에 모든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장애수당으로 법률 개정

# 전략목표 Ⅱ. 적절한 삶의 향유를 위한 기본권 보장

- ♠ 추진목표
  - 적절한 생활수준의 보장
  - 💋 일할 수 있는 기회 및 권리 보장
  - 🚯 기본적인 교육권 및 교육 기회의 보장
  - 장애인 주거 지원 제도 강화
  - (5) 차별 없이 건강을 향유할 권리 보장
  - 👩 개인의 이동권 보장
  - 7 자기결정권 보장



## 2. 일할 수 있는 기회 및 권리 보장



-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성 불인정으로 인한 저임금 및 열악한 근로환경
-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제 적용 제외
- '직업재활'과 '고용' 관리 분절화

- 노동에서의 권리 제고
- 근로기회 확대

#### 2. 일할 수 있는 기회 및 권리 보장



- ✓ 장에인근로자의 근로자성 인정
- ✓ 장에인근로자의 근로3권 보장
- ✓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 개정(보조금고용 도입 포함)

#### 2) 근로 기회 확대

- ✓ 공공영역 일자리 확대
- ✓ 지원고용(중증장에인 근로지원인) 확대
- ✓ 직업재활과 고용으로 분절화된 관리체계 연계

## 전략목표 Ⅱ. 적절한 삶의 향유를 위한 기본권 보장

- **●** 추진목표
  - 적절한 생활수준의 보장
  - 🕖 일할 수 있는 기회 및 권리 보장
  - 기본적인 교육권 및 교육 기회의 보장
  - 4 장애인 주거 지원 제도 강화
  - 5 차별 없이 건강을 향유할 권리 보장
  - ⑥ 개인의 이동권 보장
  - 7 자기결정권 보장

## 3. 기본적인 교육권 및 교육 기회의 보장



- 장애유형 및 정도를 미반영한 교과과정 운영
- 🍝 과밀학급
- 교원 수 부족
- 순회교육 비활성화

추진 방향

- 🥎 기본적 교육권 보장을 위한 교육 환경 마련
- 🌘 교육 기회 보장 및 확대



## 3. 기본적인 교육권 및 교육 기회의 보장

#### 1) 교육권 보장을 위한 교육 환경 미련

- ✓ 교원 양성을 통한 개별 교육 실질화
- ✓ 장애특성에 따른 교육 교재 개발
- ✓ 부처간 유사 치료 및 훈련서비스에 대한 협력 운영체계 마련
- ✓ 과밀학급 해소 및 교원 확보

#### 2) 교육 기회 보장 및 확대

- ✓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대한 순화교육 확대 및 담당 교원 증원
- ✓ 장에성인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

# 전략목표 Ⅱ. 적절한 삶의 향유를 위한 기본권 보장

- ♠ 추진목표
  - 적절한 생활수준의 보장
  - 🕖 일할 수 있는 기회 및 권리 보장
  - 🚯 기본적인 교육권 및 교육 기회의 보장
  - 장애인 주거 지원 제도 강화
  - (5) 차별 없이 건강을 향유할 권리 보장
  - ⑥ 개인의 이동권 보장
  - 7 자기결정권 보장

## 4. 장애인 주거 지원 제도 강화



- 공공임대 주택 보급 미흡
- 전세자금지원, 주택구입자금지원, 주택개조사업 등 주거지원 사업 미약

추진 방향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실질화
- ▲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 사업 전국 확대
- ▲ 주택구입 및 전월세 보증금 지원 확대
- 주거환경 개선 지원 확대

### 4. 장애인 주거 지원 제도 강화

- 1) 『장애인·고랭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실질화
  - ✓ 장애인의 특성을 감안한 별도의 최저주거기준 도입
  - ✓ 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정기적인 주거실태조사 실시
- ✓ 적정량의 주거약자용 주택 제공
- ✓ 민간주택 개조 지원
- 2) 중중장에인 전세주택 제공 시업 전국 확대
  - ✓ 중앙정부 차원의 무상임대주택 지원 확대
     ex] 서울시: 서울시가 비용을 지원하고 각 구청장이 전세권자가되어 엄대자와 직접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이 전세주택을 저소득 중증장에인 가구에 무상엄대



## 4. 장애인 주거 지원 제도 강화

- 3) 주택구입 및 전월세 보증금 지원 확대
  - ✓ 전월세보증금 대출 한도 상향 조정
  - ✓ 대상 제한기준 완화

#### 4) 주거환경 개선 지원 확대

- ✓ 사업 지역을 농어촌에서 도시지역 포함 전국으로 확대
-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지원대상을 장에인 전체로 확대

# 전략목표 Ⅱ. 적절한 삶의 향유를 위한 기본권 보장

- ♠ 추진목표
  - 적절한 생활수준의 보장
  - 🕖 일할 수 있는 기회 및 권리 보장
  - 🚯 기본적인 교육권 및 교육 기회의 보장
  - 장애인 주거 지원 제도 강화
  - (5) 차별 없이 건강을 향유할 권리 보장
  - ⑥ 개인의 이동권 보장
  - 7 자기결정권 보장

## 5. 차별 없이 건강을 향유할 권리 보장



- 의료기관들의 장애인 진료 기피
- 의료기관 이용 시 정당한 편의 미제공
- 열악한 경제적 지위로 인한 의료이용의 어려움
- 장애인 보조기구 보장범위 협소

추진 방향

- 장애인 건강 통계 구축
- 의료보장성 강화

### 5. 차별 없이 건강을 향유할 권리 보장



- ✓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국민영양조사를 활용하여 장애인들의 건강상태 및 보건의료 이용실태 등 장애인 건강통계 구축
- ✓ 이를 위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18조 제2항에 "장애인의 건강상태 및 보건의료 이용실태에 관한 사항" 신설
- ✓ 또한 제 3항에 "관련 조사는 『국민건강증진법』제 16조에 따른 국민영양조사에 의해 실시할 수 있다"신설

#### 2) 의료보장성 강화

- ✓ 장에인 진료 시 수가 차등화(장에인 진료에 따르는 위험부담 등 보상)
- ✓ 의료기관 이용 시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 ✓ 『장에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의료비 지원 대상 확대
- ✓ 장에인 진료를 위한 거점 공공의료기관 설립 확대
- ✓ 장에인 보조기구 지원 확대 및 관리 체계 구축



## 전략목표 Ⅱ. 적절한 삶의 향유를 위한 기본권 보장

- 추진목표
  - 적절한 생활수준의 보장
  - 일할 수 있는 기회 및 권리 보장
  - 🚯 기본적인 교육권 및 교육 기회의 보장
  - 4 장애인 주거 지원 제도 강화
  - 5 차별 없이 건강을 향유할 권리 보장
  - ⑥ 개인의 이동권 보장
  - 7 자기결정권 보장

### 6. 개인의 이동권 보장



- 저상버스 부족
- 대중교통 이용시 정당한 편의 미제공
- 특별교통수단 부족

- 저장버스 확대
- 대중교통시설에 전자문자 안내판 및 음성 알림 설치 법제화
- 특별교통수단 확대 및 국고 지원

#### 6. 개인의 이동권 보장

#### 1) 저상버스 확대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노선버스에 저상버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시내버스 중심의 저상버스 보급에서 시외버스 등에도 저상버스 도입
- 2) 대중교통시설에 전자문자 안내판 및 음성 알림 설치 법제화
  - ✓ 지하철 및 노선버스 등에 전자문자 안내판 및 음성 알림 장치 설치 법제화
- 3) 특별교통수단 확대 및 국고 지원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개정하여 특별교통수단도 저상버스처럼 국고가 지원 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 전략목표 Ⅱ. 적절한 삶의 향유를 위한 기본권 보장

- ♠ 추진목표
  - 🧥 적절한 생활수준의 보장
  - 🕖 일할 수 있는 기회 및 권리 보장
  - 🚯 기본적인 교육권 및 교육 기회의 보장
  - 장애인 주거 지원 제도 강화
  - 5 차별 없이 건강을 향유할 권리 보장
  - 👩 개인의 이동권 보장
  - 7 자기결정권 보장



## 7. 지기결정권 보장



● 중증장애인의 경우, 자기결정권 행사 제한



- 성년후견제도 내실화
- 성인장애인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 7. 지기결정권 보장

#### 1) 성년후면제도 내실회

- ✓ 가사소송법 개정 및 후견등기법 재정을 통해 성년후견제도 실효성 도모
- ✓ 후견인 교육 및 제3자 후견인 양성체계 구축

#### 2) 성인장애인에 대한 부앙의무지 기준 개선

- ✓ 기초수급자 선정기준에 장에로 인한 추가비용 반영
- ✓ 성인장에인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 계획 공청회 토론문

# 토론 1

**서정희** (군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 계획 공청회 토론문

서정희

(군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는데 충분히 동의하고, 이러한 기획을 진행시키고 공청회를 마련하는 일련의 진행과정에 찬사를 보냄.

몇 가지 질문으로 토론을 대체하고자 함.

### 1.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 계획 전반에 대하여

-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 계획의 실현 시기를 5년으로 설정하고 있음. 5년이라는 시간 이 중장기라 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음. 5년이라는 시간은 오히려 단기 혹은 중기 계획이 아닌지?
- 5년이라는 시간적 범주를 설정하면, 인권증진 계획의 장기적 비전을 담을 수 없다는 하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

## 2. 적절한 생활수준의 보장에 대하여

- 장애인의 적절한 생활수준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생활수준 보장을 위한 제도들을 통해 장애인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권리성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장애인연금 급여액을 실질적인 추가비용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것만으로 는 적절한 생활수준을 보장하지는 못 할 것임. 장애수당이나 장애인연금의 부가급여

액은 그 사회의 장애인 vs 비장애인의 차별 혹은 격차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적인 비용에 대한 보전, 다시 말해서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가처분 소득의 상실분에 대한 보상 성격임.

-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인권위의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 계획에는 장애인연금 급여 중 기초급여액의 현실화에 대해서도 언급되고 있음. 그러나 이는 빈곤한 중증장애인 에 한정되는 한계가 있음.
- 장애정도와 무관하게 모든 장애인의 적절한 생활수준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인권 보장의 성격을 띠는 제도를 위해서는 기본소득과 같은 무조건적이고 보편적인 소득보장 급여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특히 장애인 소득보장 제도가 장애인에 대한 그 사회의 낙인을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장애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비장애인까지 아우를 수 있는 보편적인 제도를 장애계가 선도적으로 주장할 때 가장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됨.
- 그러나 이러한 보편적인 제도들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5년이라는 시간적 제약을 상정하면 어려울 수 있음.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 계획을 세우면서 5년이라는 시간 설정을 하게 되면 그 무엇보다 현실가능성이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보다 장기적 안목에서의 비전 제시는 한계가 있음.
- 장기적 비전과 5년의 시간적 제약은 독립해서 고려되어야 하는 요인이라 사료됨.



# "일할 수 있는 기회 및 권리 보장" 토론문

토론 2

## 남용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업영역개발팀장)



## "일할 수 있는 기회 및 권리 보장" 토론문

남용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업영역개발팀장)

### I. 들어가며

-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를 비롯하여 성(性), 연령, 학력, 비정규직, 국적 특성에 따른 차별이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특히 고용 분야에서 장애인에 대한 다양 한 유형의 차별, 차별적 처우, 또는 차별적 관행이 더욱 심각하여 사회통합을 저해 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장애인에 대한 고용차별의 원인을 설명하는 이론을 살펴보면, 강조하는 주안점이 조금씩 다를 뿐 장애인 고용차별의 주원인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라고 설명하는 데는 견해를 같이 하고 있음(나운환 외, 2003a, 2003b;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2003; 조용만, 2003; 유동철, 2005; 이소영, 2009)
- 우리 사회의 각 분야, 특히 고용영역에서 발생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형 대의 차별행위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법률 및 제도 등을 통해 차별을 금지・예방하 고, 차별이 발생할 경우 이를 신속히 제거하여야 함. 이와 더불어 차별관행에 대한 시민의식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그러나 그동안 고용영역에서의 장애인차별에 대한 국가의 차별시정 노력과 사회 적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은 미흡하였음

- 이런 배경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장애인 인권에 대한 체계적인 장기계획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12~'17)"을 수립하여 이를 실시하 려는 계획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의미가 크다고 판단됨
- 주제발표자가 제시한 주요 이슈에 대해 대부분 동의하며 본 토론문에서는 발표 주 제에 대한 본 토론자의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함

## Ⅱ. 장애인 고용 현황

○ 고용 분야에서 장애인에 대해 여전히 심각한 차별이 발생하고 있음은 아래의 표에 나타난 것처럼 장애인실업률을 비롯한 여러 지표들이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 ○ 장애인 경제활동 현황

- 2011년 기준 장애인 경제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장애인 중 15세 이상 인구는 2,540,285명이며, 이중 38.5%인 977,588명이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김성희 외, 2012). 같은 시점의 비장애인 경제활동참가율은 62.1%임
- 장애인경제활동인구 중 92.2%인 901,504명이 취업하고 있으며, 반면 76,084명이 실업상태에 있어 장애인실업률은 7.8%에 이르고 있음
- 만 15세 이상 장애인의 취업률을 성별로 살펴보면, 인구대비 취업자 비율에서 남성장애인은 44.8%, 여성장애인은 22.7%로 여성장애인이 남성장애인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취업장애인의 주요 직무를 살펴보면 전체 근로자 대비 단순노무직(30.1%), 기능원 · 기능종사자(12.5%), 장치기계조작 · 조립(12.4%), 농업 · 어업(12.2%)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반면, 관리자(4.1%), 전문가 · 관련종사자(7.1%)의 비중이 낮게 나타남

#### ○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 민간부문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연말 기준 50인 이상 고용의무사업체(23,452개소)의 장애인고용율은 2.22%에 이르고 있으며, 국가와 지



방자치단체(공무원)의 경우 장애인공무원은 18,141명, 고용률은 2.52%로 나타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2)

#### 〈표 1〉장애인 경제활동 현황(2011년)

(단위: 명, %)

78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	치어르	실업률	인구대비 취업자	
구분	인구	계	취업자	나 실업자 <sup>활동인구</sup>		참가율	취업률	크립포	비율	
장애인	2,540,285	977,588	901,504	76,084	1,562,697	38.48	92.22	7.78	35.49	
전체	41,003,000	25,480,000	24,661,000	819,000	15,523,000	62.10	96.80	3.20	60.10	

자료: 김성희 외(2012)

#### 〈표 2〉 정부 및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 현황(2011년 12월 기준)

(단위: 개소, 명, %)

		구 분	대상사업체	상시근로자	장애인근로자	장애인고용률				
		합 계	24,083	6,909,276	133,451	2.28				
		소 계	81	824,067	18,141	2.52				
	공	중앙행정기관	45	168,146	4,665	3.20				
	무	헌법기관	4	22,446	464	2.29				
		원	지방자치단체	16	245,925	8,128	3.78			
정부		교육청	16	16 387,550 4,884		1.44				
부문	부문 근 로 자	소 계	293	247,550	4,857	2.35				
		로	근	근	중앙행정기관	30	39,689	757	2.39	
			헌법기관	3	938	25	3.94			
			자	자	자	자	지방자치단체	244	75,329	3,599
		교 육 청	16	131,594	476	0.44				
		소 계	257	305,971	7,427	2.72				
7.7.	. 기 기	공기업	27	103,391	2,897	3.05				
33	공공기관	준정부기관	82	84,947	2,619	3.55				
		기타공공기관	148	117,633	1,911	1.84				
민간	기업	소 계	23,452	5,531,688	103,026	2.22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12)

## Ⅲ. "일할 수 있는 기회 및 권리 보장" 강화를 위한 논의 및 제언

- "일할 수 있는 기회 및 권리 보장"을 위한 추진 방향 및 주요 내용
  - 추진 방향
    - 근로자성 인정은 근로권을 인정받기 위한 전제조건인데, 장애인 특히 중증장애인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문제가 되어 왔음
      - 이런 배경에서 중증장애인의 근로자성 인정을 토대로 기본권으로서의 근로3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들이 필요하고, 「최저임금법」 상 중증장애인근로자는 최저임금제의 적용 제외될 수 있는 조항이 있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보장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의 강화가 필요함
      - 이를 위해 공공영역의 일자리 확대 및 근로지원 인력의 확대 배치를 통해 장애인의 고용 창출 과 유지를 강화하여야 함. 또한 직업재활과 고용의 유기적 연계 강화가 필요함
  - 주요 내용
    - 1. 노동에서의 권리 제고
      - ① 장애인 고용 시 근로자성 인정
      - ② 장애인의 근로3권 보장
      - ③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 개정
- 2. 근로 기회의 확대
  - ① 공공영역에서의 일자리 확대
  - ② 지원고용(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확대
  - ③ 분절적인 고용 및 직업재활시스템 개선
- "일할 수 있는 기회 및 권리 보장" 주요 내용에 대한 논의

#### 1. 노동에서의 권리 제고

- ① 장애인 고용 시 근로자성 인정
  - (중증)장애인근로자의 근로자성 인정에 관한 발표자의 의견에 동의함
    - ※ 독일의 '근로자와 유사한 자'(Arbeitnehmerähnlicher Person) 개념 참조(뒤에 언급함)



#### ●근로자성에 대한 대법원 판례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 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 최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 •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 부, 근로자가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 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 · 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용종속성의 판단에 있어서는 노동관계법에 의한 보호필요성도 고려하여야 하며, 전체적으로 보아 임 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관한 여러 징표 중 근로조건에 관한 일부의 사정이 결여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3.26. 선고 2003두13939 판결, 2002.7.12. 선고 2001도5995 판결 등 참조).

#### ② 장애인의 근로3권 보장

- 장애인근로자의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고용주나 시설주 등은 장애인 근로자에 게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3권 등을 비롯하여 유급휴가 등의 조치들을 모두 보장하여 하므로 여기에서는 따로 논의하지 않음
- 장애인근로자의 노동권 보장 강화를 위한 독일 사례 비교・검토

#### 해고보호제도(Kündigungsschutz)

- 「사회법전 제9권」(「Sozialgesetzbuch IX」)에 따라 고용주에 의한 중증장애인의 고용관계의 해고는 통합 사무소(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유사한 기관)의 사전 동의를 필요로 하며, 해고 예고기간은 적어도 4주가 되어야 함
- 고용주는 해당 사업장이나 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통합사무소에 해고하고자 하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해고 동의를 문서로 신청해야 함
- 통합사무소는 관할 노동사무소, 기업의 경영위원회나 인사위원회 그리고 중증장애인 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중증장애인 당사자의 의견도 청취해야 함
  - 통합사무소는 각각 절차에 있어서 유효한 합의를 위해 노력해야하며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 이내에 구두십사의 토대 위에서 결정을 내려야 함
- 해고에 대한 동의 여부 결정사항은 고용주와 중증장애인 당사자에게 송부됨. 노동사무소에는 해당 결정사항의 사본이 송부됨. 통합사무소가 해고에 동의한 경우 고용주는 송부를 받은 지 1개월 이내에 해고를 통보할 수 있음

〈표 3〉 해고보호 현황(210년 기준)

(단위: 건, %)

구분	사례 수	%
해고동의 전체 신청건수	27017	100.0
일자리 유지	5945	22.0
기타	711	2.6
일자리 상실	20361	75.4

#### • 통합합의제도((Integrationsvereinbarung)

- 「사회법전 제9권」에 따라 고용주는 사업장의 여러 대표기구들과 더불어 중증장애인대표와 통합의 목적을 설정하고 구속력 있는 합의(Integrations- vereinbarung)를 도출해 낼 의무를 가짐
- 통합에 대한 합의의 내용은 (중증)장애인과 관련된 인사계획, 작업장 시설, 작업장 환경, 근로형태나 근로시간 등 고용 전반에 관한 것임
- 또한 통합에 관한 합의 내용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합의된 목적들이 어떻게 실행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정기적으로 조정이 이루어져야 함
- 통합합의의 성공을 위해 통합합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이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중증장애인 고용에 관한 방해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기업의 예방조치에 관한 규정이 담겨져야 함



[그림 1] 통합합의



#### • 중증장애인대표(Schwerbehindertenvertretung)제도

- 중증장애인대표는 중증장애인들의 고용을 촉진하며, 그가 속한 기업체나 (정부)기관에서 장애인들의 이 해를 대변하고 조언하는 역할을 수행함
- 「사회법전 제9권」에 따라 상시 5명 이상의 중증장애인이 고용되어 있는 기업이나 기관에서는 각 1인의 중증장애인 대표와 부대표를 선출함
- 중증장애인대표의 임기는 4년이며, 중증장애인대표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음
  - 중증장애인을 위해 적용되는 법률, 규정, 임금계약, 단체협약 또는 근무협약, 관련 행정규정들이 제대로 실행되도록 감독하며, 특히 고용주에게 부과된 책임들이 잘 수행되도록 감독함
  -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각종 다양한 조치들, 특히 예방적 차원의 조치들을 관할기관에 신청하고, 중증장 애인들의 제안과 불만을 접수하며, 그것들이 타당하게 여겨질 경우엔 고용주와의 협의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중증장애인대표는 중증장애인들에게 협의의 상황과 결과를 보고함
- 고용주는 중증장애인대표에게 중증장애인에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해 적시에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고 를 해야 함
- 중증장애인대표는 명예직으로서 무보수로 그 직무를 수행하며, 중증장애인대표는 피고용인이 담당기관 에 장애의 판정 혹은 장애정도에 대한 판정을 신청할 경우 이 일에 대한 자문을 해줄 수 있음
- 고용주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채용 과정, 즉 중증장애인이 기업이나 정부기관에 고용될 수 있는지에 관한 채용 과정에서 중증장애인 대표를 참여시켜야 할 의무를 가짐
- 고용된 중증장애인의 수가 200명을 넘을 경우 이 사업장의 중증장애인 대표는 원하는 경우 그의 직무로 부터 자유로울 수 있음

#### ③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 개정

- 「최저임금법」제7조(최저임금 적용 제외) 제1호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규정 삭제를 통해 장애인근로자의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자는 발표자의 의견에 원칙적으로 동의함
- 그러나 최저임금 적용제외제도의 즉각적인 폐지는 비장애인과 비교하여 근로능력 이 현저히 떨어지는 중증장애인의 취업 기회를 축소시킬 수 있음
  - 사업주가 장애인 고용을 기피하는 이유 가운데 중증장애인의 낮은 생산성, 복합적 업무수행의 어려움 등이 있는데, 이런 현실에서 최저임금 적용제외제도의 폐지는 사업주의 장애인고용 기피로 이어질 수 있음
- 이에 과도기적 방안으로,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제도는 폐지하되, 일정 기간 동안 장애인 보호작업장 등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감액적용제도를 도입·운영하고, 감액적용 시 감액률은 일정 법위 내로(예를 들면 최대 30% 범위 내) 한정하고, 감액적용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임금손실분에 대해서는 장려금이나 일반회계 보

109

조금에서 보전해주는 것이 필요함

- 또한 감액적용 관련하여 장애인근로자의 작업량 측정방법, 인가신청 절차 등 저임금 장애인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보다 더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마 련되어야 함
- 독일의 '근로자와 유사한 자'(Arbeitnehmerähnlicher Person) 개념
- 독일의 경우 '근로자와 유사한 자'란 「단체협약법」(「Tarifvertragsgesetz」) 제12a조에 규정된 개념으로 근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정법 규정에 의하여 노동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을 의미함
- 독일에서 근로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인적 종속성(persönliche Abhängigkeit)과 경제적 종속성 (wirtschaftliche Abhängigkeit)이 모두 인정되어야 하는데, '근로자와 유사한 자'는 경제적 종속성만 인정되고 인적 종속성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을 의미함
  - '근로자와 유사한 자'는 유사근로자로 번역되기도 하는데 이렇게 번역할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된 근 로자의 일부로 오해할 위험이 있음
- 독일의 장애인작업장(Werkstatt für behinderte Menschen, 이하 WfbM)에 종사하는 중증장애인 가운데 상당수는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와 유사한 자'의 신분을 부여받고 있음
  - WfbM은 장애 유형이나 장애 정도 때문에 일반 노동시장에서 취업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적합한 직업교육을 제공하며, 또한 근로생활을 통해 성과에 대한 일정한 임금을 제공할 수 있는 취업기회를 제공함
- 향후 근로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중증장애인에 대해 '근로자와 유사한 자'지위 부여 가능성에 대한 체계적인 비교검토가 필요함

## 2. 근로 기회의 확대

#### ① 공공영역에서의 일자리 확대

- 정부부문 및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상향 조정을 통한 일자리 확대
- 정부부문의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한 고용 확대, 교대·사대 특례입학 확대 등을 통한 장애인 교원 임용 확대
- 국가 주도의 장애인사업장 설립 및 운영
- 사회서비스 분야에서의 장애인일자리 개발 강화



#### ② 지원고용(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확대

- 지원고용 관련하여 그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예산과 인력의 절대적 부족, 경직된 단기의 훈련기간, 소규모 기업체 위주의 지원고용 실시 등의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향후 지원고용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담 전문인력 확충과 예산의 대폭 확대, 장애유형별로 차별화된 탄력적 기간 운영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중증장애인을 위한 근로지원인 지원 강화 필요

#### ● 독일의 근로지원인(Arbeitsassistenz)제도

- 독일은 근로지원인제도 운영을 통해 장애인 고용 확대에 있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음
- 이 제도는 2000년 「중증장애인의 실업퇴치를 위한 법」에서 처음으로 법제화되었고, 이후 2001년 「사회법전 제9권」제102조제4항에 규정됨
- 근로지원인 제도 관련하여 전제조건은 중증장애인이 기본적으로 자신에게 요구되는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야 함. 즉, 중증장애인에게 부여되는 주업무 처리는 기본적으로 자신이 직접 수행해야 하며, 근로지 원인은 그 업무의 핵심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에 국한됨
- 근로지원인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고용주는 물론 장애인당사자의 자기결정권 에 입각하여 중증장애인 본인에게도 부여되며, 신청 및 재정지원 등에 관한 전반적 사항은 통합사무소 에서 관할하고 있음
- 근로지원인 사용 관련하여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사업주의 의무 이행 여부가 매우 중요한데, 예를 들면 장애에 적합한 작업장 시설 혹은 설비 구비 등 고용주의 책임이 이행되었는가가 매우 중요함
- 근로지원인 활용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통합사무소가 지원하며 일자리 창출조치 (Arbeitsbeschaffungsmassnahmen, ABM)의 경우는 노동사무소가 지원함
- 근로지원인에 대한 지원수준은 근로지원인을 필요로 하는 중증장애인 개인의 필요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월 평균 260유로~1,100유로 수준임

#### ③ 분절적인 고용 및 직업재활시스템 개선

- 장애인 고용 관련하여 현재 각 부처에서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는 다음과 같음
- 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취업지원 및 사업체 의무고용이행 지원, 장애인직업능력개발 지원, 장애인 고용환경 개선 지원, 장애인일자리사업 운영, 직업재활사업 지원 관리, 장애인기업 지원, 장애인차별예방 및 인식개선 교육, 권역 내 장애학생 직업교육 지원, 장애인 작업편의 시설 설치 지원, 연구 및 정책개발, 고용서비스 개발 및 관리, 장애인 고용관련 통계 구축 등
- 보건복지부 : 장애인복지일자리 지원(중증장애인 일자리 제공),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사업, 장애인근로자 자동차구입자금 융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지원,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등

○ 중소기업청 : 장애인 창업교육 및 지원, 장애인 영업장소 전대 지원, 장애인기업 경영안정 지원, 장애인기업 자금 지원,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등

○ 여성가족부 : 여성장애인 재취업훈련 및 지역사회 맞춤형 지원 등

○ 행정안전부 : 장애인 공직임용 인사정책(중증장애인 특별채용

○ 국가보훈처 : 국가유공자 취업알선 및 가산점 부여 등

○ 지방자치단체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장애인고용 관련 지원금 지원 등

- 현재 장애인 고용 관련 서비스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각각 별도의 전달체계를 통해 산발적으로 제공하고 있어 부처 간 상호연계가 부족하고 일부 업무의 중복현상, 역할의 혼선 및 서비스 사각지대 발생 등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음
- 또한 수요자인 장애인당사자의 입장에서도 자신에게 적합한, 혹은 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찾는 것이 어려움
- 이에 장애인 고용 서비스 업무 관련하여 전달체계를 일원화할 필요성이 시급함
  - 이를 통해 각 부처별, 정책별, 사업별로 분절 분산 중복되어 이루어지고 있는 장애인 고용 서비스를 통합 • 연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여야 함

## 참고문헌

김성희, 변용찬, 손창균, 이연희, 이민경, 이송희, 강동욱, 권선진, 오혜경, 윤상용, 이선우 (2012).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수탁과제.

나운환, 류정진, 김동주 (2003a). 노동시장에서의 장애인고용차별실태 연구. **직업재활연구**, 13(1), 1-29.

나운환, 박경순, 전미리 (2003b). 장애인고용차별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37(2), 355-377.

유동철 (2005), 장애인 고용 차별로 인한 사회적 비용. **사회복지연구**, 27, 113-132.

이소영 (2009). 차별금지 조항으로서의 합리적 조정. 미국헌법연구, 20(2), 255-286.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2003). 장애인차별 실태조사.

조용만 (2003). **장애인 고용차별금지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노동부 수탁과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2). **2011년도 장애인 고용현황**.

# 적절한 삶의 향유를 위한 기본권 보장 토론문

토론 3

**김기룡**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사무처장)



## 적절한 삶의 향유를 위한 기본권 보장 토론문

김기룡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사무처장)

## I. 추진 방향과 관련해

- 특수교육은 소품종 대량생산 방식으로 동일한 교육내용과 방법을 지원하는 집단화 된 교육이라기 보다는 다품종 소량생산 방식의 다양한 교육내용과 방법을 지원하 는 개별화된 교육임.
- 이미 특수교육은 장애유형에 따라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 포함), 정신지체(지적장애) 등으로 분류하여 별도의 교육내용과 방법을 제공하고 있고, 장애정도를 구분하여 중도·중복장애에 대해서도 교육환경을 달리한 별도의 교육적 조치를 제공하고 있음.
- 또한 개인별 맞춤형 교육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근거와 교육과정 및 교육방법 등을 구비해 놓고 있는 상황이지만, 개별 학교에서 이것이 제대로 실천되지 않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개별화교육지원계획의 수립 과정,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진단·평가 시 교육지원 내용의 결정 과정, 교육지원 제공 후 다른 교육적 요구가 발생했을 때 이를 수정할 수 있는 과정 등이 개별 학교에서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 특히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적 기대와 목표가 학부모, 교사 및 학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기대 수준과 교육지원 내용이 서로 달라서 교육지원 제공 과정에 서 보이지 않는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향후 장애학생을 위한 교육지원은 국가 수준의 제도적 기반 마련 및 인

프라 구축도 중요하지만, 개별 학교에서 이를 실천해 낼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임.

- 이를 위해서는 개별 학교 차원의 학교관리자, 일반교사 및 학교 구성원 등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의 통합교육계획 수립 과정,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과정 및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및 재심사 과정 등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 특수교사와 함께 이러한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장애학생의 개별화된 교육지원 요구를 고려한 맞춤형 특수교육이 제공될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추진방향에는 "국가 수준의 맞춤형 교육지원 환경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및 인프라 구축뿐만 아니라, 개별학교 차원의 실천을 위하여 학교관리자 및 일반교사의 통합교육 지원 역량 제고"의 필요성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장애인의 기본적인 교육권 보장을 위해서는 조기에 특수교육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학교를 졸업한 이후 지역사회 참여 및 통합을 위한 맞춤형 교육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특히 장애영아의 무상교육 및 장애유아의 의무교육이 시행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음. 영유아기 단계는 적절한 지원만 이루어진다면 발달 가능성 또는 개인의 잠재력을 최대화시킬 수 있고, 향후 학교 생활 적응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이 단계의 교육 환경을 제고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이 필수적임.
- 이에 따라 추진방향에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조기 특수교육 지원 체계 마련 필요" 정도의 내용이 제시될 필요가 있음.

### Ⅱ. 주요 내용

## 1. 기본적 교육권 보장을 위한 교육 환경 마련

○ 개별 교육의 실질화라는 개념이 다소 모호하게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음. 개별 교육 이 가능하도록 능력을 갖춘 다수의 교원 양성이 기존의 특수교사 이외에 또다른 교 사의 양성이 필요하다는 의미인 것인지, 아니면 다수의 특수교사 양성이 필요하다



는 의미인 것인지 파악하기 어려움.

- 광주 인화학교 등의 문제에서 수화가 가능한 특수교사의 배치 요구가 있었는데, 이 문제에 대한 방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보여짐. 그러나 이것은 향후 특수교사를 배치 하는 과정에서 수화 가능 특수교사를 안배하여 배치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임. 기존의 특수교사 양성 과정을 바꾸어 장애유형에 따른 특수교사를 별도로 양성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한 문제는 논의를 해 봐야 하는 문제임.
- 장애 특성에 맞는 교육 교재 개발 문제의 경우 현재 2011 특수교육 교육과정에 따라 교과서 및 지도서가 준비 중에 있는데, 이러한 교과서가 부족하다는 뜻인지 아니면 교과서 내용이 부실하기 때문에 다양한 종류의 교과서 또는 참고 교재가 개발되어야 한다는 뜻인지 파악하기 어려움. 그렇지 않으면 민간 차원의 학습 자료가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확충해야 한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음.
- 교육 교재 개발 이전에 교육과학기술부가 작년에 개정한 2011 특수교육 교육과정이 지나치게 일반교육 중심으로 편향되는 경향이 있어, 실제 일반교육과정을 수정해도 적용이 어려운 장애학생(중도인지장애학생)에게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국가 수준의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을 학습하기 어려운 장애학생에 대해서는 일상생활 및 지역사회 생활 중심의 교육과정이 적용되어 학교 졸업 이후 자립적 삶을 구현해 낼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내용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최근 개정된 교육과정에는 국가의 책무성을 강조하며, 장애학생의 특수성이 강조되기 보다는 일반교육의 보편성이 강조되는 듯한 인상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해전면 검토 및 수정 요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 유사 치료 및 부처간 훈련서비스 협력 운영 체계 마련의 경우, 개념이 명확이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유사 치료라는 것은 실제 치료 행위를 하지만 치료 행위로 인정할 수 없는 치료 행위를 지칭한다고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현재 국가에서 인정하지 않는 치료 행위가 학교에서 자행되고 있다고 해석됨. 현재 학교에는 물리치료, 작업치료 및 언어재활 등 국가면허를 취득한 치료사만이 치료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유사 치료 행위라고 볼 수 없음. 다만 방과후학교 운영 과정에서 바우처를 활용하여 지역사회 유관 기관에서 치료를 받으려는 경우 국가자격이 아닌 민간자격을 가진 치료사에 의해 치료를 받기도 하는데 이를 두고 유사 치료 행위라고보는 것 같음. 그러나 이것 역시 사전에 교육청에서 인증을 하거나 허가를 한 곳에

서만 이루이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두고 유사 치료 행위라고 말하기 어려움.

- 다만,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치료 행위는 주로 보건복지부의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12년 9월부터 발달재활서비스) 차원에서 제공되는 것이 많이 있는데, 현재 보건복지부는 이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서비스 제공자 및 제공기관의 질 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서비스 제공기관에 서 자격이 없는 치료사가 치료 행위를 하거나 다른 자격을 가진 사람이 치료 행위 를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 이를 위해서는 국가 수준에서 장애인의 재활치료에 대한 관리, 감독 기구를 설치 · 운영하거나,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조사, 감독 권한 강화 등의 조치 마련이 필요함.
- 한편, 보조공학기기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문제를 훈련서비스 협력 문제로 보았는데, 학교 차원에서의 보조공학기기 지원은 특수교육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물적 지원으로 보는 것이지 이것 자체가 훈련으로 볼 수는 없음. 따라서 치료와 보조공학기기 지원은 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규정에 따라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라는 개념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강화 또는 지원체계 구축이라는 이름으로 표현되는 것이 적절할 것임.



[그림 1]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현황



- 과밀학급 해소 및 교원 확보 문제는 최근 특수교육 현안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임.
- 최근 저출산으로 인해 학령기 일반아동의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매년 평균 20여만 명 감소)하고 있으나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는 매년 평균 4,181명 중가.
  - 일반학생 수 추이(유·초·중등과정): 8,202,698명('08) → 8,032,671명('09) → 7,823,421명('10) → 7,601,666명('11)
  - 특수교육대상자 수 추이: 71,484명('08) → 75,187명('09) → 79,711명('10) → 82,665명('11) → 85,012명('12)
- 특수교육기관 및 특수교사 공급이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 증가 추세를 따라가지 못 하고 있음

〈표 1〉 연도별 특수교육대상 학생, 특수교사 및 특수교육기관 현황

		2008	2009	2010	2011	2012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		71,484	75,187	79,711	82,665	85,012
투수교사	소요 특수교사 수(A)	17,871	18,797	19,928	20,666	21,253
	특수교사 현원(B)	13,165	13,997	15,244	15,934	16,727
	A-B	4,706	4,800	4,684	4,732	4,526
특수교육기관	특수학교 수	149	150	150	155	156
	특수학급 수	6,352	6,924	7,792	8,415	8,927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08-2012). 특수교육연차보고서.

○ 실제 공립 특수교육기관의 특수교사 정원은 매년 소규모로 증원되고 있음.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 동안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는 13,528명 증원되었으므로 대략 3천 5백여명의 특수교사가 확보되어야 하나, 실제 특수교사의 정원은 886명만 늘어났음.

〈표 2〉최근 5년간 공립학교 특수교사 정원 변동 현황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교장	54	55	55	59	61
교감	57	58	61	67	69
교사	8,345	8,516	8,761	9,182	9,231
전년도 대비 교사 정원 증감	-	171	245	421	49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2012).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 2008~2012. http://www.law.go.kr 검색

- 이상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특수교사의 정원 관리를 일반교사의 정원 관리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 등에 대 한 특수교육법」및「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교원 정원에 관 한 규정」등이 개정되어야 함.
- 과밀학급 문제 역시 특수교육의 주요 현안 중 하나인데, 현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7조의 규정에 따라 학급당 학생수가 유치원 4명, 초등학교 및 중학교 6명, 고등학교(전공과 포함) 7명임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배치되어 있는 일반학교(유치원 제외) 9,756개 학교 중 5,785개 학교(전체의 59.3%), 특수학교 155개교 중 101개 학교(전체 학교의 65.2%)의 학급이 법정정원 초과
  - 특수학교의 경우 657학급,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경우 1,410학급 등 총 2,067개 학 급이 과밀학급(안민석의원실, 2011)

〈표 3〉학교급별 학급당학생수 및 과밀 학급수 현황

	유치원	년(4명)	초등학	교(6명)	중학교(6명)		고등학교(7명) 전공과(7명)		나(7명)	계		
	학급당 학생수 <sup>a)</sup>	과밀 학급수 <sup>b)</sup>										
특수학교	3.5	19	5.3	99	6.4	195	7.4	185	9.1	159	6.3	657
일반학교 특수학급	3.1	16	4.6	543	5.7	438	6.9	412	8	1	5.2	1,410
계	-	35	-	642	-	633	-	597	-	160	-	2,067

a) 학급당 학생수: 1학급당 평균 학생수(총 학생수 / 총 학급 수), b) 과밀 학급 수: 법정정원을 초과한 학급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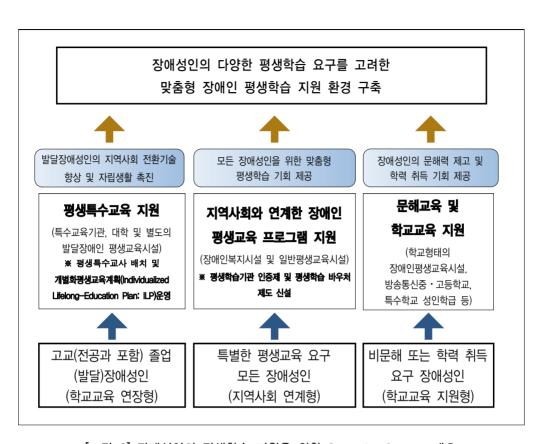


- 과밀학급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학급에 대한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한 중장기 특수 교육기관 수급 계획이 부재하기 때문임.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지속적 증가를 고려 한 국가 차원의 중장기 수급 계획이 제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개별화교육, 특수교육관련서비스 강화 및 과밀학급 해소와 특수교사 확충 등의 과제는 장애학생 교육지원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고, 이미 시 행하고 있는 정책 또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점을 고려하여 "기본적 교육권 보장을 위한 교육 환경 마련"도 적절하지만, "교육권 보장을 위한 교육 여건(환경) 개선"등 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2. 교육 기회 보장 및 확대

- 순회교육은 되도록 지양해야할 교육 중 하나임. 도서산간벽지라 하더라도 학교 통학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공교육의 원칙이 되어야 함. 순회교육을 접근성 문제로 보기 보다는 병원, 시설 등에 장기간 입원(입소)해 있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으로 바라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됨. 가정에 있을 경우 되도록 학교에서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예를 들어 통학버스가 아닌 통학용 승합차를 배치하여 장거리 학생의 통학을 지원한다든지 최중도 장애학생의 경우 중도・중복장애학생을 위한 학급을 설치하는 등의노력이 필요함.
- 다만, 현재 순회교육이 직접 방문하여 교육하는 것보다 방송통신을 활용해 교육하 거나 학습지 등의 과제를 제시하여 교육을 대신하는 것의 비율이 높은 만큼 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순회교육 전담 교사를 확충하거나 순회교육 전담 교사 에게 차량을 지원하는 등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이에 따라 "순회교육의 실질화"보다 "순회교육의 내실화" 또는 "순회교육대상자의 학교교육 연계 강화"로 제시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함.
- 평생교육과 고등교육은 달리 서술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아니면 학교교육 이후 교육 지원이라고 표기하여 평생교육과 고등교육을 구분하여 제시할 수도 있음.
- 평생교육의 경우 크게 세 가지 트랙으로 고민해 볼 수 있는데, 이를 도식화하면 아 래와 같이 제시해 볼 수 있음.

[121



[그림 2] 장애성인의 평생학습 지원을 위한 3-tracks System 개요

- 학교교육 연장형: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전환 역량 증진을 위한 평생특수교육 지원
- 지역사회 연계형: 장애인의 평생학습 기회 증진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에서의 프로 그램 운영 확대 및 평생학습바우처 제도 운영
- 학교교육 지원형: 장애인의 문해교육 및 학력 취득 기회 제공을 위한 학교형태의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환경 기반 마련
- 이상의 평생교육 모형의 경우 세 가지 트랙 모두 아직 국가 차원의 지원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지역사회에서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가 차원의 장애인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종합 계획 수립 및 인프라 구축 필요.
- 고등교육의 경우 발달장애인을 위한 고등교육 환경 제공 문제는 논란의 소지가 있



고, 많은 논의가 필요함. 기존의 고등교육 환경에서 장애학생들이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차별을 해소하고,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 특히 장애학생지원센터 내실화, 대학 내 진로 및 직업교육 지원 강화, 보조인력 및 전문인력 확충 등 최소한의 고등교육 기회를 누리기 위한 기본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해야 함. 이에 대한 지원 계획 수립 필요.

### Ⅲ. 소결

- 장애인의 교육권 문제는 입학 기회 제공 및 학교 증설 등 기회 측면, 교육 장면에서 의 질 제고 등 과정 측면, 교육 이후의 진로 문제 등 결과 측면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음.
- 현재 우리 나라의 장애인 교육 문제는 교육 기회, 과정 및 결과 등 모든 측면에서 미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이중 어떠한 측면을 더 개선하고 자원을 추가로 투입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지혜를 모아봐야 함.
- 다만, 장애영유아 조기 특수교육 및 평생교육 문제의 경우 교육의 기회 측면에서도 다른 교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함.
- 교육의 과정 측면의 경우 통합교육이 시행된 지 20여년이 지나고 있지만 여전히 물리적 통합만 강조되는 통합교육이 시행되고 있거나, 통합교육 현장에서 방치되어 있는 장애학생들이 상당수 발견되고 있음. 또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치료지원, 가족지원, 통학지원, 보조인력지원, 보조공학지원 등)에 대한 지원 여건도 미비하여, 효과적인 특수교육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따라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하여 인력 확충 및 예산 지원이 필수적임.
- 교육의 결과 측면의 경우, 고등학교를 졸업한 장애학생의 40%만이 상급학교로 진학하거나 취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나머지 장애학생은 시설이나 가정으로 되돌아가고 있음. 이것이 특수교육의 실패로 인한 것인지, 장애인의 고용 환경 또는 고등교육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진로 획득의 기회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인지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음.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진단하여,

123

장애학생이 학교 졸업 이후 일반학생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결과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따라서, 장애인 교육권 문제에 대한 중장기 계획은 위와 같이 교육의 기회, 과정 및 결과 측면을 꼼꼼하게 살펴 본 후 각각에 대한 지원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임.



# 장애인 주거 지원 강화를 위한 토론

토론 4

# 은종군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정책홍보국장)



# 장애인 주거 지원 강화를 위한 토론

은종군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정책홍보국장)

# I. 들어가며

장애인에 있어 주거는 단순한 주택의 의미를 넘어 장애에 적응하는 일차적 공간이자 일상과 사회적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삶의 전부이다. 최근 우리사회가 장애문제를 탈 시 설-자립생활로 정책패러다임을 전환하면서 그 중요성은 더 커지고 있고, 또 정책적 수요 자인 장애인은 주거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이러한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결과는 최초의 장애인주거실태조사에서 그 실태와 심각성이 잘 나타나 있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구체적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지난 2월 제정된 장애인·고령자 주거약자 지원 법률 조차도 열악한 장애인의 주거현실을 개선하 기에는 미흡하다.

주거는 누구나 안정적으로 누려야 하는 권리로 생각하기에 인권에 비유된다. 이러한 권리의 보장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주거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실천 방안들이 필요하다. 본 토론자는 장애인 주거지원 제도 강화를 위해 제시한 사안들을 중심으로 의견을 추가 제시하고자 한다.

# 1.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제정되었지만, 법률 제정과정에서 정책적 수요가 다른 대상을 주거약자로 규정한 법적용으로 정책의 실행에 있어 혼선이 불가피하 다. 또한 실질적인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지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법률의 개정과 독자적인 장애인주거법의 재추진이 언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우선 법 개정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장애인 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최저주거기준을 마련하고, 그 적용은 전체 장애인가구에 적용해야 한다. 최저주거기준은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이 되는 주택기준이다. 장애인의 경우 장애로 인한 특성 때문에 면적 기준(휠체어 사용 여부)이 현행 최저주거기준과는 달라야 하며, 또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편의시설의 설치 기준도 최저주거기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그 적용은 주거약자용 주택에 국한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전체 장애인가구여야 한다. 현재 장애인가구의 상당수는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에거주하고 있다. 만약 현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대로 주거약자용 주택으로만 한정다면 열약한 주거환경에 거주하고 있는 대다수 장애인의 기본적 주거욕구의 충족여부는 파악할 수없다. 뿐만 아니라 최저주거기준의 도입 취지 또한 훼손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둘째, 실효성 있는 장애인주거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한다. 주거실태조사는 주택법 제5조에 근거해 짝수 해에는 일반주거실태조사, 홀수 해에는 특수주거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행 장애인등 주거약자법이 2년마다 실시하겠다는 주거실태조사는 법시행령 제6조를 볼 때 주택법에 근거한 일반주거실태조사 때 장애여부만을 포함하는 끼워 넣기식의 형식적인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주택법에 근거한 일반주거실태조사시에 설문항목에 장애여부와 장애유형, 장애등급 등의 일반적인 장애항목을 포함해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대신 장애인등 주거약자법에 근거한 주거실태조사는 장애유형별이나거주형태별 등 장애특성에 따른 심층 조사로 장애인의 실질적인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조사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주거약자용 주택 공급의 현실화이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거약자용 주택은 공공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 개조한 주택, 매입임대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시행령에서 의무건설 되는 주택은 30년 이상의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어 장기전세주택을 포함한 매입임대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5년 또는 10년) 등은 공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정부나 지자체,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주택인 국민임대주택만 해당되는 것이며, 또 영구임대주택을 대체할 목적으로 건설하는 50년 공공임대주택은 현재 건설할



예정이 없기 때문에 실제 공급될 수 있는 물량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주 거약자용 주택의 공급확대를 위해서는 장기전세주택을 포함한 매입임대주택, 5년·10년 공공임대주택이 주거약자용 주택의 의무건설 물량에 포함되어야 한다.

또 건설되는 임대주택의 비율도 수도권은 5%, 이외지역은 3%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도권에서 장애인 및 고령자 등에 공급하고 있는 평균 비율 8% 보다 낮은 수준으로 수도권은 최소 10%, 그 외 지역은 5%이상으로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

넷째, 주택개조(주거환경 개선)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주택정책에 유니버셜디자인 개념이 포함되어야 한다. 주거와 관련한 각종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주택개조의 필요성은 느끼지만 지원이 부족해 불편함을 감내하고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주거환경 개선은 주거생활의 수준을 높일 뿐 아니라 자립생활의 촉진은 물론 생활의 불편해소 등의 이점이 있지만, 개조와 원상복귀 시에 발생하는 비용 부담으로 쉽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주택개조비용의 지원도 필요하겠지만 더 근본적인 대안은 유니버셜디자인 개념을 주거정책에 도입하고 이를 우선적으로 주거약자용 임대주택 건설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주택개조 비용의 부담뿐만 아니라 자원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근본적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2.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 전국 확대

주거 빈곤가구의 경제적 어려움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들에서는 장애인을 비롯한 한부모 가정 등 주거 빈곤 가구에 대해서 무상임대 형태의 전세주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현재의 한정된 공공주택의 물량을 저소득층끼리 경합하고 있는 주택공급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거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각 시도에서 다양한 계층들에 시도되고 있다. 현재의 주택공급 상황을 볼 때 충분히 고려 될 수 있는 제도이며, 최근 장애인의 탈 시설-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주거대안으로서도 고려되고 확대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안정적인 주거공간의 마련이 필요한 주거 빈곤가구에 있어서는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어 보인다. 현재의 전세주택 제공 사업은 최소 2년에서 최장 6년이라는 입주 기한이 정해져 있어,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주기간이 끝나고 나면 다시 주거 불안상태에 직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본적인 주거안정 지원 대책은 될 수 없다. 따라서 많은 주거 빈곤층의 안정적인 주거 확보를 위해서는 현재의 부족한 공공임

대 물량의 총량 확대를 통한 주거 빈곤가구의 주택물량을 확대하는 것이 장애인의 주거 안정은 물론 또 다른 주거 소외계층의 주거권도 함께 확보될 수 있다.

물론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만으로 장애인의 주택수요를 해결하는 것도 한계는 있다. 영국이나 미국, 일본 등에서는 장애인 주택의 기준을 우선 설정하고 해당 기준을 만족하는 시설을 갖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건설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세제혜택 등을 지원하고, 지원받은 주택은 일정기간 장애인에게 임대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해야 한다.

### 3. 주택구입 및 전월세 보증금 지원 확대

장애인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거주하고 있는 주택과 관련해 주택대출금과 임대료의부담이 생필품을 줄일 정도로 어렵다고 답한 경우가 비장애인가구의 3배나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는 주거비 지원을 별도로 받고 있으나 평균적인 주거비에 미치지 못하는 형식적 수준의 금액을 받고 있다.

안정적인 주거지원을 위해서는 저금리 지원이나 상환기간연장과 같은 금융지원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지만, 현재 장애인과 관련한 별도의 주택금융 정책은 전무하다. 따라서 우선 장애인이 주택금융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보제공과 대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며, 또 대출이 좀 더 쉽도록 공공에서 보증을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상환할 수 있도록 기간을 연장해주어야 한다.

# 4. 주거환경 개선 지원 확대

농어촌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된 비판은 도시에 살고 있는 장애인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쉽게 도시로 확대하지 못하는 것은 예산이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특)'에서 확보되어 있어 농어촌으로 한정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또 대상을 전 장애인가구로 확대되지 못하는 것은 현재의 사업이 공공부조의 성격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차원의 예산 확보가 아니라 국토해양부의 일반회계로 편성하고, 국민주택기금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



한 특별법 등에 근거해 각종 개발을 통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장애인주택기금으로 편성해 장애인주거환경 개선에 사용해야 한다. 무엇보다 앞서 주거약자지원법에서 언급한 것처럼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있는 유니버셜디자인 개념을 주택의 설계단계에 서부터 적용해 장애인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여야 한다.

# 5. 자립을 위한 주거지원

탈 시설-자립생활을 위한 제1조건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지원과 개인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종합적인 지원시스템이필요하다.

우선은 중간단계의 주거지원이다. 현 주택공급 정책의 원칙은 무주택세대주나 해당 지자체에서 일정기간 거주하고, 다수인 가구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시설에서 거주하거나 가족으로부터 독립하는 경우 무주택 기간이 짧고, 단신가구로 인해 공공주거 정책의 보장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일부시도들은 체험 홈, 자립생활가정, 자립주택 등을 통해 주거지원을 하고 있으나 그 수가매우 제한적이어서 장애인의 요구와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지 못하고 있다. 또 거주할 수있는 기간도 짧아 다음 단계의 프로그램과의 연계도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해 그 효과가떨어진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탈 시설-자립생활을 위한 중간단계로 이용할 수있는 주거공간으로 미분양 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복지서비스와 주거가 결합된 지원주택 혹은 지원주거 개념의 정착이다. 이미 영국, 미국, 일본 등에서는 이를 통해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 정착해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최근 자립생활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시급한 정착이 요구되는 시스템이다.

단순히 주택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하고 통합되어 살아 갈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와 정보의 제공으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다양한 기회의 제공을 위한 정보제공과 지역사회에 거주할 수 있도록 경제적 상황에 대한 개입, 기관과 의사소통, 기타 필요한 서비스의 연계가 가능해야 한다. 또 이와 함께 각종 복지서비스, 상담, 교육, 의료, 고용 등 일상생활의 다양한 영역의 지원서비스를 연결시키는 지원시스템을 도입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 차별 없이 건강을 향유할 권리 보장

토론 5

# 김윤태

(가톨릭대학교 재활의학과 교수)



# 차별 없이 건강을 향유할 권리 보장

김윤태

(가톨릭대학교 재활의학과 교수)

# I. 추진목표: 차별 없이 건강을 향유할 권리 보장

# Ⅱ. 추진 방향

- 낮은 소득수준에 비해 과중한 의료비 부담: 의료보장성 강화
  - 건강보험 연간적용 인구 1인당 총진료비 구성에서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총 진료비가 3.9배(2005)
  - 서울시 장애인 가구 소득의 20.6% 보건의료비 지출 그 부담이 비장애인 가구의 2 배 정도, 소득규모 반영하면 6배 정도(2005; 서울대, 건강관리공단)
  - 장애로 인한 추가 소요비용 중 의료비 부담 가장 큼, 특히 뇌병변 및 내부장애
- 높은 수요에 비하여 낮은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정책
  - 장애인이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욕구 중 하나가 의료보장
  - 장애인의 높은 질병유병율 및 미충족 의료 수요
  - 노인층 높은 장애출현율에 따른 장애 노인 지속 증가 경향, 의료수요 증가
    - : 65세 이상 장애출현율 17% 이상, 구성비 39% 정도(2011, 장애인실태조사)
  - 재활의료기관 부족과 지역적 불균형으로 인한 낮은 서비스 접근성
    - : 장애유형 및 특성별 전문의료기관 부족

- : 전체 93개 중의료권 중 28개(30%) 재활의료 취약지역(2010, 국립재활원)
- 재활의료전달체계 미비로 인한 부적절한 재활의료 이용 현황
  - : 중증장애 발생 후 반복적인 재입원, 장기간의 입워기간 의료비용 부담 증가
  - : 사회복귀를 위한 의료재활 프로그램 및 수가 체계 미비
  - : 중증장애인을 위한 재활요양체계 미비 만성기 재활의료서비스 미흡
- 의료기관 장애인 진료 기피 경향 및 정당한 편의 제공 부족: 수가 확대 및 조정
  - 중증장애인 또는 특정 유형의 장애인 진료 기피 경향
    - : 여성장애인 임신 및 출산 관련 의료서비스
    - : 중증장애인 및 장애아동 구강의료서비스
  - 장애유형별 편의 제공 및 보조기구 제공 부족
  - 부적절한 재활의료 수가 체계: 낮은 수익성으로 재활의료서비스 활성화 어려움
    - : 재활의료 입원환자 재원일수 긴 반면 재원일당 낮은 평균 진료비
- 중증장애인 및 특정 장애유형의 장애인 건강 위협 고위험군을 위한 대책 미흡
  - 이미 핵가족화된 사회 환경에서 재가장애인 간병과 보호 부담 과중
  - 중증장애인, 노인장애인 등 높은 질병유병율 및 의료수요: 건강 고위험군
  - 내부장애인은 질환이자 장애로서의 특성 때문에 건강관리에 어려움
  - 전반적으로 보건의료 정보접근성 낮고 장애특성에 따른 정보 취득의 어려움
- 불만족스러운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 현황
  - 장애인 보조기구 구입비용 부담 과중 및 보급 확대 미미(2011, 실태조사)
  - 보조기구 전달체계 미비: 낮은 품질, 낮은 만족도, 체계적 관리 미흡
- 따라서 장애인 건강권 확대를 위해서는 토론문에서 지적한 데로 장애인 건강상태 및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현황에 관한 종합적 조사체계 구축과 보건의료서비스 접 근성 제고를 위한 정책 강화, 장애인 보조기구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동의하는 바이나 더 나아가 장애분류 및 특성별 건강관리체계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함.



# Ⅲ. 주요 내용

#### 1. 장애인 건강통계 구축

- 국민건강영양조사 활용에 적극 동의함.
- 활용방안으로서 중점관리 대상인 건강 고위험군의 파악, 중증장애인 건강수준 파악 및 건강증진 방안 모색, 간병 및 보호, 활동보조 수요 파악 등 가능
- 활용에 따른 정책 제언으로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일상생활 지원방안, 장애 원인 에 따른 예방 및 건강증진 방안 수립(2005, 국민건강영양조사 정책토론회)
- 장애인 건강통계 뿐만 아니라 장애원인별 보건의료통계 구축 필요함.
  - : 추정치에 불과한 주요 장애원인별 통계 파악 장애아동, 척수장애 등등

#### 2. 의료보장성 강화

#### 1) 진료수가 차등화

- 중증장애인 및 특정 장애인 진료 수가 가중치 두어 상향 조정
- 전문재활치료 수가 조정을 통한 재활전문병원의 육성
- 재활치료 수가체계의 개선: 장애 분류별, 중증도 별, 시기별 총액수가제 도입
  - : 현행 행위별 수가체계 하에서는 심사 규정에 따른 기계적 처방 반복 유도
  - : 재활병원과 요양병원의 기능 혼재 수가체계 개선으로 기능적 분화 유도(2011, 국립재활원)

# 2) 장애인 의료비 지원 확대

- 높은 자기부담금 경감을 위한 비급여 항목 보험적용 확대, 급여기준의 확대 적용 등 보장성 강화
- 저소득층 중증장애인을 위한 의료급여 통합 적용, 차상위 계층 의료비 지원 확대 등 조치 요함.
- 희귀난치성 질환자 다수가 중증장애 동반하므로 의료비 지원 대상질환과 지원 범

#### 위 지속적 확대

### 3. 재활의료서비스 확대 및 전달체계 구축

-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재활의료기관 지속적 증설 확대
- 권역별 재활병원 지속적 확대뿐만 아니라 재활의료 취약지역에 재활거점병원 지 정 지원
- 재활요양병원을 포함한 재활의료전달체계 구축
  - : 장애 분류별 전문재활의료기관, 만성기 재활요양병원 등 인증 지정
-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의 확대 및 활성화
  - : 전국 보건소로 범위 확대 및 예산 지원

### 4. 장애특성별 건강관리체계 도입 및 보건의료정보 제공 강화

- 중증장애인 가병과 보호를 포함한 질병 및 건강관리체계 구축
- 장애유형별 특성에 따른 효과적인 건강관리 프로그램 개발 시행
- 보건의료 및 복지서비스 정보 제공 목적의 통합정보망 구축
- 동료상담 활성화

# 5.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 확대 및 관리체계 구축

- 보험급여 항목 세분화 및 지원 범위 확대 필요
- 체계적인 장애인 보조기구 관리체계 구축



# 접근권은 이미 충분히 보장되었는가?

토론 6

배융호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사무총장)



# 접근권은 이미 충분히 보장되었는가?

배융호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사무총장)

### I. 들어가는 말

이번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인인권증진중장기 계획은 단기 계획이 아닌 중장기계획이라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특히 접근권 정책의 경우 단기적 계획이 아닌 중장기 계획차원에서 수립되었을 때 비로소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기에 더욱 중장기계획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 Ⅱ. 중장기 계획수립에 있어서의 접근권 정책 부재

먼저, 장애인인권증진중장기 계획에서 "접근권 정책"이 부재하다는 것은 매우 답답한 일이다. 이동권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개인의 이동을 포함한 이동권의 보장이 가장 큰 화두가 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동권은 접근권의 일부분이다. 접근권은 크게 건축물에 대한 접근, 이동, 정보에 대한 접근으로 구성이 된다. 따라서 접근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건축물에 대한 이용과 접근, 교통수단의 이용 및 개인의 이동, 정보 접근 등이 모두 보장될 수 있다. 그러기에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도 제18조에서 시설물 접근・이용에 있어서의 차별금지를 다루고 있고, 제19조에서 이동 및 교통수단등에 차별금지를 다루고 있으며, 제20조~제21조에 걸쳐 정보 접근에 있어서의 차별금지를 다루고 있는 것이다. 또한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있어서도 제9조 접근권에서 건축물 및 교통수단의 이용에

대한 보장을 다루고 있고, 제20조 개인의 이동에서는 보조기구 등을 이용한 이동의 보장을 다루고 있다. 이처럼 접근권에 있어서 이동권은 접근권의 한 부분이며, 이동권의 보장 만으로는 장애인의 이동 및 접근이 보장될 수 없다.

그러나 이번 장애인인권증진 중장기 계획의 경우 접근권의 보장이 아닌 개인의 이동만을 보장하는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이러한 계획 수립은 두 가지 문제점을 갖게된다. 첫째는 접근권이라는 중요한 권리를 온전하게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며, 둘째는 건축물에 대한 접근과 이용이라는 중요한 권리를 누락시킨 반쪽짜리 계획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1997년에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우리나라의 건축물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는 어느 정도 마련되었다고 할 수있다. 그러나 여전히 편의시설 설치율은 77.5%에 불과하며, 법적 기준대로 설치한 적정설치율은 55.8%에 불과하다(2008, 보건복지부). 숙박시설의 장애인용 객실의 비율은 0.5%여서 장애인용 객실이용이 여전히 어려우며, 공연장등의 장애인 관람석도 1%수준이어서여전히 이용이 어려운 현실이다. 대부분의 음식점에는 주출입구에 턱과 계단이 있으며,안방형태의 음식점이 많아 휠체어 사용자의 이용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현실에서 과연건축물에 대한 접근과 이용을 위한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가?

접근권 보장 정책은 균형 있게 수립되어야 한다. 그것은 건축물에 대한 접근과 이용권, 이동권, 정보접근권이 균형 있게 발전되어 갈 때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인권증진 중장기 계획에서 접근권의 중요한 부분인 건축물에 있어서의 접근과 이용에 대한 권리 증진이 누락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며, 조속히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인권증진중장기 계획에서 접근권 정책은 반쪽짜리 정책에 불과할 것이다.

# Ⅲ. 개인의 이동 보장에 대한 정책

첫째, 추진방향과 주요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

추진방향에는 크게 세 가지 방향이 제시되고 있다. 저상버스의 확대와 다양한 노선의 운행, 시·청각장애인의 대중교통이용에 있어서의 접근권 보장, 도시철도 및 철도역사의



승강기 의무화 설치 등이다. 그러나 반면에 주요 내용에서는 도시철도 및 철도역사의 승 강기 의무화 설치 부분이 빠져 있고, 추진 방향에는 없던 특별교통수단의 확대와 국고지 원 방안이 들어와 있다.

발표 자료가 추진 내용 가운데 주요 내용만 담고 있고 본래 추진 내용에는 추진방향의 과제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추진방향과 내용이 일치되도록 정리할 필요가 있다. 즉, 추진방향에도 특별교통수단의 확대 및 국고지원이 포함되어야 하고, 주요 내용에도 도시철도 및 철도역사의 승강기 의무화 설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둘째, 저상버스의 노선 확대는 바람직하다.

시외버스와 마을버스로의 저상버스 확대는 바람직하다. 다만, 주요 내용에서 언급한 것처럼 시외버스의 경우 지형 등의 이유로 휠체어리프트 장착 버스로 도입될 수도 있으며, 마을버스의 경우 작은 규모의 저상버스 개발이 추진되어야 한다. 다만, 마을버스와 시내버스의 경우 현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제2조(정의)에서 버스의 대상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3조제1조에 해당하는 버스로 규정하고 있으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의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은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로 되어 있다. 따라서 현행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제2조(정의)에 따른 저상버스의 대상은 시내버스 외에도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가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현행「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별표 1에서 대상 교통수단을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및 시외버스로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표 1을 개정하여 마을버스를 포함시켜야 하며, 아울러 구체적으로 마을버스 및 시외버스에도 저상버스 또는 휠체어 사용자 등 장애인의 접근과 이용이 가능한 버스를 운행하라는 계획 등을 수립하도록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제6조(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의 수립등) 제2항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대중교통수단에 있어서의 정보 접근은 확대되어야 한다. 현행「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별표 2에 의하면 이미 도시철도(지하철) 뿐 아니라 노선버스(시내버스)에도 문자안내판 및 안내방송(음성안내)을 의무화하고 있다.

# [별표 2]

#### 대상시설별 이동편의시설의 종류(제12조관련)

#### 1. 교통수단

OLEMONIA			안내시설		내부시설			기타			
대상시설	이동편의시설 설	안내 방송	문자 안내판	행선지 표시	휠체어 승강설비	휠체어 보관함	교통 약자용 좌석	장애인 전용 화장실	수직 손잡이	장애인 접근 가능표시	출입구 통로
	시내버스 (저상형)	0	0	0	0		0		0	0	
	시내버스 (일반형)	0	0	0	0		0		0	0	
버스	시내버스 (좌석형)	0	0	0	0		0			0	
	농어촌 버스	0	0	0	0		0		0	0	
	시외버스	0	0	0	0		0			0	
철.	도차량	0	0	0	0	0	0	0		0	0
도시	철도차량	0	0	0			0		0	0	0
ō	항공기	0	0	0		0	0	0		0	0
	선박	0	0	0	0	0	0	0		0	0
광	역전철	0	0	0			0		0	0	0

따라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에 대한 개정은 불필요하다. 다만, 현재 저상버스 외의 일반 시내버스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잘 지켜지지 않으며, 도시철도 차량에서도 일부 차량에는 전자문자안내판 등이 설치되지 않는 등 법을 준수하지 않는 문제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

넷째, 특별교통수단의 확대가 필요하다.

최근「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 개정되면서 도지사에게도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



진계획수립이 의무화되었으며(제7조의2), 여기에는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확충,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 또는 도에서 특별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제16조 제6항). 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및 시행령』은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된다. 따라서 국고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는 이미 마련된 셈이다.

그리고 도지사에 대한 특별교통수단의 도입에 대한 계획 수립이 의무화되면서 광역이 동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시와 시의 경계를 넘나드는 광역특별교통수단의 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시기이다. 현행 개정안에는 특별교통수단의 운행범위를 인근 특별시·광역시·도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제16조 제5항). 따라서 현재의 법률 안에서는 인근 특별시·광역시·도 외의 지역으로의이동이 어렵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부천은 갈 수 있지만, 서울에서 인천은 갈 수 없다. 부천은 인접해 있는 인근 시에 해당하지만, 인천은 인접해 있지 않아 인근 시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타 시·군으로의 이동을 지원하는 광역특별교통수단이 도입되어야 하며, 광역특별교통수단은 특별시·광역시·도에서 설치하는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운행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개정이 필요하다.

다섯째, 도시철도 및 철도역사의 승강기 의무화는 구체적이어야 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의해 도시철도 및 철도역사의 승강기 설치는 이미 의무화되어 있다. 다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 제정되기 이전의 기존 역사에 대한문제이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의 경우 법 제정 당시별표 3에 정비대상시설 및 설치 기준에서 기존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횡단보도, 동사무소등 공중화장실, 장애인복지시설, 종합병원, 장애인특수학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청사, 여객시설 등은 법 시행 2년 이내에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철도역사 및 도시철도역사의 경우 법 시행 7년 이내에 편의시설 설치를 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기존 시설이라도 공공시설의 경우 유예 기간을 주되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반면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의 경우 정비대상시설이라는 부분이 없어 법 시행 이후의 신축 여객시설의 경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의 적용을 받지만, 기존여객시설의 경우는 법 적용을 받지 않게 되는 맹점이 있다.

따라서 이 계획은 기존 역사에 대해서는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모든 역사에 승강기를 설치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자가운전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행에 대한 보장(보행우선구역의 설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저상버스 및 도시철도), 특별 교통수단에 운행, 장애인 운전에 대한 지원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뒤쳐져 있는 부분이 바로 장애인 운전에 대한 지원이다.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의하면, 국토해양부장관은 장애인이나 고령자가 직접 운전하는 데에 필요한 운전장치 또는 차량을 개발하여야 하고(제26조 제1항 3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나 고령자가 직접 운전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운전면허제도를 정비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제27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운전장치 개발은 지지부진한 실태이며, 현재 개발된 차량역시 고가여서 장애인의 구입이 어려운 형편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시책이 중장기과제에서는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Ⅳ. 나가는 말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 계획은 큰그림을 그리는 계획이다. 이러한 큰 그림은 전체적으로 조망하며 체계적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장애인의 이동은 이동만 별개로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할 과제가 아니다. 그것은 접근권이라고 하는 큰 울타리 안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시설의 접근과 이용 및 정보 접근과 함께 추진되어야 비로소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





# 제2장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계획(안) 공청회

# 제3부 | 권리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방안 모색

발제 | 조형석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기획조사팀장)

토론 | 김의수 (장애인인권포럼 선임연구원)

김치훈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책실장)

신동근 (용인정신병원 정신과전문의)

문용훈 (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 회장)

신희원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사무국장)



#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 계획(안) (2013~2017)

발제 3

조형석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기획조사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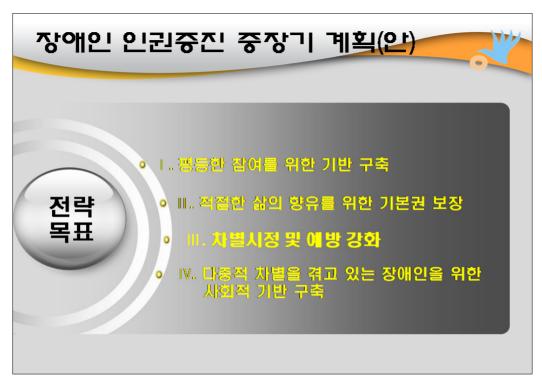
#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 계획(안) (2013~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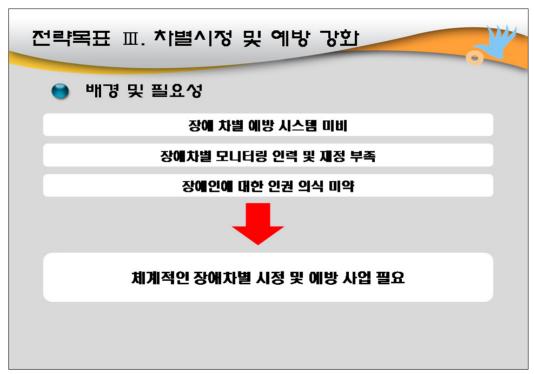
[모니터링/인권교육/발달장애/정신장애/장애여성/장애아동]

#### 조형석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기획조사팀장)









# 



# 1. 모니터링 강화

- 1) 모니터링을 통한 즉각적 개선 효과 극대화
- ✓ 피모니터링 기관에 대해 모니터링 결과 송부 및 개선 조치 관련 기관 협의
- 2) 시전적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개발
  - ✓ 차별유형 및 정당한 편의제공과 관련한 체크리스트 개발 및 유관기관 배포를 통해 차별형위 사전 예방

# 전략목표 Ⅲ. 차별시정 및 예방 강화

- 추진목표
  - 4 모니터링 강화
  - 💋 장애인권센터 설치
  - ③ 장애인 인권교육 강화



### 2. 장애인권센터 설치



- 5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착취, 폭력 및 학대 등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 미흡
- 지역사회 밀착형 장애인인권센터 부재

- 장애인권센터에 현장 임의조사권 부여
- 사회복지서비스 직권신청 연계

### 2. 장애인권센터 설치



- ✓ 장애인권센터의 주요 업무는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인 만큼 현행법률 등을 고려하여, 현장 임의조사권 부여
- ✓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기관' 에는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 받은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되므로(제2조), 민간 위탁된 장애인권센터가 임의조사를 하는 경우 행정조사기본법상의 절차 준수 필요

#### 2) 시회복지서비스 직권신청 연계

✓ 장애인권센터가 사회복지서비스 직권신청과 연계하도록 함으로써 피해 당사자의 신체적, 인지적 및 심리적 회복과 재활 그리고 사회 재통합을 증진할 수 있도록 조치

# 전략목표 Ⅲ. 차별시정 및 예방 강화

- **♦** 추진목표
  - 4 모니터링 강화
  - 💋 장애인권센터 설치
  - 🚯 장애인 인권교육 강화

# 3. 장애인 인권교육 강화



장애인에 대한 인권 의식 부족으로 인한 인권침해 및 차별 발생



-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에 대한 장애인 인권교육 의무화
- 일반교원 및 학교 구성원에 대한 장애인 인권교육 강화
- 대중에 대한 장애인 인권교육 강화



## 3. 장애인 인권교육 강화

- 1) 장에인복지시설의 설치 운영지 및 중시자에 대한 장에인 인권교육 의무화
- ✓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종사자에 대한 장애인 인권교육 의무화
- ✓ 『장애인복지법』에 관련 근거 규정 마련
- 2) 일반교원 및 학교 구성원에 대한 장에인 인권교육 강화
  - ✓ 장애학생이 포함된 모든 단계의 교육기관에서 담당 교원에 대한 직무연수, 학교 구성원에 대한 장에인 인권교육 및 장에이해교육 등 강화
- 3) 대중에 대한 장애인 인권교육 강화
- ✓ 장에인 인권 관련 감수성 증진
- ✓ 장애인에 대한 편견 해소
- ✓ 직장 내 장에인 인식 개선사업 추진

#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 계획



- Ⅰ...평등한 참여를 위한 기반 구축
  - Ⅱ. 적절한 삶의 향유를 위한 기본권 보장
  - Ⅲ. 씨쁜시정 및 예방 강화
    - 다 중적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기반 구축

# 전략목표 Ⅳ. 다중적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기반 구축

👏 배경 및 필요성

사회적 낙인이 강한 장에유형의 경우, 다중적 차별 경험

자기결정권 행사에 있어 발달장에인 및 정신장에인 배제

장에여성 및 장에아동에 대한 고려 미비



다중적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유형에 대한 고려 필요

# 전략목표 Ⅳ. 다중적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기반 구축

- ★진목표
  - 발달장애(지적·자폐성장애)
  - 정신장애
  - ③ 장애여성
  - 장애이동



## 1. 발달장애(지적·자폐성장애)



- 의사표현 및 자기보호 능력 부족으로 인해 학대, 방임성폭력 등에 쉽게 노출
- 현재의 복지체계는 주로 신체적 장애인 중심으로 구축되어 발달 장애인에 대한 권리옹호 미흡

추진 방향

- 발달장애인에게 친화적인 공공기관의 정보 제공
- ◇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
- 🍙 발달장애인 인권침해 예방 및 권리 보호 체계 마련
- 지역사회 통합 및 참여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 및
   지원 체계 마련
- ▲ 돌봄 및 가족지원 강화

## 1. 발달장애(지적·자폐성장애)

### 1) 발달장에인에 친화적인 공공기관의 정보 제공

- ✓ 공공기관에 발달장에인에게 적합한 이용안내자료 제작·비치
- ✓ 사법·행정기관이 발행, 고지하는 각종 정보(전자문서 포함)를 Easy-Read Version 등 발달장애인에 적합한 의사소통 방식으로 변환하여 제공

#### 2) 발달장애인의 의시소통 지원

- ✓ 발달장에인을 위한 한국형 보완 · 대체 의사소통 도구의 개발 및 보급
- ✓ 발달장에인 의사소통 조력인 양성

#### 3) 발달장에인 인권침에 예방 및 권리 보호 체계 마련

- ✓ 발달장에인 형사사건 전담조사제 도입
- ✓ 형사사건 피의자에 대한 발달장에 유무확인 절차 의무화
- ✓ 발달장에인에 대한 법률조력인 배치 및 전문가 의견조회 의무화
- ✓ 장에인생활시설에 입소한 발달장에인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예방교육 억무화
- ✓ 학대, 방임, 착취,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당한 발달장에인을 위한 쉼터 등의 임시보호시설 설치·운영

## 1. 발달장애(지적·자폐성장애)

#### 4) 지역시험 통합 및 참여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 체계 미련

- ✓ 발달장에인에 대한 사정 및 지원판정,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및 모니터링 등 전반적인 사례관리를 위한 발달장에인지원센터 설치·운영
- ✓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최저생계비 수준의 기초소특보장, 고용지원 및 주거지원

#### 5) 돌봄 및 기쪽지원 강화

- ✓ 발달장에인 맞춤형 장에인활동지원제도 구축 : 서비스별 장에 사정 기준 마련 ,발달장에인활동지원 비용 단가 인상
- ✓ 발달장에인 돌봄서비스 모델 개발 및 메뉴일화 추진 : 주단기보호시설 확대 및 표준서비스기준 제정, 발달장에인 가족 휴식지원 제도 도입 및 제가장에인 돌봄지원

## 전략목표 Ⅳ. 다중적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기반 구축

- ★진목표
  - 4 발달장애(지적·자폐성장애)
  - 정신장애
  - ♂ 장애여성
  - 장애이동



## 2. 정신장애



- 노은 비자의 입원율
- 불필요한 장기입원
- 시설중심의 보호
- 정신보건시설 내 기본권 침해
-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편견



- 입 퇴원 과정에서의 적정절차 마련 및 최소한의 권리 제한
- 지역사회 중심의 치료환경 조성
- 제도 및 정책 시행 등에 있어서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 해소

## 2. 정신장애



- 1) 입-퇴원과정에서의 적정절치 미런 및 정신보건시설 내 권리보장을 위한 정신보건법 개정
- ✓ 정신의료기관 입원시 '집단입원'과 '치료입원' 구분(정신보건법 제 24조)
- ✓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에 있어 대상환자에 대한 요건 강화(정신보건법 제 24조)
- ✓ 시장·군수·구청장 보호의무자인 입원 시 퇴원 후 보호체계 의무화(정신보건법 제24조)
- ✓ 정신보건센터를 통한 지역사회 연계절차 강화(정신보건법 제26조의3)
- 사생활의 자유제한, 격리·강박 관련 기본적 권리 보장(정신보건법 제6조 및 시행령 제20조 등)

## 2. 정신장애

- 2) 정신장에인의 시회복귀를 위해 정신보건센터 및 정신요양시설의 기능 정립
  - ✓ 정신요양시설 입소 시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심사
  - ✓ 정신보건센터 기능 강화
- 3) 제도 및 정책 시행 등에 있어서의 정신장에인에 대한 차별 해소
- ✓ 정신장에인을 위한 일자리 확대 및 고용지원제도에서의 사각지대 해소
- ✓ 장에인 주거 지원 시 정신장에인에 대한 차별 해소
- ✓ 민간보험 가입 시 정신장에인 대한 차별 금지

# 전략목표 Ⅳ. 다중적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기반 구축

- ♠ 추진목표
  - 4 발달장애(지적·자폐성장애)
  - 정신장애
  - ♂ 장애여성
  - 4 장애아동



## 3. 장애여성



- 임신, 출산, 육아 등 관련 정보 및 지원 부족
- 비장애여성에 비해 가정폭력 및 성폭력에 쉽게 노출

- 여성장애인의 임신 · 출산 육아 권리 보장
  - 가정폭력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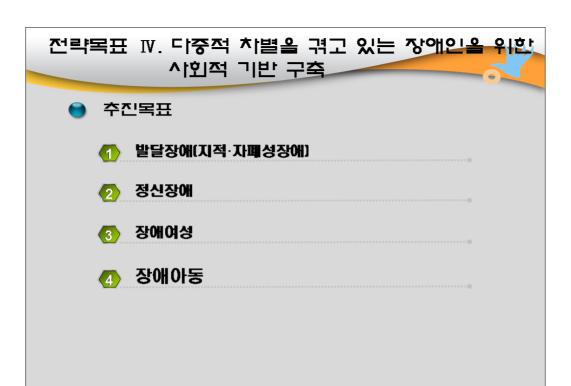
## 3. 장애여성

#### 1) 여성장에인의 임신 - 출산 - 육아 권리 보장

- ✓ 여성장에인을 위한 임신·출산·육아 정보 개발 및 관련 사이트 구축
- ✓ 부모 교육 및 상담 서비스 제공 : 장애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
- ✓ 여성장에인에게 특성화된 병원 육성 및 거점 병원 지정
- ✓ 여성장에인의 임신·출산·육아 상황을 반영한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 ✓ 여성장에인 출산비용 지원 및 양육비 지원 강화

#### 2) 기정폭력 성폭력 방지 및 피해지 보호

-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상담·보호시설 확충
-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 체계 구축







## 4. 장애아동

#### 1) 장에 영 - 유이 교육 - 보육지원 강화

✓ 유치원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 시스템 구축 :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동일한 기준으로 유아특수교사 배치. 특수교육지원센터와 장에아동지원센터(2013년 시행) 간의 긴밀한 연계협력체계 구축

✓ 장에 영·유아 통합교육/통합보육 활성화 : 장에 영·유아가 9명 이상인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치료지원 또는 발달재활서비스 담당인력 배치 등

✓ 사립유치원에 유아특수교사 배치

### 4. 장애아동

#### 2) 장애이동 발달재활서비스 강화

- ✓ 현행 6개 장에유형(지적장에, 자폐성장에, 뇌병변 장에, 언어장에, 시각장에, 청각장에)으로 제한된 서비스 자격기준 폐지
- ✓ 현행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로 제한된 서비스 자격기준 폐지 또는 150%로 완화
- ✓ 발달재활서비스에 물리치료 및 작업치료를 포함하여 서비스 내용 충실화

#### 3) 장애이 기쪽 양옥지원

- ✓ 현행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로 제한된 돌봄서비스 자격기준 비지 또는 150%로 완화
- ✓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 따른 아동기 활동지원을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사업으로 통폐합하고 돌봄서비스 제공시간을 장애성인 활동지원 수준으로 확대
- ✓ 중증장에이동 돌보미 양성 및 인건비 추가지원





#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토론문

토론 1

**김의수** (장애인인권포럼 선임연구원)



#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토론문

김의수

(장애인인권포럼 선임연구원)

## I. 차별시정 및 예방 강화

- 1. 모니터링 강화
- □ 주요 내용
  - 1) 모니터링의 체계화
  - (1) 모니터링의 영역과 대상별로 모니터링 주체 이원화
    - 정책이행 및 성과, 차별인식은 보건복지부로, 장애인차별 및 권리구제 실태는 국 가인권위원회로 모니터링 영역과 역할을 이원화함
  - (2) 법적 근거 마련(장애인차별금지법의 총칙 개정)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의 총칙 개정을 통해 모니터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모니터링 역할 분담에 대한 복지부와 인권위의 합의, 국내 모니터링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완전한 포함 및 참여 보장

- ▲ 보건복지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제까지 통상적으로 수행한 역할을 환기할 때, 차별시정 및 예방강화와 관련한 정책이행 및 성과, 차별인식 등은 복지부로 장애인차별 및 권리구제 실태는 인권위로 구분하는 것이 큰 무리는 없어 보임
- ▲ 다만 모니터링 이원화 제안은 정부 조직 간 역할 분담이라는 민감한 사안이어서 현 실적으로 법령 정비 이전에 분담에 대한 충분한 합의가 관건임
- ▲ 그리고 추진방향에 제시되어 있는 '장애인 당사자 참여 모니터링의 의무화'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주요내용'에는 언급이 없음(※ UN 장애인권리협약 제33조제3호는 "모니터 과정에 시민단체, 특히 장애인과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를 **완전하게** 포함・참여시킨다"라고 당사자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음)
- ▲ 국내 모니터링에 장애인 당사자 참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됨
- ▲ '추진방향'에 권리협약 제33조제3호를 상기시키는 언급이 나오므로!), 인권위 제안 은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를 복지부와 인권위의 모니터링 사업에 참여시키는 방식 으로 당사자(단체)의 완전한 참여를 구체화하려는 게 아닌가 추측됨
- ▲ 그런데 현재 국가인권위는 장애인 인권 침해와 차별시정 권리 구제 문제뿐만 아니라 국내 인권 현안 전체를 총괄적으로 전담(고용, 교육, 가족, 혼인, 임신, 사회적 신분, 나이, 병력, 여성, 성희롱, 외모, 외국인, 장애인 등등)하고 있고 통념상 인권위의업무수행 분야로 인지되고 있음
- ▲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왜 꼭 장애인 차별시정 권리 구제를 국가인권위에서만 전담 해야 하는가 라는 문제제기도 가능함
- ▲ 특히 장애인 차별시정 권리 구제에 당사자와 당사자단체가 현행 수준보다 더 적극 적으로 참여하고 개입하도록 제안할 수 있음
- ▲ 요약컨대 복지부와 인권위로 이원화된 모니터링 체계 내에 당사자 진영이 참여하는 방안도 있겠지만, 이는 사안에 따른 선별적 선택참여로도 가능함
- ▲ 이원화 체계와 더불어 당사자 진영이 복지부와 인권위의 활동 및 정책 수행 과정을

<sup>1) &#</sup>x27;UN 장애인권리협약 비준으로 장애인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모니터링이 의무화됨.'



모니터링하는 독자적 모니터링 체계를 제안함

▲ 결론적으로 협약(제33조제1조)의 취지를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당사자의 완전한 참 여와 포함을 보장하는 제도적 방안이 인권위의 '주요내용'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야 할 것임

## 2. 장애인권센터 설치

#### □ 주요 내용

#### 1) 현장 임의조사권 부여

- 장애인권센터의 주요 업무는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인 만큼 이를 현실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장애인권센터에 조사권 내지 접근권이 부여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다만, 법률의 근거 없이 조례에 의하여 민간단체인 장애인권센터에 이러한 조사 권 및 접근권을 부여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는 만큼, 법적인 문제가 없는 현장 임의조사권을 부여함.
-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기관'에는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되므로(제2조), 민간위탁된 장애인권센터가 (임의) 조사를 하는 경우 행정조사기본법상의 절차를 준수하도록 함.

### 임의조사권 부여 및 인권센터 지속성 보장

- ▲ 지난 10일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서울시 인권기본조례'가 의결됨
- ▲ 이에 독립적으로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정책 권고할 수 있는 '시민인권보호관'이 신설되며 현재 변호사를 포함한 민간인 5명이 채용됨
- ▲ 조례에서 제안한 서울시 인권센터는 서울시가 관장하는 산하 기관(시 소속 행정기 관, 투자출연기관, 시가 지원하는 복지시설 등)의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시정권고 사항을 시장에게 통지, 시장은 산하 기관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인권옹호활동할 계

획2). 결론적으로 임의조사권이 부여된 P&A를 표방

- ▲ 그러나 현장임의조사권이 부여되어 활동 범위가 보장된다 하더라도 인권센터 및 시민인권보호관 예산을 사회혁신기획관(서울시장 직속 기구)이 지원하는 방식이라 단체장이 교체되면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인권센터 운영에 차질이 생길 소지가 있음³)
- ▲ 그리고 서울시 산하 기관에 국한된 조사권 범위를 벗어나거나 심각한 침해사건은 국가인권위원회 혹은 사법부와 긴밀한 공조가 요구될 것임, 단 인권위도 예산과 인력 충워이 필요함4)

#### 2) 사회복지서비스 직권신청 연계

- 장애인권센터의 조사를 통해 피해 장애인의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 등의 피해가 확인되는 경우 피해 당사자가 격리, 보호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원조가 필요함. 이를 위해 장애인권센터가 사회복지서비스 직권신청과 연계하도록 함으로써 피해 당사자의 신체적, 인지적 및 심리적 회복과 재활 그리고 사회 재통합을 증진할 수 있도록 조치함.

### 인권센터 내 긴금피난쉼터(가칭) 설치 및 합리적 위탁운영 방안 제시

▲ 조사권 문제와 함께 현재 인권센터 및 다수 인권옹호 단체들이 시급히 제기하는 사 안은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분리·보호할 수 있는 긴급피난쉼터(가칭) 설치임5)

<sup>2)</sup> 서울시 인권조례는 14일 현재 입법예고되지 않아 조문을 확인할 수 없었음. 하여 조례를 가장 충실히 분석했다고 판단한 보도기사에 의존하여 내용을 구성하였음. 한겨레21, 『서울시민 보호하는 시민인권보호관 생긴다』

<sup>(</sup>기사출처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 general/32952.html)

<sup>3)</sup> 인권기구의 지속성 문제는 이번 정권의 국가인권위원회 운용을 통해 충분히 입증되었다.

<sup>4)</sup>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인권문제에 신속대응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장애인 진정사건 처리 속도가 늦고, 인권침해 사건에 즉각 개입하지 못하는 점, 조직이 서울 중심이고 지방 일부에 사무소가 있으나 조직 축소 논란이 있다는 점이 꼽힌다.

<sup>5) &</sup>quot;요즘 친고죄 폐지가 논의되던데, 반드시 이루어져야 해요. 가해자를 고소할 것인가 말 것인 가 고민하는 고통이라도 덜어주면 좋겠어요. 반드시 가해자는 처벌받고 피해자는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국가가 줘야죠. 그리고 성폭력 관련 프로그램들은 거의 다 가해자에게 맞춰져 있다는 게 정말 문제예요. 피해자들이 탈출한 후 보호하는 대책은 너무 미미해요."한



- ▲ 분리가 요구되는 사유로는 공동생활중인 피해자와 가해자의 주거조건이 인권침해 를 야기하는 근본요인일 때임
- ▲ 쉼터가 없으면 인권침해를 인지하더라도 실질적인 후속조치가 어렵기 때문에 당사 자 분리·보호를 제안하는 인권위 방안 지지
- ▲ 사회복지서비스 직권신청 연계에서 최종에는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문제가 남아 있음(전남 광주, 경기 성남 사례)
- ▲ 또한 효율적인 인권센터 운영을 염두에 둔다면 결국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이기 때문에 기관 선정 방식이 중요함6)
- ▲ 막연한 공모 보다는 사전에 기관 운영에 필요한 자격조건을 공시하여 신청을 접수 받는 방식이 가장 무난할 것임
- ▲ 그러나 센터 위탁을 위한 기관의 자격 요건을 두기도 하는데(비영리법인으로만 국한하는 등) 역량 있고 활발한 활동을 보이는 장애인권단체가 반드시 법인인 경우는 없기 때문에, 법인이 아니라고 해서 배재해서는 안 될 것이며 이러한 사례는 지역에 따라 인권센터 선정에 결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음, 중요한 것은 기관의 센터 수행 능력이지 기관의 공인된 규모나 조직력이 아닐 것기
- ▲ 또 장애인복지시설은 그 자체가 인권센터의 사업대상(인권침해, 차별에 대한 모니터링 및 관계자 교육 및 상담 등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복지시설 및 이를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은 위탁대상에서 제외해야 함(지자체 인권센터 위탁과정에서 우려되는 문제)

[173

겨레신문 9월 16일자, 친족성폭력 국내 첫수기 쓴 은수연(가명)씨 인터뷰 기사 중에서 인용] 6) 인권센터 운영위탁 방안은 지난 국가인권위원회 장차법 시행 4주년 기념 토론회(2012.04.19) 중 서울지역 제2부 토론에 나선 윤정노 변호사의 글을 발췌하여 인용한 것임(윤정노, 『장애인권조례의 핵심 내용 및 쟁점』, 국가인권위원회 장차법 시행 4주년 기념 토론회자료집 p.146~147, 국가인권위원회, 2012.), 필자는 인권센터 위탁에서 장애인복지시설 및 이를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은 위탁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윤정노 변호사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함

<sup>7)</sup> 인권센터 선정의 파행은 성남시에서 이미 발생했다. 성남시는 올해 7월 오픈한 사업 실적이 전혀 없는 ○○○복지관에 인권센터를 위탁하였다. 공모를 통해 선정했다는 소식도 들리지 않는다. 성남시 인권센터의 1년 예산은 총 3억 1천만 원에 달한다.

### 3. 장애인 인권교육 강화

#### □ 추진 방향

- UN「장애인권리협약」은 제8조에서 당사국으로 하여금 "가족 단위를 포함하여 사회 전반에서 장애인에 관한 인식을 향상시키고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고양"시키기 위한 즉각적이고 효과적이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감수성 증진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안식과 사회적 인식 개선 △직장과 고용시장에서 장애인의 기술, 실적, 능력과 기여에 대한 인식을 장려하는 대중인식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며, 유아기를 포함한모든 장애아동에 대하여모든 단계의 교육제도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를 양성하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따라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에게 장애인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다양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 주요 내용

#### 1)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에 대한 장애인 인권교육 의무화

-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운영 조사자에 대한 장애인 인권교육을 의무화하고, 「장애인복지법」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규정 마련

#### 2) 일반교원 및 학교 구성원에 대한 장애인 인권교육 강화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구성원의 인식전환 및 장애학생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장애학생이 포함된 모든 단계의 교육기관에서 담당 교원에 대한 직무연수, 학교 구성원에 대한 장애인 인권교육 및 장애이해교육 등을 강화

#### 3) 대중에 대한 장애인 인권교육 강화

- 사회 전반에서 장애인에 관한 인식을 향상시키고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고양시키기 위해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감수성 증진 △장애인에 대한



궁정적 안식과 사회적 인식 개선 △직장과 고용시장에서 장애인의 기술, 실적, 능력과 기여에 대한 인식을 장려하는 대중인식사업 추진

-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제25조 및 시행령 제16조에 공공기관과 교육기관을 상대로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시행을 명시하고 있음<sup>8</sup>)
- ▲ 또 지난해 도가니 사태 이후 시설 내 성범죄 예방 교육을 추가했음》
-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제32조에서 인식개선 및 괴롭힘 등 방지 교육 실시를 규정함10)
- ▲ 동법 제29조제3항에 장애인이 성을 향유할 권리 보장하는 홍보교육 조문이 있음!!)
- ▲ 성문제와 관련 동법 제33조제4항에 성폭력 예방교육 실행 시 장애여성을 고려하는 조항도 있음<sup>12</sup>)

(175)

<sup>8) 『</sup>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용도서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 선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sup>『</sup>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6조(사회적 인식 개선 교육)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sup>9) 『</sup>장애인복지법』제59조의2(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신고) ④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자는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해당 시설의 종사자에게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2.1.26.]

<sup>『</sup>동법』제90조(과태료)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의3. 제59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자

<sup>10) 『</sup>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 ⑥국가 및 지방자 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등을 근절하기 위한 인식개선 및 괴롭힘 등 방지 교육을 실 시하고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sup>11) 『</sup>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성에서의 차별금지) ③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성을 향유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장애를 이유로 한 성에 대한 편견·관습, 그 밖의 모든 차별 적 관행을 없애기 위한 홍보·교육을 하여야 한다.

<sup>12) 『</sup>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33조(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 ④교육기 관, 사업장, 복지시설 등의 성폭력 예방교육 책임자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장애여성에 대한 성인식 및 성폭력 예방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하며, 그 내용이 장애여성을 왜곡하여서는 아니 된다.

- ▲ 끝으로 제37조에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교육 조항이 있음13)
- ▲ 하지만 성범죄 예방교육과 성관련 교육, 정신장애인 교육 등은 인권교육의 일부분 으로 인권 전반을 포괄하는 인권교육이 제안되어야 할 것임
- ▲ 또 인권교육을 인식개선교육만으로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인권교육을 명문화하는 법률 정비가 시급함
- ▲ 그러나 인권위의 제한된 인력과 예산, 그리고 진정 조사 처리에 집중하는 상황에서 인권교육 전담 주체가 반드시 국가인권위원회여야 할 이유는 없음
- ▲ 인권조례 제정을 통해 지자체 내 인권센터의 주요 사업에 인권교육이 대부분 포함 되어 있음
- ▲ 인권교육은 인권센터를 통해 지역별로 수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이며 장애 인권감수성이 풍부하고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담보한 인권단체가 맡는 것이 합당함, 물론 인권단체의 교육실적도 객관적으로 검증되어야 함
- ▲ 다만, 인권교육 컨텐츠 구성 및 교재 제작, 강사풀 구성 등 교육에 필요한 선행 작업은 장애인 인권관련 민관 전문가가 협력하여 구성해야 함, 특히 인권교재 제작은 인권교육을 수행해온 인권활동가들의 노하우와 장애학 및 인문학 일반(역사, 철학, 사회과학, 문학, 문화예술 등)의 배경지식이 요구됨
- [질문] 교육 대상을 시설 운영·종사자/교원 및 학교구성원/일반 대중으로 구분할 때, 대상에서 빠진 공공기관(중앙정부부처, 지자체행정부, 공기관 산하 관련기관시 설 등등)은 기본 교육 대상이라 제외한 것인지?

<sup>13) 『</sup>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37조(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금지 등)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 홍보 등 필요한 법적·정책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발달장애인 및 장애이동 부문

토론 2

## 김치훈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책실장)



# 발달장애인 및 장애아동 부문

김치훈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책실장)

## I. 추진 목표에 대하여

-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은 장애인들 가운데서도 차별과 인 권침해에 더 취약하게 노출되어 있으므로 전략목표에서 이들을 다중적 차별을 겪 는 장애인으로 유형화하여 별도로 다루는 것은 바람직함
- 다만, 이들이 차별과 인권침해에 더 취약한 이유가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를 개념적 으로 세분화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즉, 다중적 차별의 하위 영역으로 장애유형에 의한 다중적 차별(신체적 장애에 대비되는 정신적 장애)과 성과 연령에 의한 다중적 차별(남성과 성인 장애인에 대비되는 장애역성과 장애아동)이 개념적으로 뚜렷하게 설정되어 제시되기를 바람
- 더불어 전략목표의 배경과 필요성에서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차 별금지법 상의 규정미비를 언급하고 있는데, 장애여성과 장애아동의 경우에는 법적 인 언급이 없으므로 적어도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서 장애여성과 장애아동의 권리 를 별도의 독립된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언급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추진 목표에서는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으로 다중적 차별의 대상만이 나열되어 있을 뿐 목표의 내용이 전혀 제시되고 있지 않음. 따라 서 추진 목표를 추진 대상으로 그 제목을 바꾸던지 아니면 추진 목표를 고수한다면 목표의 내용이 제시되어야 할 것임

## Ⅱ. 발달장애인

### 1. 추진 방향

○ 우리나라의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장애인)이 신체적 장애인과는 다른 장애특성으로 인해 차별과 인권침해에 크게 노출되어 있고, 따라서 기존의 신체적 장애인 중심의 장애인 복지체계를 개선하고 발달장애인의 장애특성이 고려된 맞춤형 지원 및 권리옹호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전반적인 추진 방향이 바람직하게 설정되었음

## 2. 주요 내용

- 발달장애인의 인권증진을 위한 중장기계획의 주요 내용으로 발달장애인에 친화적 인 공공기관의 정보 제공,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 발달장애인 인권침해 예방 및 권리 보호 체계 마련, 지역사회 통합 및 참여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 체계 마련 그리고 돌봄 및 가족지원 강화의 다섯 가지가 제시되었는데, 이는 여타의 전 략 목표와 추진 목표 및 추진 내용 속에서 다루어지는 노동과 주거, 소득보장, 사회 복지서비스, 서비스 전달체계, 자기결정권, 인권옹호 등 장애인권리 향상을 위한 전 반적인 과제들이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정신적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충분히 반 영하여 추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야 할 것임
- 주요 내용의 다섯 가지 과제는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다고 생각되나, 각 과제별로 내용의 구체성에 편차가 있고, 단순 나열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보완과 수정이 필요 해 보임
- 특히 주요 내용의 구성은 권리옹호와 복지지원이라는 두 개의 중심개념 틀로 재유 목화를 할 필요가 있음. 즉, 아래의 표와 같이 발달장애인 인권침해 예방 및 권리보 호체계 마련과 지역사회 통합 및 참여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 체계 마련이라 는 두 가지의 상위 항목을 두고, 그 아래에 구체적인 정책과제들을 제시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 주요 내용

- 1) 발달장애인 인권침해 예방 및 권리보호 체계 마련
  - 가. 발달장애인에 친화적인 공공기관의 정보 제공
  - 나. 발달장애인 의사소통 지원
  - 다. 발달장애인 형사사건 전담조사제 도입
  - 라, 발달장애인에 대한 법률조력 및 전문가 의견조회
  - 마, 약취, 금전적 착취, 학대 등의 예방 및 보호 시스템 강화
- 2) 지역사회 통합 및 참여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 체계 마련
  - 가. 발달장애인을 위한 전반적인 사례관리 체계 구축
  - 나.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기초소득보장, 주거 및 고용지원
  - 다.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문화 · 여가 및 생활체육 지원
  - 라. 발달장애인 맞춤형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구축
  - 마.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 모델 개발 및 매뉴얼화 추진
  - 바. 발달장애인 가족지워
- 주요 내용에 형사사건 전담조사제와 같이 구체성을 지닌 제도 도입이 제시된 반면 소득보장, 주거, 고용, 문화·여가, 생활체육 등의 과제에서는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추후 보완이 필요함
- 주요내용에 있어서 인권위 차원에서는 발달장애인 형사사건 전담조사제 도입과 발달장애인에 대한 법률조력 및 전문가 의견조회, 발달장애인이 이용자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및 폭력피해자들을 위한 쉼터의 설치·운영 등에 보다 각별한 관심과 정책추진에 힘써야 할 것임

## Ⅲ. 장애아동

## 1. 추진 방향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과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의 제정으로 장애아동의 권리에 있어 법적인 기틀은 세워졌으나, 여전히 지원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제도 적 혼선과 함께 소득기준을 중심으로 한 지원제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 므로 장애아동에 대한 보다 보편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개선과 정책추 진 방향이 설정될 필요가 있음

## 2. 주요 내용

- 장애아동의 권리증진을 위한 중장기계획의 내용으로 장애 영·유아 교육·보육지원 강화와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강화, 그리고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사업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는 기본권 항목에서 교육과 관련하여 제시된 별도의 추진목표 및 그 내용과 중복되지 않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의무교육을 중심으로 한 장애영·유아의 교육/보육 문제와 발달재활서비스(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 및 장애아동 돌봄문제에서 해결하거나 개선해야 할 정책과제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제정으로 장애유아의 유치원과정교육이 의무교육이 되었으나, 법 제정 이후에도 유치원의 의무교육대상자수는 3천명선에서 늘어나지 않고 있고, 유치원에 비해 5배 가량의 장애영・유아들이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은 1/3가량이 특수교육서비스를 받지 못한 채 무상보육료만 받고 있는 것이 앞으로 개선해야 할 장애유아 의무교육 시행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임
- 더욱이 누리과정의 전격적인 시행으로 비장애유아의 경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동질의 교육/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정책이 나아가고 있으나, 장애유아는 의무교육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사의 배치기준을 포함해서 (장애아동 대특수교사의 배치기준은 유치원은 4:1. 어린이집은 9:1) 의무교육 환경에 질적 양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방안이 시급한 상황임
- 유치원의 경우 특수학급을 설치한 사립유치원이 전국에 2개에 불과해 사립유치원 의 특수학급 설치확대와 특수교사 인건비 지원이 제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 으며, 어린이집의 경우는 누리과정 예산에 어린이집에 다니는 장애유아 의무교육 시행을 위한 별도의 예산이 책정되어 보육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발달재활서비스(장애아동 재활치료)에 있어서는 현재 6개 장애유형에 서비스가 한 정되어 있어 장애유형에 따른 서비스 차별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인권위 차원에서 이에 대한 강력한 권고가 나와야 할 것임



- 또한 서비스 욕구가 높은 물리치료와 작업치료가 의료행위라는 이름으로 서비스에서 제외되어 있는 문제를 개선해야 하며, 특히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및 언어재활사를 제외하고 치료사의 자격이 모두 민간자격소지자로 운영됨으로써 (최악의 경우40~60시간 교육으로 자격증을 딸 수 있음) 서비스의 질과 전문성에 있어 근본적인문제를 안고 있는 현재의 자격증 제도를 적어도 국가공인민간자격으로 강화할 수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2010년 1월 대구의 사설 치료실에서 발달장애아동이사망한 사건)
- 더불어 대도시에 비해 농산어촌에서는 발달재활서비스 담당인력의 절대부족으로 서비스 대상자가 된다해도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없거나 상대적으로 질이 낮은 서비스를 감수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놓여있음. 따라서 농산어촌에 공공의 발 달재활서비스 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보건소에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지역에 따 른 서비스 차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정책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장애아동의 돌봄문제는 장애아양육지원사업,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장애아동 방과 후 보육서비스 그리고 학교의 방과 후 활동 등 다양한 제도적 형태로 존재함. 따라서 앞으로 장애아동의 돌봄지원 정책은 기존의 제도운영에 있어 대상자를 보다 확대하고 돌봄지원의 양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여러형태의 돌봄사업들을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돌봄지원으로 통폐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정책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 계획(2013-2017) 관련 토론문

토론 3

**신동근** (용인정신병원 정신과전문의)



#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 계획(2013-2017) 관련 토론문

신동근

(용인정신병원 정신과전문의)

## I. 주요내용

- 1) 입ㆍ퇴원 적정절차 마련
- 2) 정신보건 시설 내 권리 보장 및 치료환경 개선
- 3)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장애인 치료 시스템 구축
- 4)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 편견 해소

### □ 추진 방향

- 정신장애인들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정신의료기관에 입원되거나 필요 이상으로 장기입원 되는 등 다른 집단에 비해 인권을 침해받을 가능성이 높음. 또한 치료 목적이라는 미명 하에 격리・강박이 허용되거나 외부소통이 제한되는 등 기본적 권리가 제한될 여지가 높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입·퇴원 과정에서의 적정절차 마련, 지역사회 중심의 치료환경 조성, 최소한의 권리제한 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신보건법의 개정이 불가피함.
- 또한, 정신장애인이 사회에 복귀하여 자립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법·제도·정 책 등을 통한 사회적 지지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정신장애인이 여타 장애인에 비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일이 중요함.

### □ 주요 내용

- 1) 입·퇴원과정에서의 적정절차 마련 및 정신보건시설 내 권리보장을 위한 정신보건법 개정
- (1) 정신의료기관 입원 시 '진단입원'과 '치료입원' 구분
  - 정신보건법 제24조 입원절차에 관한 사항을 '진단을 위한 입원'과 '치료를 위한 입원'으로 나누어 규정하도록 개정
- (2)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에 있어 대상환자에 대한 요건 강화
  - 정신보건법 제24조 입원요건인 '환자가 입원 등 치료 또는 요양을 할 만한 정도의 정신질환에 걸려 있는 경우'를 '입원치료를 받지 않으면 상태가 악화될 우려가 큰 경우'로, '자신이나 타인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큰 경우'로 개정
    - → '입원치료를 받지 않으면 상태가 악화될 우려가 큰 경우'라는 표현은 주관적 인 해석이 가능하기에 입원 요건 강화라는 취지에 적절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 다. 오히려 지금 문구에서 요양이라는 단어를 빼고 문맥을 조금 다듬어서 남 겨 두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3)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의무자인 입원 시 퇴원 후 보호체계 의무화
  - 정신보건법 제24조에 별도 조항을 신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의무자 인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퇴원 후 거주 할 주거시설 및 제공되어야 할 정신보건 서비스의 유형 및 방법과 이를 제공할 기관 또는 단체를 명시한 퇴원계획을 세워야 한다"라고 명문화
    - → 이 문구가 들어가면 앞으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의무자로 입원시키는 행위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 같은데요. 현실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의 무자로 입원시키는 경우는 정신보건센터나 병원 등에서 시군구 담당자에게 거의 매달리듯 부탁해야 겨우 해주는데, 위 문구가 들어가면 오히려 보호자가 없는 정신질환자의 치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는 우려가 듭니다.



#### (4) 지역사회 연계절차 강화

- 정신보건법 제26조의 3에 새로운 항을 신설하여,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에게 퇴원 후 지역사회에서 정신보건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을 설명하고, 동의한 환자에 대해서는 정신과 전문의와 정신보건센터 정신보건전문요원이 함께 퇴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명문화
  - → 지역사회 내 병원이 아니라 전국구로 입원환자를 받는 병원들이 많은 상황에서 퇴원시 환자 연고지 정신보건센터 직원이 일일이 방문하기는 불가능하겠고, 서면으로 퇴원계획서를 서로 주고받는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대다수 정신보건센터가 직원 3~4명으로 운영되는 현실을 고려하여 실현가능한 대안이 필요하겠습니다.

#### (5) 정신장애인에 대한 기본적 권리 보장

- 정신보건법 제6조의 '권리와 권리의 행사에 관한 사항'을 문서 제공하도록 개정
- 정신보건법 시행령 제20조를 개정하여 종교행사 및 사생활의 자유 제한의 내용 및 절차 구체화
- 격리·강박 기준을 정신보건법 시행령에 구체화
  - → 격리강박 기준을 정신보건법 시행령에 넣을 필요까지는 없음.
    꼭 넣어야하다면 세부사항을 적시하기 보다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격리강박
    은 환자의 인권과 치료적 목적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정도
    로 해 놓고 세부 사항은 복지부 지침으로 규정하면 됨.

#### (6) 치료환경 및 질 개선

-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상 정신의료기관 시설·인력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 →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어느 정도가 선진국 수준인 지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해 주어야 함.

189

#### 2)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위해 정신보건센터 및 정신요양시설의 기능 정립

#### (1) 정신요양시설 입소절차 강화

-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서 대상 환자들의 치료 필요성 여부 및 상태를 판단하여 요 양시설의 입소를 심사할 수 있도록 정신요양시설의 입소 및 계속입원심사와 관련 한 별도의 규정 마련
  - → '정신요양시설 입소절차 강화'는 앞에서 기술한 '권리 보장' 항목 중에 하나로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기능 정립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 같습니다.
  - → 정신요양시설 입소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별도 심사 규정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현재 심판위원회의 인력과 예산으로는 부족함. 제대로 하려면 심판위원회를 대폭 강화하여 요양시설 입소 뿐 아니라 정신의료기관 입원(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까지 심사하도록 하는 것 고려. 이 경우 심판위원회는 단순히 행정적인 기능뿐 아니라 사법적인 기능을 할 수있는 권한도 부여해야 함. 즉, 인신구속을 결정하는(구속적부심 심사와 같은)법원의 기능 부여도 필요함.

#### (2) 정신보건센터의 기능 강화

- 정신보건법 제3조 제2항의 정신보건시설의 정의에 정신보건센터 포함
  - → 알코올상담센터(또는 중독관리센터)도 포함될 수 있으면 좋겠음.
- 사회복귀시설과 정신보건센터의 역할 구분 : 정신보건센터의 역할을 정신의료기 관과 사회복귀시설을 연계하는 코디네이터 역할에 집중
- 각 시·군·구에 최소한 1개 이상의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
  - → 정신보건센터의 기능 강화에서 시군구마다 1개 이상 설치 의무화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함.

요구되는 많은 기능을 감당하려면 센터의 갯수뿐 아니라 인력과 예산 규모도 대폭 확충되어야함을 명시해 주어야 함.



#### 3) 제도 및 정책 시행 등에 있어서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 해소

- (1) 정신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확대 및 고용지원제도에서의 사각지대 해소
  - 여타 장애인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해 장애인 직업재활사업 참여 소 득의 50%를 공제받을 수 있으나, 정신장애인의 경우 직업재활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한 공제율 적용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어 정신장애인이 정신질환자직업 재활시설에서의 직업재활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인바. 이에 대한 개선 필요
  - 공공기관 연계 중증장애인 창업형 일자리 지원사업 및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 매 특별법 상 직업재활시설 지원 시 정신보건법 제58조 및 제63조에 의한 시설 및 기관만을 적용하고 있어, 정신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시설 배제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개선 필요
- (2) 장애인 주거 지원 시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 해소
  - 서울시는 장애인거주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 중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의 신청 및 평가를 통해 자립생활 체험홈, 자립생활가정을 거쳐 시설 퇴소준비에서 지역자립까지 체계적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나, 사업대상을 장애인복지법 시행 규칙 제41조에 의한 시설만을 적용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개선 필요
- (3) 민간보험 가입 시 정신장애인 대한 차별 금지
  - 상법 제732조로 인해 정신장애인은 정신과치료력만으로 가입이 거절되고, 이를 규제하기 위한 보험회사의 합리적인 심사 기준이 부재한 바, 적절한 보험 인수 기준을 마련하여 보험회사 등에 안내

## ■ 추가할 내용

119가 정신장애 응급환자 후송을 거부하는 동안 사설 구급대와 정신요양시설이 결탁하여 정신장애인의 인권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실이 심각함.

환자 입원 후송시 문제가 많은 사설응급구조대를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소방서

응급구조대의 차량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관할구역을 벗어나서는 이송할 수 없다고 하니, 적어도 광역지자체 단위 또는 일정 규모 권역내에서는 119 구급대를 이용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 계획 관련 토론문

토론 4

문용훈

(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 회장)



#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 계획 관련 토론문

문용훈

(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 회장)

# I. 정신장애인 어디에 있을까?

### 1. 병원과 생활시설에 있다.

정신보건법이 제정되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보고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탈원화와 정상화의 개념의 실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장애인의 경우 여전히 다중적 차별을 격고 있는 영역이며 인권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상활이다. 보건복지통계연보(2011)에 따르면 2010년 12월말 현재 정신병원 입원병상수가 80,245 병상이며, 7만 여명이 입원상태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이 입원의료비에 대한 자기부담이 없는 의료급여수급자라는 측면에서 저소득정신장애인의 경우 여전히 시설화 정책에 희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의 결과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실인원 및 진료비용 추이를 보면 더욱 명확하게 나타난다.

2004년	진료 실인원	194,622명	총진료비(천원)	438,605,190
	입원진료 실인원	64,995	입원 총진료비(천원)	386,560,222
2009년	진료 실인원	322,676 (167.5%)	총진료비(천원) / 증가율	828,608,723 (188.9%)
	입원진료 실인원	91,108 (140.2%)	입원 총진료비(천원) /증가율	705,501,462(182.5%)

실제 우리나라에서 입원 및 입소를 제공하는 정신보건시설(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정원이 약 90,000명인데 이중 요양시설 14,241명(15.8%) 사회복귀시설 (입소, 주거제공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2.4%에 불과하다.(입소 1,103명/ 주거 1,065명) 이는 우리나라 정신보건정책이 지역사회보다는 시설과 병원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저소득층 정신장애인의 경우 시설화의 경향은 더욱 심각하며 장기입소(원)의 경향은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표 1〉2012년 상반기(6.31 기준) 현황

				의료보장종류			장애등록현황				
유형	개소수	정원	현원	건강 보험	의료 급여 1종	의료 급여 2종	기타	1급	2급	3급	미등록
주간 재활시설	93	3,272	3,537	2,024	1,255	227	40	121	763	1,507	1155
주거 제공시설	109	960	790	287	465	37	1	20	156	428	187
입소 생활시설	19	504	367	156	211	9	4	24	99	164	96
공동 생활가정	16	65	51	26	24	1	0	2	11	28	10
중독자 재활시설	4	15	8	4	3	1	0	0	0	0	8
직업 재활시설	5	123	129	96	16	17	0	1	17	61	50
생산품 판매시설	1	10	10	2	8	0	0	0	0	5	5
종합	이용 709		734	295	389	36	14	56	235	316	127
시설	24	입소 599	495	159	321	9	6	14	116	285	80
총 계	271	6,257	6,121	3,049	2,692	337	65	238	1,397	2,794	1,718

또한 정신보건시설 및 한국노숙인복지시설 입원/입소자의 의료보장현황 전체 75,282명 중 61.3%인 46,126명이 의료급여 1종. 정신요양시설과 한국노숙복지시설을 제외하고 정



신의료기관만 살펴볼 때 그 비율은 57.4%로 나타나 (2010년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사업보고서) 이러한 추정이 어느정도 근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시설에 대한 탈원화의 대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정신장애인들의 중간연령이 2000년 42.4세인데 비하여 2010년 50.01세로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정신요양시설의 경우는 2010년 51.61세이고 65세 이상이 12%, 잠재적노령인구인 60세 이상까지 포함할 경우 23.3%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정원대비 현원의 경우 2006년을 기점으로 90%이하로 떨어졌고 2010년 82.1%인 상황(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보고서, 2010)이어서 새로운 기능전환에 대한 실질적인 고민이 진행되어야 함을 보이고 있다.

〈표 2〉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 한국정신요양시설협회 현황

구분	시설수	정원	현원	비고
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	37	10,172	8,017	
한국정신요양시설협회	59	14,241	11,637	

출처: 2011년 사회복지시설평가

#### • 대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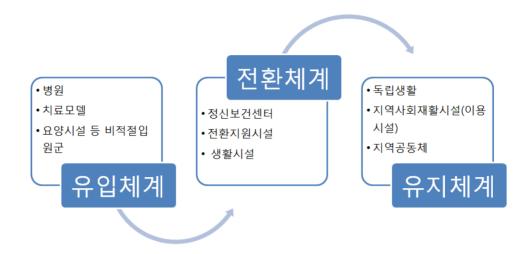
#### - 예산지원방식의 변화

현재의 예산지원방식이 탈원화의 해결책과 역으로 가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정신보건 서비스 체계의 파편화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방이양이 된 사회복귀시설의 재정적 시설서비스의 취약성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심각한 기간을 제외하고는 입원, 입소비용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고,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저소득 정신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비용 중앙정부에서 책임지는 체계로 점진적으로 바꾸어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의 변화를통하여 장기입원의 원인이 요양의 기능을 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책임을 강화하여 고비용 입원 및 입소를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할 수 있으며

정신요양시설과 노숙인복지시설의 기능전환 방안도 함께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 2. 지역에 있다.



기존 정신보건서비스의 전달체계는 병원에서 퇴원하는 정신질환자의 유입의 활성화 기능에 맞추어 정신보건센터의 설립과 생활시설(입소시설, 주거제공시설)을 설립하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인가? 실제 정신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소외계층의 지역사회복지의 기본은 주거복지에서 시작한다고 볼 수 있다. 주거복지는 주거와 지원서 비스의 결합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는 물리적인 환경이 '주택'과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의 결합이다. 그동안 지역사회지원 서비스와 주택관련서비스에 대하여 개인적인 문제로 보거나 부가적인 서비스로 취급되었다. 이는 결국 지역사회에서 어떤 지원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계획부족으로 퇴원한 정신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속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정책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 1)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근본 원인 분석

○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2008년) 정신장애인의 생할유형선호와 가족의 정신장애인 보호유형 선호를 교차분석한 결과 총 분석대상의 55.7%는 정신장애인과 가족이 욕구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족과 정신장애인의 욕구가 불일치하는 사례도 약 44.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이 시설이나 병원의 입원(소)를 희망하는 정신장애인 중 92.7%는 가족과 생할 또는 가정과 가까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신장애인이나 가족 양측, 또는 어느 일방으로부터 주거 시설을 활용하는 생활유형을 선호하는 경우가 총 38.9%로 나타나 향후 지역사회 내의 거주에 대한 문제가 선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 ○ 표출되는 욕구 - 탈시설화

서울시(2009), 부산시(2009), 광주시(2010)는 관내 생활시설거주 장애인실태 및 욕구조사 결과 시설거주 장애인의 탈시설 욕구는 서울시(57% 자립희망, 주거 및 기타서비스 지원 시 70.3% 자립희망), 광주(41.3% 자립희망, 주거 및 기타서비스 지원 시 42.2% 자립희망), 부산(57.6% 자립희망)에서 약 50% 이상이 자립생활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파악된 욕구를 근거로 하여 탈시설자립생활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이러한 지원체계는 시설 입소로 일관된 장애인 정책을 지역사회 지원체계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서울시 탈시설 욕구조사 결과와 인권위조사의 유사성〉

당사자의 탈시설 의지는 50% 이상이 나왔음. 하지만 가족에게 질문하였을 때는 상반된 결과가 나와 가족 의 경우 응답자의 94.5%가 계속 시설에서 살기를 원한다고응답 하였다. 특히 형제자매의 경우 100%가 시설의 계속 이용을 희망하는 것으로나타났다.

## 2) 기존 정신보건전달체계의 고민

○ 정신보건에서의 주택과 주거

우리나라 정신보건영역에서 주거와 관련된 서비스프로그램은 극히 제한적이다. 기존 정신보건서비스의 주요한 특성이 시설 중심적 접근과도 관련이 되어 있고 이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정신보건 전달체계(일명 깔대기모형)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신보건정책의 방향을 지역사회로의 전환체계와 지역사회 유지체계로 바꾸어 서비스를 만들어 가는 것이필요하다.

#### 대안

지역사회 유지체계에 대한 수요·공급에 대한 재조사, 지원체계에 대한 중장기 계획 마련: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역할변화, 전환지원센터의 역할 수행(사회복귀서설 유형 변화 - 시행규칙개정) 사회복지시설의 특성화 다기능화에 따른 예산지원, 영구임대아 파트 앞의 사회복지관에 프로그램단위 예산지원, 사회서비스,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등의 조정, 장애인등급제 개선

#### ○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부족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취업장애인의 월평균 급여가 142만원인데 반하여 (우리나라 전체근로자 평균임금 260만원) 정신장애인의 경우 53만원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전체 취업장애인 평균 90%가 36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데 비하여 정신장애인은 97.5%가 36시간 미만 근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6시간 미만 근로의 이유로는 일자리가 없어서(32.5%), 장애관련이유(26.0%)로 나타나 일자리의 확보와 동시에 정신장애의 이해와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비하여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지난 2010년 2개 유형으로 개편된 이후, 근로사업장 59개소, 보호작업장 403개소 총 462개소가 있으며 총 1만2870명의 장애인에게장애인 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2010년 시설개편 이후) 반면 정신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시설은 전국의 4곳(서울 1개소, 경기도 1개소, 부산 2개소)으로 105명의정원(2011년 말 현재)으로 등록되어 있다.

#### ● 대안: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신장애인 직업재할시설 설치와 위탁

# Ⅱ.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대한 정신장애인 배제와 차별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와 재활에서 비인권의 핵심적인 내용은 '배재와 차별'이다. 이처럼 사회적 권리에 대한 다차원적인 배재(직업, 기초생활, 서비스, 지역사회의 역할 등)는 정신장애인에게 사회적 역할이 주어지지 못하게 하였고 다 나아가 가치가 평가 절하되게하였다. 이러한 배재와 차별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일반인들의 태도와 전문가들의 치료방



식 그리고 국가의 관리방식에도 영향을 주고 있고, 이러한 배재와 차별은 불행하게도 현재 우리 사회의 곳곳에서도 여전히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

현재 장애인 일자리 및 근로에 대한 규정은 모두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 명시하고 있어 정신보건법상의 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시설은 배제되고 있으며 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 서비스 접근성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소득공제에 대한 정신장애인의 제도적 차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의 "근로활동 등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한 공제액: 자활소득공제"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율 적용에 대해 일반장애인은 장애인 직업재활사업참여 소득의 50% 공제를 받지만 정신장애인은 직업재활사업참여 소득이 100%로 인정되어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은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에서의 직업재활을 회피하고있는 상황으로 직업재활의 의지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제 2조(소득평가액의 산정방식) 6호 장애인이 **「장애인복지법」제58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복지관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u>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재활사</u>업에 참가하여 얻은 소득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2.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상의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시설 배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정의) 제2호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장애인 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같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 복지단체 중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이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 3.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신규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중증장애인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고, 중증장애인의 일자리창출과 연결될 수 있는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 신규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및 직업재활프로그램사업수행기관의 선정대상으로 장애인복지법 상의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복지단체, 직업재활시설로만 제한을 두고 있음.

## 4. 2012 공공기관 연계 중증장애인 창업형 일자리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기관건물(청사) 내 카페, 매점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단체 등 장애인 직업재활수행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 포함)을 대상으로 설치비 등 직접 지원하는 사업

위탁대상자(위탁운영자)는 장애인복지사업을 주로 하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의한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의한 장애인단체 중 직업재활사업 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명시하고 있음.

### • 대안: 장애인복지법과 차별적인 내용 조정. 15개 장애영역에 대한 균등한 기회제공

## 5. 여전히 남아있는 장벽 : 자격증취득의 장벽

#### 사례

간호조무사자격증 :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에는 참여 가능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 되는 자격증에 제한.

#### 대안

정신보건법 제3조에 의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자격증 취득에 차별은 18대국회에서 논의되었으나 실제 해결이 되지는 못한 상황이다.(이해집단 및 부처간의 의견조정의 실패) → 해결 가능한 부처에서 진행(보건복지부산하 자격증 중 해결, 자치단체장의 자격증 부여에 대한 차별조항 제거, 자격일시 중단방안으로 보완)



# Ⅲ. 지역사회정신보건에 대하여 - 또 다른 대안

#### 1. 정신장애인 생애가치에 대한 고민

- 지역사회유지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확립이 필요하다. 즉 지역사회정신보건 계획의 경우 기존의 인프라확충과 정신보건센터의 유입체계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넘어서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사회에서 정신장애인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을 통해 정신장애인의 생애가치를 높이는데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생애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신보건전달체계의 조직구조, 성과평가에 대한 고민이 함께 진행되어야 실질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본다.
- 조직구조 : 정신장애인 생애가치(lifetime value)의 중시는 서비스중심, 공급자중심에서 정신장애인 중심의 서비스 재구성이다. 지역사회유지체계란 정신장애인들이 자신이 살고 싶어 하는 장소에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이는 정신장애인중심의 지역사회서비스 육성, 시설서비스에의 지역사회로의 전환시기에 지역사회서비스 정보를 활발한 공유, 주요의사정책결정자들의 지역사회 서비스에 대한 정기적인 접촉의 장을 제공 할 수 있도록 조직과 조직원이 바뀌어 가야 함을 의미한다.
- 성과평가 : 정신보건체계를 시대와 환경에 맞추어 새로운 측정지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즉 기존의 서비스 참석도 및 서비스 설명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중심의 서비스 측정 방법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단일서비스 이용에 대한 산출보다는 정신장애인 지역 관계 구축에 대한 내용이 성과측정 지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 권리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방안 모색 여성장애인 토론문

토론 5

신희원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사무국장)



# 권리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방안 모색 여성장애인 토론문

신희원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사무국장)

# I. 추진 방향

- 우리나라 여성장애인은 전통적 가부장적 문화와 사회적 체계로 인해 여성과 장애, 빈곤으로 인한 다중의 차별을 받고 있음
- 여성장애인에 관한 각 통계에서 보듯이 여성장애인은 비장애여성이나 남성장애인에 비하여 교육수준, 취업률, 소득수준이 매우 낮으며 전 생애주기에 걸쳐 기본적인 권리보장의 기회가 박탈되었을 뿐 아니라 차별과 폭력의 상황에 노출되어 특화된 지원과 보호가 필요함
- 장애인정책결정에 있어서도 성차별적인 요소를 고려하지 않아 모든 분야에서 성인 지적 관점이 간과됨으로써 정책의 수혜 범위에서 소외되어 왔음
- 정책결정과정과 집행과정에 여성장애인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성별 통계 구축 미비와 성별예산이 전혀 확보되고 있지 않음
- 또한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정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수립·집행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으므로 전 생애주기에 걸쳐 여러 분야에서 복합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부처 간 종합적인 계획 및 협력이 필요함
- 교육, 취업, 모성보호, 차별과 폭력문제 등 여성장애인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 수립·추진하여 여성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별 도의 법적근거마련이 필요함

# Ⅱ. 주요 내용

## 1. 여성장애인의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양육체계 구축1)

- 재생산권은 국내법적 개념이기보다는 국제기구 및 세계여성회의 등을 통해 반복적 인 선언으로 주장되기 시작하면서 권리로 인식되기에 이른 개념<sup>2</sup>)
- 국제기구 및 세계여성회의에서 선언된 재생산권의 내용을 정리하면, 첫째, 성관계에 있어서의 피임 등과 관련한 평등한 성적 자기결정권, 둘째, 재생산의 여부・시기및 횟수 조절 등과 관련하여 강요된 낙태를 하지 않을 권리 및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해 자유로운 결정으로 낙태할 권리로서 낙태 관련권, 셋째, 출산의 과정에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안전한 보장을 위한 건강권을 그 내용으로 함(차선자, 2007)

#### 1) 재생산권 관련 정보접근권 확보

- 재생산권 관련 정보 제공 및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가 필요함. 장애유형별로 다른 신체적인 조건에 따른 출산의 문제, 장애 특성을 고려한 육아 환경 준비에 관련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며, 장애유형에 따라 적합한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함
- 여성장애인을 위한 임신·출산·육아 정보를 구체화하고 이에 관한 관련 사이트 구축을 통해 정보를 제공함

# 2) 부모 교육 및 상담 서비스 제공(장애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

- 여성장애인이 아동에 대한 돌봄노동을 수행함에 있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바.

<sup>1) 7</sup>대 핵심공약 및 주요정책과제발표 정책자료집. 2012년 총선대선 여성장애인공약개발연대 (2011). 한국여장연

<sup>2) 1994</sup>년 카이로에서 열린 세계인구회의에서 채택된 행동강령에 의하면, "재생산권은 이미 국가 법률, 국제인권법 그리고 기타 UN이 합의한 문서에서 인식되는 인권의 어떤 측면을 포함한다. 재생산권이란 모든 커플과 개인들이 그들의 자녀의 수, 터울, 시기를 자유롭고 책임있게 결정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 및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정보와 수단, 그리고 가장 높은 수준의 성적·재생산적 건강을 누릴 권리를 포함한다." 이는 그동안 여성의 출산력을 인구통제 수단으로 여겨온 기존의 국제기구·인구 기관들과 여성 자신의 내재된 권리로 바라보는 여성주의자들의 주장이 절묘하게 결합되고, 재생산권을 여성의 건강, 권리, 평등, 힘 기르기의 중요성을 포함하는 통합적인 인권의 틀로 위치시키는 계기가 됐다.



- 이를 해결하기 위한 부모 교육 및 상담 서비스 제공을 시행함
- 장애자녀 출산에 대한 비현실적인 두려움에 적절히 대처해 줄 수 있도록 적절한 의료검진에 대한 지원과 장애 특성을 고려한 산전 교육 등을 통한 전문가의 지지 가 필요함
-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도 장애 특성으로 인해 비장애여성에게 유용한 다양한 육아정보가 실질적이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더욱더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으므로 자녀를 양육한 경험이 있는 선배 여성장애인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상담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함
-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육아프로그램 운영이나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해결을 위한 상담 및 가족관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함

#### 3) 여성장애인에게 특성화된 병원 육성 및 거점 병원 지정

- 여성장애인이 편리하고 차별받지 않게 이용할 수 있는 특성화된 병원을 육성하고, 이러한 서비스를 시행하는 거점 병원을 지정하여 여성장애인의 편익을 도모함
-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전문적 서비스가 부족한 장애여성을 위해 시·도별 장애여 성전담 의료지원센터(지정산부인과)의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함

# 4) 장애유형별 맞춤식 임신·출산·육아 상황을 반영한 돌봄(활동지원서비스)제공

- 활동지원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하여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에 활동보조 인의 지원을 활용하도록 함
- 중증여성장애인의 경우 활동보조서비스와 육아 및 가사도우미의 중복지원이 가능 하도록 해야 함
- 장애부모의 자녀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적 돌봄 프로그램이 필요
- 청각장애 부모를 위한 건청 자녀 언어발달을 위한 보육시설
- 지적장애 부모의 자녀의 원만한 지능발달을 위한 학습보조교사 파견
- 지체장애 부모의 자녀를 위한 지속적인 야외활동과 문화체험 활동 지원
- 도우미 사업이 장애아동으로 인한 현실적인 부양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현실화

- 장애엄마나 아동이 아플 때 지원할 수 있는 긴급지원 서비스 제공
- 취업장애엄마의 직업생활 유지를 지원할 수 있는 야간 보육서비스 제공
- 장애가 있는 학부모에게 자녀 학교생활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부모의 장애에 따라 이해가능 한 자녀 정보제공 의무화가 요구됨
- 시각장애와 청각장애를 가진 학부모가 학교에서 매일 제공되는 알림장 등의 정보 를 접근할 수 있도록 학교 홈페이지 서비스가 제공 필요함

#### 5)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및 양육비 지원 강화 등 추가비용에 대한 경제적 보전

- 지역이나 연령, 소득에 제한 없이 여성장애인을 위한 무료정기검진의 제도화, 국민건강보험에서의 장애여성에 대한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의 보험적용 범위 확대,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성장애인을 위해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거나 본인부담금을 감면하는 제도를 법적으로 도입해 장애여성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어야 함
- 여성장애인의 경우 1차 진료기관에서 산전산후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여, 종합 병원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출산지원금 등 경제적 지원이 필요함
- 산후조리원의 이용에 있어서 비장애여성에 비해 추가적인 기간과 비용이 소요됨 으로 출산지원금 등 경제적 지원이 필요함
- 여성장애인이 장애로 인해 제한되는 모성영역을 대체할 수 있도록 사회적 서비스 를 활용하기 위한 양육지원금 등의 경제적 지원이 필요함

# 2. 가정폭력 ·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 구축

## 1) 여성장애인 폭력관련 법과 제도의 정비

여성장애인에게 가해지고 있는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 근절을 위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을 제정하고 개정하여 실질적인 정책을 수립하여야 함

# 2) 폭력피해 여성장애인 치유를 위한 보호시설의 확충과 자립지원

- 현재 전국의 장애인 상담소는 20개소(성폭력 19곳, 가정폭력 1곳)이고 폭력피해여



성장애인보호시설(쉼터)은 4개소(성폭력 3곳, 가정폭력 1곳). 쉼터 1개소당 정원은 11명~15명, 입소기간은 9개월~12개월, 친족성폭력사건의 피해자는 24개월이 만기이나 전국 지역에 성폭력 피해사례는 해마다 셀 수 없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

- 장애유형과 장애정도에 알맞은 개별화된 접근이 꼭 필요하며 폭력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와 종합적인 치료개입을 할 수 있는 보호시설을 전국 광역시도에 확충하고 현재 최대2년인 보호기간이 피해후유증 치료와 회복까지 연장되어야함

또한 중장기적으로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지원책이 필요함

#### 3) 형사사법절차에서 정당한 편의제공과 관련자에 대한 발달장애 이해교육

- 형사사법절차 관련자들은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거나 주장을 제시하는 의사소통능력이 부족하여 권리주장에 애로를 겪는 발달장애인에 대하여 신뢰관계에 있는 동석자배치를 반드시 고민해야 함
- 경찰이나 검찰, 재판장 등은 정신지체여성의 겉으로 보여 지는 신체만 보고, 장애로 인한 정신 연령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으며 항거불능 해석에 있어서도 비장애인을 기준으로 법을 적용. 해석하는 경향이 많음. 이로 인해 약자인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마련된 관련 법률이 가해자를 무죄판결 하는 근거조항으로 전략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법적 과정에 있는 전문가들의 발달장애관련 이해교육이 절실함
- 또한, 발달장애성폭력 피해자가 형사절차에서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진술조사 분석가 및 의사소통 조력인을 양성하고 배치를 확대해야 함.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호, 옹호하기 위한 법적, 행정적 또는 다른 적절한 구제수단에 대한 지원체계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함

# 4) 발달장애여성에 대한 지역사회 서비스 프로그램개발

폭력피해자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발달장애여성이 각종 폭력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역사회에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지원 시스탬 구축이 필요함. 주간보호, 그룹홈, 복지관, 정신보건센터 등 사회복지 전달체계에서 발달장애여성에 대한 전문적이고 특화

된 프로그램이 개발지원 되어야 함

#### 5) 전국민 대상 폭력예방교육과 인권의식의 향상

남성중심의 가부장문화와 성문화속에서 성폭력, 가정폭력의 문제는 사회문제임을 인식하고 약자를 대상으로 가해지는 모든 폭력에 대한 근절과 인권운동이 우리사회 각 분야에서 동시에 진행되어야 함. 특히 발달장애인 대상 성인권교육과 관련 종사자 뿐 아니라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Ⅰ인 쇄Ⅰ 2012년 9월

Ⅰ발 행 I 2012년 9월

| 발행인 | **현 병 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발행처 |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

| 주 소 | (100-842)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길 41

금세기B/D (을지로1가 16번지)

|전 화 | (02) 2125-9845 | F A X | (02) 2125-9848

I Homepage I www.humanrights.go.kr

| 인쇄처 | 도서출판 **한학문화** 

발간등록번호 11-1620000-000395-01

사전승인 없이 본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

#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